

주한유럽상공회의소 백서 2020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회원 여러분께

2015년 성공적인 ECCK 백서 첫 출간에 이어, 올해 역시 2020년 동안 회원사들로부터 제기된 산업 및 규제 이슈들을 정리한 백서를 여섯 번째로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ECCK는 국내 유럽기업들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효과적으로 회원사들의 이익을 대표하고 더 나은 한국의 기업환경조성에 일조하고자 산업별 위원회를 통해 이슈와 의견을 취합하고 있습니다. 본 백서는 오로지 한국과 유럽 기업 상호간 우호증진과 비즈니스 교류 확대를 위해, 건설적이고 열린 대화를 제공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발간되었습니다. 아울러, 회원사들에게는 한국의 전반적인 규제환경은 물론 산업별로 제기된 문제점과 전망을 고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올해 세계는 전례 없는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공중보건 비상사태, 글로벌 공급망 혼란, 보호주의 확대로 인한 무역 및 경제 위기 등, 전 세계가 '뉴 노멀' 방식에 적응할 수밖에 없는 혼란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유럽연합과 한국이 발표한 녹색·디지털 경제회복 계획과 같은 새롭고 다양한 산업 성장 기회를 맞이하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2020년은 한국과 유럽연합의 전략적 파트너십 10주년을 맞는 해이며, 양측은 여전히 돈독한 전략적 무역 및 투자 파트너입니다. 한-유럽 관계의 괄목한만 한 발전을 고려할 때, 한국시장의 동향, 규제환경, 새로운 기회들을 포착하는 것은 그 어느때보다도 중요해졌습니다. ECCK는 앞으로도 이러한 정보의 최일선에서 회원사들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ECCK는 산업별 규제와 정책이슈를 다루는 더욱 발전된 백서를 지속적으로 출간하고자 합니다. 회원사 여러분들의 의견과 비판은 저희에게 큰 도움과 자양분이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발간되는 백서를 통해 활발한 정보의 교류와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더불어 백서 발간을 위해 도움을 주신 회원사들에게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디어크 루카트
유럽상공회의소(ECCK) 회장



주한유럽상공회의소 백서 2020

인사말	p 2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소개	p 5
백서 사용 안내서	p 12
2020 백서 개요	p 13
2020 요약	
ECCK 백서 2020 소개	p 14
주요이슈 목록	p 17
‘로우행잉프룻 (low-hanging fruit)’ 주요이슈 목록	p 27
2019 리뷰	
ECCK 백서 2019 관련 정부 부처 회신 내용	p 29
<hr/>	
ECCK 산업별 위원회 보고서	
자동차	p 55
주류	p 67
화학	p 72
화장품	p 81
패션 및 유통	p 85
식품	p 88
헬스케어	p 94
보험	p 115
지식재산권	p 118
주방 및 소형가전	p 128
물류 및 운송	p 130
조선 및 해양	p 133
<hr/>	
ECCK 워킹그룹 (ECCK Working Group)	
항공 및 방위산업	p 136
에너지 환경	p 139
인적자원(HR)	p 148
정보통신기술(ICT)	p 151
조세	p 154
관광산업	p 164
<hr/>	
부록	p 166

주한유럽상공회의소 (ECCK) 소개

소개

주한유럽상공회의소는 한국에서 활동하는 유럽계 기업들의 협회로서, 2012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 (당시 지식경제부)의 정식인가를 거쳐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유럽연합대표부를 비롯하여 유럽계 기업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설립된 주한유럽상공회의소는 회원사들에게 한국의 비즈니스 및 규제 환경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규제기관들과의 소통창구 역할을 하는 것을 주요활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회원사들의 대부분은 유럽계 기업들이지만, 가입을 원하는 모든 국적의 기업들은 회원으로 가입하여 혜택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는 회원사들의 위임을 받아 이사회를 구성합니다. 또한 각국의 상공회의소와 대사관에서 파견된 대표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에서는 운영과 방향에 대하여 정보와 자문을 제공합니다. 운영에 필요한 제반 활동은 사무국을 통해 집행됩니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는 유럽기업들과 한국정부기관들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지향합니다. 또한 유럽기업들을 위한 최적의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함과 동시에, 한국사회에 이익을 환원하기 위한 각종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립이념 및 활동목적

주한유럽상공회의소는 한국에서 활동하는 유럽기업 및 한국기업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공정하고 열린 비즈니스 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특히 주한유럽상공회의소는 한국에서의 비즈니스에 있어서 유럽의 목소리를 대표하고자, 유럽연합대표부, 유럽 각국 대사관 및 상공회의소들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사진



디어크 루카트 (독일)

회장
현 쉐커코리아
대표

디어크 루카트 (Dirk Lukat) 회장은 독일 출신으로 2015년부터 쉐커 코리아의 CEO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루카트 회장은 쉐커 독일에서 경력을 시작했으며 싱가포르, 베트남, 그리고 인도의 DB 쉐커에서 다수의 관리직을 맡은 바 있습니다. 쉐커코리아로 부임 전 까지, 일본에 위치한 쉐커세이노에서 제너럴 매니저를 맡았으며, 유럽기업협회(European Business Council)의 물류 위원회에서 활발히 활동한 바 있습니다. 2017년부터 ECCK 이사진 겸 물류&운송 위원회 회장으로 활동을 하였으며, 2020년 7월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회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박현남 (한국)

부회장
현 도이치 은행 서울지점
대표

박현남 (Hyun-Nam Park) 부회장은 한국 출신으로 현 도이치 은행 서울지점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그녀는 글로벌 마켓팅의 헤드이기도 하며, 이 외에도 금융 업계에서 다양한 포지션을 맡고 있습니다. 한국에 주재한 외국인 은행가 그룹의 부회장이며, 금융위원회 내 한국 금융 허브 위원회의 멤버이기도 합니다.



얀 벵가드 (덴마크)

부회장
현 올리콘 발저스 코리아
대표이사

얀 벵가드 (Jan Benggaard) 부회장은 덴마크 출신으로 2016년 11월부터 올리콘 발저스 코리아 대표이사로 재직 중입니다. 2002년부터 부산에 위치한 바르질라마린시스템즈 코리아(Wärtsilä Marine Systems: 구 L-3 마린시스템즈)에서 사장으로 지냈던 얀 부회장은, 1998년 부산으로 오기 전까지 미국과 유럽의 사업을 지휘하는 프로젝트 엔지니어와 세일즈 매니저로 일한 경력이 있습니다. 또한, 얀 부회장은 2005년부터 부산국제외국인학교의 감사를, 2015년부터는 주한유럽상공회의소 부회장을 맡아왔습니다.



줄리엔 샘슨 (프랑스)
부회장
현 GSK 한국법인
사장

줄리엔 샘슨 (Julien Samson) 이사는 프랑스 출신으로 2018년 3월 부터 GSK 한국법인 사장으로 재직 중입니다. 그는 2015년 부터 3년간 GSK 프랑스 법인의 일차치료제 사업부 총괄, 2012년 부터 3년간 GSK 글로벌 호흡기질환 사업 본부의 렐바, 세레타이드, 아뉴이티 및 3제 복합제 신제품 영업마케팅 전략 총괄을 맡은 바 있습니다. 그는 GSK에서 일하기 전 프랑스 리옹 메디컬센터 부국장, 프랑스 대통령 내각 사회복지정책 자문역, 프랑스 경제부 장관, 예산부 장관 사회복지정책 자문역을 맡은 바 있습니다.



김동환 (한국)
이사
현 핀에어
한국지사장

김동환 (Donghwan Kim) 이사는 한국 출신으로 2012년 부터 핀에어의 한국 지사장으로 재직 중입니다. 그는 2008년 부터 핀에어에서 세일즈 매니저로 시작했으며, 2011년 부터 핀에어 본사에서 근무하며 한국 지사 세일즈 매니저와 본사 글로벌 상용 세일즈 매니저 등의 맡은 바 있습니다.



질 프로마조 (프랑스)
이사
현 AXA손해보험
대표이사

질 프로마조 (Gilles Fromageot) 이사는 프랑스 출신으로 2017년 4월부터 AXA손해보험 대표이사로 재직 중입니다. 한국 지사 대표이사직 이전에 그는 AXA Global Direct사에서 글로벌 CFO (2015-2017) 와 AXA손해보험 한국지사 CFO 및 corporate secretary직 (2012-2015)을 맡은 바 있습니다. AXA사 입사 전, 파리와 마드리드에 있는 Mazars사에서 일한 경력이 있습니다.



게드 비터리히 (독일)
이사
현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재무부문 총괄 부사장

게드 비터리히 (Gerd Bitterlich) 이사는 독일 출신으로 2017년 부터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재무부문 총괄 부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약 30년간 글로벌 자동차 산업에 종사하였으며 세일즈 및 마케팅 그리고 재무부문 담당자로 경력을 쌓았습니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로 부임전, 그는 메르세데스-벤츠 중국지사에서 동아시아 승용차 부문 총괄 (2011-2013), 상용차 재무부문 총괄 (2014-2016)을 맡은바 있습니다. 2007년 부터 2010년까지 메르세데스-벤츠 룩셈부르크에서 재무부문 총괄을 담당했으며, 2007년 이전에는 메르세데스-벤츠 글로벌 본사와 독일 슈투트가르트의 메르세데스-벤츠 은행에서 다양한 고위 관리직을 역임하였습니다.



남경희 엘리자베스 (한국)
감사
현 디아지오 코리아
재무 이사

남경희 엘리자베스 (Elizabeth Kyunghee Nam) 감사는 한국 출신으로 현 디아지오 코리아 재무 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재무 및 전반적 관리 업무 쪽에서 18년의 경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디아지오에 오기 전, LG텔레콤, Shepard, Schwartz & Harris, 및 필리핀항공에서 일한 경력이 있습니다.



카이야네스 베그너 (독일)
이사
현 김앤장
외국변호사

카이야네스 베그너 (Kay-Jannes Wegner) 이사는 독일 시민권자이며 독일 및 영국 변호사입니다. 그는 2011년부터 김&장 법률사무소에서 선임 변호사로 일하며, 주로 유럽국 고객들을 맡고 있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 카이야네스 이사는 2001년부터 2007까지 런던에서, 2007년부터 2011까지 싱가포르의 다국적 로펌에서 일한 경력이 있습니다.

크리스토프 하이더**총장**

크리스토프 하이더 (Christoph Heider) 총장은 2013년 6월 1일부로 현직에 취임하였습니다. 1997년부터 독일 제약회사인 바이엘 (Bayer AG)에서 근무하였으며, 일본지사에서 회계부서장을 한국지사에서 재무이사를 역임한 바 있습니다.

하이더 총장은 2016년 서울시 명예시민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독일 Heider-Kober Foundation의 이사회 임원직을 맡고 있으며, European Union Domestic Advisory Group 및 Korea-EU Civil Society Forum의 멤버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보선**부총장****임창훈**

부장, 자동차 위원회

김태양

과장, 화학 위원회

박안숙

이사, 화장품/헬스케어 위원회

김시윤

과장, 금융산업 위원회

백은혜

과장, 식품/주류/주방및소형가전 위원회

스벤-에릭 바텐버그

이사, 법률&국제협력 위원회

정누리

과장, 부산 지부장

심혜원

과장, 이벤트 프로그램 기획

이현성

과장, 경영지원부

조혜은

과장, 멤버십 관리

김정현

과장, 홍보&커뮤니케이션

조소현

대리, 홍보&커뮤니케이션

주한유럽상공회의소**사업소개****위원회 및 포럼**

산업별 위원회와 포럼은 상공회의소 활동의 핵심입니다. 위원회와 포럼을 통해 회원사들에게는 현재 해당산업의 규제 및 동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특정 무역/사업 이슈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여 제기하는 역할도 수행합니다. 위원회는 규제기관과 관련된 특정산업의 이슈들을 주로 다루는 반면, 포럼에서는 인사관리, 사회공헌활동 등 포괄적인 주제들을 논의합니다.

행사

주한유럽상공회의소에서는 비즈니스 세미나와 컨퍼런스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동시에 회원들간 친목도모를 위한 다양한 네트워킹 기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의 산업 및 경제계의 목소리를 한국 정부기관에 전달하고 협의하기 위한 소통에 큰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출판물

주한유럽상공회의소는 정보교류의 중심점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다양한 출판물을 발간하여, 회원사들에게 시장동향과 규제이슈, 주요 사회적 트렌드 등 관련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비즈니스 환경 또는 특정한 산업이슈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주요 정기 간행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백서
- 기업환경조사 보고서
- 유럽상공회의소 연례보고서 (ECCK Annual Report)
- 한-유럽 경제 분기보고서 (ECCK Quarterly Report)
- 계간지 (ECCK Connect Magazine)
- 회원명부
- 뉴스레터 (주간 & 월간)

EU 프로그램

주한유럽상공회의소는 유럽연합집행위원회와 긴밀한 협조를 유지하여왔으며, 일부 홍보 및 연구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3-14년에는 한국에 진출하려는 EU국가 내 중소기업들을 지원하는 EU Gateway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시장조사보고서를 업데이트하였으며, 저희 상공회의소는 EBO Worldwide Network ASBL의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해당 백서는 2020년 한 해 동안 회원사들로부터 제기된 145개의 산업 및 규제 관련 이슈와 건의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더 나은 한국 기업환경 및 규제 환경을 조성에 일조하고자 ECCK의 20개의 산업별 위원회 및 워킹그룹을 통해 의견을 취합하였습니다. 본 백서는 오로지 한국과 유럽 기업 상호간 우호증진과 양측 정부간의 건설적이고 열린 대화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 졌습니다. 해당 백서에 제기된 모든 이슈는 관련 당국이 실행할 수 있는 현실적인 해결책과 함께 제시되며 다음과 같은 형식을 따릅니다.

주요이슈
규제에 대한 현황과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 소개.

11. 배출가스관련 부품의 결함시정현황 보고-관리 항목의 명확화
환경부(교통환경연구소)에서는 지난 2020년 1월 자동차 배출가스관련부품 결함 보고 운영 안내서를 발간하였는데, 이를 통해 배출가스관련 부품 결함을 산정 및 분석 방법에 대한 안내와 함께 2020년 1분기부터 즉시 해당 보고 필요 사항을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인증 시스템 (KENCIS)를 통해 입력할 것을 업계에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부품의 경우 보고 대상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업계의 혼선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0]의 비교 2.에서는 주요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작동 및 제어에 관련되는 기타 부품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규정되고 있는 기타 부품도 보고 대상이 되는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해당 기타 부품들은 주요 부품의 보증수리과정에서 함께 교환되는 관계로 부품 자체로서는 결함을 갖고 있지 않으나 결함시정 요구 건수에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결함시정 요구건수 및 결함 분석현황을 제출하는 KENCIS 입력 페이지는 기본 및 변경 인증 시 제출한 부품목록을 기반으로 하는 목록화 선택이나 기타 입력의 형태로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입력 환경으로 인해 위에서 언급된 기타 부품을 입력하기 위해서는 제작사에서는 상당한 행정 인력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또한 적게는 수십 건 많게는 수백 건을 개별적으로 입력하게 되므로 오타 등의 실수로 인한 입력 오류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0 건의사항
규제 개선을 위한 업계의 권고사항 설명 소개.

건의사항
배출가스관련 부품의 결함 보고 대상은 배출가스 기본인증 및 변경인증 시 제출한 부품목록으로 한정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0] 비교 2.에 규정된 부품들은 인증기관에서 별도 수집 및 관리하지 않는 항목이므로 부품 결함 보고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요청합니다.

**관련규정/부처
건의사항 조치현황**
건의사항이 작년 백서에 이어 '재건의' 또는 '개정' 되었거나 2020년에 '신규'로 포함된 내용임을 나타냄.

관련규정 대기환경보전법, 자동차 배출가스관련부품 결함보고 운영 및 결함시정계획 안내서
관련부처 환경부
건의사항 조치현황 신규

2020 백서 개요

ECCK백서는 주한유럽상공회의소의 연례 주요 간행물입니다. 2015 년에 첫 발간을 시작으로 한국에서 활동하는 유럽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국내 시장 접근 및 기타 문제에 대한 주요 정보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백서는 기업들이 겪고 있는 주요 산업 문제의 본질을 포착하고 한국 정부 및 관련 부처와의 개방적이고 효과적인 대화를 촉진하기 위한 건의사항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백서는 유럽 집행위원회, 유럽 의회, 유럽 자유 무역 협회(EFTA) 사무국, 유럽 연합(EU) 회원국 및 EFTA 회원국 정부, 다양한 유럽 기업 이익 단체뿐만 아니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유엔(UN), 세계 무역기구(WTO)와 같은 다국적 조직의 핵심 인력과의 공유하고 있습니다.

해당 백서는 ECCK 사무국과 상공회의소 소속 회원사들로부터 취합한 산업 전문가들의 의견으로 작성되었으며, 약 200여 명의 전문가들이 2020년도 백서 출판에 기여하였습니다. 해당 백서는 20 개의 ECCK위원회 및 워킹 그룹(2019: 20 개)을 통해 제기된 145 개의 건의사항(2019: 180 개)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정보통신(ICT) 워킹 그룹이 백서에 처음으로 포함되었습니다. ECCK는 국내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회원사들의 지원에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서의 출판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ECCK는 한국 정부, 특히 옴부즈만 김성진께서 이끄는 외국인 투자 옴부즈만 사무소가 이러한 건의사항을 검토하고 관련 부처와 행정 기관들과 논의하여 신속한 후속 조치를 취하며, ECCK와 꾸준한 소통을 이어왔습니다. ECCK는 2019 년에 제출된 180 개 건의사항 중 약 50 개 (30 %)에 대해 긍정적 인 피드백을 받았으며 이는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끌어낸 의미 있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2020 년의 비즈니스 환경은 코로나19 로로 인해 크게 바뀌었습니다. 코로나19 는 우리의 삶에 많은 어려움을 가져왔지만 동시에 새로운 기회도 제공하였습니다. 코로나19와 싸우면서 배운 한 가지 교훈이 있다면 우리는 함께해야 성공하고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ECCK는 한국 정부와의 더욱 강화된 소통을 통해 더 나은 협력을 희망합니다.

코로나19 과의 싸움 그리고 미래

한국에서 코로나 19가 처음 발생한 것은 2020 년1 월이였습니다. 3 월에 일일 확진자 수가 정점을 찍었지만 한국 정부의 신속한 바이러스 방역 대책으로 성공적으로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은 전 세계적으로 여전히 취약하고 의료 관리 뿐 아니라 비즈니스에 대한 전망도 불분명합니다. 한

국에서는 약 200 명에 웃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확진자 수와 봉쇄 대신 사회적 거리두기조치 만 시행했다는 점, 그리고 약간의 GDP 감소를 감안한다면 상당히 성공적인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많은 국가들은 경제적 생산량이 크게 감소하였으며 한국 이외에 올해 GDP가 긍정적으로 평가된 경제 국가는 중국이 유일 할 것입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상황은 여전히 취약하고 이는 한국의 수출 활동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1 년에는 경제 활동이 반등하여 경제 회복이 가능하길 희망합니다.

코로나19는 사람들의 건강 뿐 만 아니라 경제 활동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2019년 이미 26% 감소한 12조 8,500억 달러를 기록했던 국내 외국인 직접투자(FDI) 실적은 올해 더욱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2020년에는 많은 다국적 기업의 유동성 확보에 초점을 맞췄었고 코로나19로 인한 기업들의 투자 연기로 인해 더욱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국경 봉쇄에 따른 무역제한과 공급망 중단은 생산과 제품 가용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19 진단 키트, 개인 보호 장비, 의약품 등은 자체 시장 배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유럽에서는 개방적 전략 자치(open strategic autonomy)와 같은 무역 모델에 대한 토론이 진행 중입니다. 정부가 자체 사업을 보호하기위한 조치와 계획은 향후 몇 년 동안 글로벌 무역에 더욱 영향을 미칠 것을 예상합니다.

ECCK는 국가가 보호주의적 무역 조치를 삼가고 제품, 서비스 및 사람을 위해 시장을 개방하는 자유무역을 지지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는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발전에 대한 필요성을 더욱 강조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럽연합과 한국의 그린 딜과 뉴 그린 딜과 같은 계획을 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부정적인 경제적 영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보다 지속 가능한 사회로 사회를 변화시키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다양한 첨단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 기업과의 협력을 마다하고 국내 기업에게만 특권을 부여하는 것은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더 나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목표로 첨단기술 협력을 위한 마찰 없는 무역이 보장되어야 하며, 표준의 조화 역시 더욱 강화되어야 합니다. EU및 EFTA와 한국 간의 호혜성에 관한 협정도 더욱 확대될 것을 예상합니다.

ECCK는 자유 무역과 이에 필요한 모든 개선을 지지합니다. ECCK는 EU집행위원회, EFTA협회 및 한국에 무역 및 시장 접근을 관장하는 틀을 개선하기 위한 모든 가능성을 모색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EU FTA 및 한-EFTA FTA의 현대화도 적극 지지합니다. 미래를 위한 필수 핵심 기술 교류를 위해 유럽과 한국 간의 마찰이 없고 원활하며 자유로운 무역환경이 형성되어야 합니다.

코로나19는 투명성, 정보 교환과 협력의 중요성을 보여주었습니다. ECCK는 한국 정부가 규제 완화, 입법 개정 또는 새로운 법률 시행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국내 유럽 기업과 더욱 소통하고 협력하길 바랍니다. 투명하고 일관된

정책 결정은 시장 성장과 성공적인 투자를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ECCK는 한국 정부의 노력과 열린 협력에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욱 원활한 ECCK와의 소통채널이 형성되길 바랍니다.

크리스토프 하이더
주한유럽상공회의소 (ECCK) 총장

ECCK 백서 2020에 제안하는 총 145개의 이슈들을 ‘정책(P)’ 또는 ‘규제(R)’로 분류하여 아래 목록과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정책’ 관련 이슈는 한국 정부 및 국회에 제기하는 특정 계획 수립 · 시행 또는 관련 법규 제정이 필요한 산업별 이슈들을 뜻합니다. 반면 ‘규제’ 관련 이슈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특정 규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산업별 이슈들을 뜻합니다.

정책 관련: P
규제 관련: R

자동차 위원회

1. 자발적 제작결함 시정조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제도 개선	R
2. 제작결함 시정 대상 범위의 개선	R
3. 자동차교환환불 요건의 누적수리기간 30일 기준에 대한 합리적 보완	R
4. 자동차 안전하자심의위원회 사무국의 권한 확대	R
5. 세미트레일러를 견인하는 트랙터의 HS Code	R
6. 한-EU FTA / 한-영 FTA 부속서 최신화	R
7. 유럽 형식 승인 자동차에 대한 국내 자동차 안전 기준 준수 인정	R
8. 자동차 너비 기준에 대한 유연성 부여	R
9. 배출가스인증 변경보고제도의 법률에서의 규정	R
10. 제작자동차 배출/소음 인증 관련 불필요한 시험방법에 대한 개정	R
11. 배출가스관련 부품의 결함시정현황 보고·관리 항목의 명확화	R
12.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의 중장기 로드맵 고시	R
13. 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 산정방법 명확화	R
14.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 제도의 초과, 미달 실적에 대한 유연성 방안 마련	R
15. 중고차량차 판매업, 자동차전문수리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검토	R

주요이슈

정책 관련: P
규제 관련: R

16. 자동차 관련 유사/중복 규제를 조사해 일원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 **P**

주류 위원회

1. 시음 허용량 기준 개선 **R**

2. RFID 시스템을 통한 명확하고 자세한 정보 공유 **R**

3. 선물 목적의 스마트오더 허용 **R**

4. 스마트오더 디지털 경품 홍보 및 할인 허용 **R**

5. 병행수입식품 안전관리에 대한 수입자 규제 강화, 브랜드 자산 보호 및 책임소재 명확화 **R**

6. 주종별 소비자경품 한도를 주종에 상관없이 세제별로 통합 운영하고 기준을 직전 년도 매출기준으로 변경 **R**

7. 포장 관련 법규 개정에 대한 충분한 유예기간 및 합리적 도입 **R**

화학 위원회

1. 화학제품 관련 규제 제·개정에 대한 TBT 알림 **P**

2. 화학물질 중복제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와 '공정안전보고서' **R**

3. 금지물질 수입 절차 중복 규제 **R**

4. 기준물질에 대한 시험자료 재생산 **R**

5. QSAR 자료 제출 톤수 제한 삭제 **R**

6. 유해화학물질 지정고시의 구체적 근거 **R**

7. 살생물물질 승인 신청자료 개별제출 **R**

8. 식약처 이관 의약품 승인에 대한 시험 기준 **R**

9. 살생물물질 승인 유예기간 연장 또는 검토기한 축소 **R**

10. 살생물제품의 효과·효능 허가 요건에 대한 가이드 필요 **R**

11. 유해화학물질 지정 및 관리 체계의 검토 **R**

12. 소비자용 살생물제품의 화관법 적용 제외 **R**

13. 화관법 내 유사규제: 통계조사와 실적보고 **R**

14.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비공개 심사 **R**

화장품 위원회

1. 포장 관련 법규 개정에 대한 충분한 유예기간 제공 요청 및 합리적 도입 **R**

2. 재활용 용기의 포장재 재질 구조 평가 기준 합리화 **R**

3. 천연관련 표시광고 허용 범위 **R**

4. 판매증명서, 제조증명서 구비 요건 개선 **R**

5. 틈살로 인한 붉은 선을 없게 하는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의 인체적용 시험 적용기준 확대 **R**

패션 및 유통 위원회

1. 생활용품 표시사항 관련 **R**

2. 유아용 섬유제품의 시험 인증 기준 **R**

식품 위원회

1. 표시기준 개정사항의 경과조치 필요	R
2. 천연/합성향료 표시 개선	R
3. 천연/합성향료 기준규격 및 개선	R
4. Non-GMO 수출국 표시 사용	R
5. 기구 및 용기포장 재활용 합성수지제 범위 확대	R
6. 포장 관련 법규 개정에 대한 충분한 유예기간 및 합리적 도입	R

헬스케어 위원회

1. 신약의 환자 접근성 개선을 위한 경제성평가 가이드라인 개선	R
2. 글로벌 혁신신약 가격우대 정책의 현실화를 통한 혁신적 신약의 가치 인정	R
3. 복합제 약가산정기준 개선	R
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R
5. 중복적인 약가인하 기전 관련	R
6. 위험분담제의 운영의 예측성, 투명성 및 유연성	R
7. 희귀질환, 희귀 암환자 약제 접근성 강화	R
8. 중증 암환자의 빠른 약제 접근성을 위한 항암제기금의 조성	R
9. 세포유전자 치료제 국내 도입 논의를 위한 보건복지부 산하 협의체 구성	P
10. 항암제 급여 검토 시 선 등재 후 평가 제도의 도입	R
11. 혁신적인 의약품의 신속심사(조건부허가) 요건 및 심사기간의 개선	R
12. 약가 협상 시 약가합의서 및 이행관리 관련	R

13. 건강보험 관련 위원회 의사결정에 대한 투명성 제고 및 명확한 역할 분담	R
14. 실거래가 조사의 개선 및 투명성 제고	R
15. 공정한 혁신형제약기업 인증기준의 보완	R
16.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의 개선	P
17. 국제적 가이드라인에 맞는 국내 선택발명에 관한 특허성 판단 기준 변경 요청	R
18. 유럽연합과의 GMP 평가 및 품질관리 시험의 상호인정 협정 체결의 조속한 추진을 통한 제도 개선 (백신과 생물학적제제 우선 적용)	R
19. 독감백신의 신속 국검 및 위해도 평가기준 개선	R
20. 예접종비 제도개선	R
21. 공중보건을 위해 백신의 혁신적 기술에 대한 가치 인정	R
22. 생물학적 제제의 허가변경 된 항목에 대한 유예기간 설정	R
23. 생물학적 제제의 품질시험에 사용하는 동물 시험법 대체의 건	R
24. 국내에서 추가로 설정하는 완제의약품 기준 및 시험방법 시험 항목에 대해 필요성 재검토	R
25. 제조품질관리 관련 보완자료의 요구 수준 개선	R
26. 완제의약품의 출하 승인 규격과 유효 기간 규격 분리	R
27. 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의 국제기준조화	R
28.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고시 재검토	P
29. 임상시험 변경승인 절차 개선 및 일괄적용에 대한 공식절차 및 가이드라인 구축	R
30. 허가변경 시 변경 내용에 따른 보고 방식 범주화 및 구비요건의 수준 간소화	R
31. BSE 자료제출 관련 전자 서명 허용 및 공증 기준 완화 요청	R

32. (의료기기)필러의 관리범위 명확화를 위한 별도 분류 체계 마련	R
--	---

보험 위원회

- | | |
|---|---|
| 1. ‘빛의 대물림 방지’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 발의에 대하여 긍정적 검토 요청 | R |
| 2. 수입차 표준 정비 수가 및 시간 공표 | R |
| 3. 대인배상III 치료비 전액지급제도의 개선 | R |
| 4. 정비견적서 발급대상자에 보험회사를 추가하도록 명시 | R |

지식재산권 위원회

- | | |
|--------------------------------|---|
| 1. 지식재산 관련 사건에 관한 협력 부족 | P |
| 2. 지식재산 범죄에 관한 효과적이지 못한 처벌 | P |
| 3. 국경조치 | R |
| 4. 지식재산권 침해단속 연간보고서 | R |
| 5. 관세청 우체국 국제특송(EMS) 사업 효율성 제고 | R |
| 6. 특별사법경찰권 지정 | R |
| 7. 공공연한 위조품 판매 | P |
| 8. 유사상표 단속 | R |
| 9. 온라인 단속에 관한 이해관계자 간 협력 | R |
| 10. 저작권 및 사용료 | R |
| 11. 표준필수특허 | P |

12. 기술 수출 관련 규제의 모호성	R
----------------------	---

13. 손해배상액 산정	R
--------------	---

주방 및 소형가전 위원회

- | | |
|--------------------|---|
| 1. 가정용 압력솥 표시사항 개선 | R |
| 2. KC 인증서 전자문서화 | R |

물류 및 운송 위원회

- | | |
|-----------------------------|---|
| 1. 항만 운영 정보 시스템 운영에서 보고 제외 | R |
| 2. 운임공표제 실시 | R |
| 3. 복합운송주선업체의 통관 대행업 겸업 | R |
| 4. 직접운송 요건 | P |
| 5. 중계 거점을 통한 직접 운송/운송 방식 변경 | P |

조선 및 해양 위원회

- | | |
|-------------------------|---|
| 1. 국내 조선소 최저가 입찰제 관행 | P |
| 2. 간접손해에 대한 공급 업체 보상 범위 | P |
| 3. 해상풍력발전사업 허가 | P |

항공 및 방위산업 워킹그룹

- | | |
|------------------------------------|---|
| 1. 방위사업청 절충교역지침 제13조 관련 법적 책임 확대 | R |
| 2. 방위사업청 절충교역지침 제14조 관련 절충교역 이행 보증 | R |

에너지 환경 워킹그룹

- | | |
|--|---|
| 1. 기존 도시 가스 사용 중인 업체의 액화천연가스(LNG) 직수입 허가 요청 | R |
| 2. 한국가스공사와 산업용가스·화학업체 간 천연가스(NG) 직접 계약 | R |
| 3. 전기자동차 충전기 형식승인 | R |
| 4. 전기자동차 충전 방식 표준 플러그 | R |
| 5. 방사선 취급 관련 면허 규제 완화 (RI 라이선스 허용 범위 확대) | R |
| 6. 탄력성 있는 연료사용 및 효율 증대를 통한 청정 에너지 생산 | R |
| 7.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REC) 계약방식 변경 | R |
| 8. 국산 - 외산 풍력기자재에 대한 REC 계약금 차별화 | P |
| 9. 신재생에너지 인·허가 프로세스의 일원화 | P |
| 10. 전력구매계약 (PPA, Power Purchase Agreement)의 차별 | P |
| 11. 재생에너지에 대한 재정지원: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한계 | R |
| 12. 건물의 에너지 효율: 녹색건축물 인증제도(G-SEED) | R |

인적자원(HR) 워킹그룹

- | | |
|------------------|---|
| 1. 연차유급휴가 관련 | P |
| 2. 중소기업 혜택 적용 제외 | P |

정책 관련: P
규제 관련: R

- | | |
|--------------------|---|
| 3. 장애인 고용 촉진 제고 방안 | P |
|--------------------|---|

ICT 워킹그룹

- | | |
|----------------------------|---|
| 1. 클라우드 보안인증 프로그램의 진입장벽 | P |
| 2.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 우선 적용 권고 | P |
| 3. 공공기관의 외국계 공급업체 표준계약서 수용 | R |

조세 워킹그룹

- | | |
|---|---|
| 1.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요청 | R |
| 2. 코로나19 관련 외국인 근로소득의 국내 과세 요건 완화 | R |
| 3. 외국법무법인의 비거주자 파트너 관련 개인소득세 신고/납부 편의 제고 및 납세행정 효율성 제고 | R |
| 4. 코로나19로 인한 국제적 이동 제한, 격리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일시적 국내체류가 연장되어 이로 인한 국내 고정사업장 구성 | R |
| 5. 불명확한 서면심사 기간 | R |
| 6. 이전가격 조정에 대한 관세 평가 | R |
| 7.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명확한 소득구분 기준 | R |
| 8. 주택비용 관련 소득·세액공제 | R |
| 9. 국외교육비 세액공제 | R |
| 10. 소득 신고 시 국외 발생한 비용 또한 세액공제 항목 포함 | R |
| 11. 채권 할증발행비용 국내외 소득신고 시 제외 | R |

12. 외국법인에게 지급된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 에 대한 원천징수	R
13. 국내 특수관계인거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시 국제 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전가격 규정 준용 기준 마련	R
14.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에 대한 자료 제출기한	R
15. 상호합의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적용 특례 명확화	R
16. 외국법인의 유형별 목록 고시	R
17. 국외투자기구가 아닌 일반 외국단체의 실질귀속자 판정기준(특 례) 마련	R
관광 산업 워킹그룹	
1.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 3 (양벌규정)의 불합리한 적용	R

‘로우 행잉 프루트 (low-hanging fruit)’ 주요이슈 목록

‘로우 행잉 프루트 (low-hanging fruit)’는 직역으로 ‘낮은 곳에 열린 과일’을 뜻하
며 ‘쉽게 얻을 수 있는 과실’, 즉 ‘해결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과제’로 풀이됩니다.
ECCK는 2020년도 백서에 포함된 총 145개의 건의사항 중 상대적으로 용이하
게 개선이 가능한 이슈들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자동차 위원회

10. 제작자동차 배출/소음 인증 관련 불필요한 시험방법에 대한 개정	p 61
11. 배출가스관련 부품의 결함시정현황 보고·관리 항목의 명확화	p 62
14. 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 산정방법 명확화	p 64

주류 위원회

3. 선물 목적의 스마트오더 허용	p68
4. 스마트오더 디지털 경품 홍보 및 할인 허용	p68

화학 위원회

1. 화학제품 관련 규제 제·개정에 대한 TBT 알림	p 72
-------------------------------	------

화장품 위원회

4. 판매증명서, 제조증명서 구비 요건 개선 (p 83)	p 83
---------------------------------	------

헬스케어 위원회

29. 임상시험 변경승인 절차 개선 및 일괄적응에 대한 공식절차 및 가이드라인 구축 p 112

31. BSE 자료제출 관련 전자 서명 허용 및 공증 기준 완화 요청 p 113

식품 위원회

1. 표시기준 개정사항의 경과조치 필요 p 88

2. 천연/합성향료 표시 개선 p 89

5. 기구 및 용기포장 재활용 합성수지제 범위 확대 p 91

보험위원회

2. 수입차 표준 정비 수가 및 시간 공표 p 116

지식재산권 위원회

3. 국경조치 p 120

5. 관세청 우체국 국제특송(EMS)사업 효율성 제고 p 121

6. 특별사법경찰권 지정 p 122

물류 및 운송 위원회

1. 항만 운영 정보 시스템 운영에서 보고 제외 p 130

2. 운임공표제 실시 p 130

2019년 주한유럽상공회의소는 20개 산업별 분야의 규제이슈 및 한국 정부에 제시하는 180개의 건의사항을 발표하였다. 각 규제이슈에 대한 관련 정부 부처 회신 내용과 ECCK의 조치계획은 아래 산업별 분야별로 확인 가능하다.

자동차 위원회

자동차위원회에서는 지난 2019년도 ECCK 백서를 통해 총 13건의 자동차 분야 산업계의 건의 사항을 제안하였으며, 이에 대해 5건의 건의사항에 대해서 수용/부분수용으로 정부부처 검토의견을 전달받았다. 일부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업계의 추가적인 의견을 반영하여 2020년도 백서를 통해 재건의 및 개정건의를 진행하였다.

2019 주요이슈목록

1. 자동차 교환환불 제도에서의 교환환불 요건 및 대상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수용불가

ECCK 조치계획: 재건의

2. EV/PHEV용 구동축전지에 대한 시험 기준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수용불가

ECCK 조치계획: 진행 상황 점검

3. 손조작식 조종장치 또는 표시장치의 식별표시 및 조명기준의 국제기준과의 조화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부분수용

ECCK 조치계획: 진행 상황 점검

4. 변경보고제도의 법률에서의 규정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장기검토

ECCK 조치계획: 재건의

5. 고연비 차량의 평균에너지소비효율 산정방법 명확화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수용

ECCK 조치계획: 재건의

6. EU의 온실가스 저감 기술에 대한 인정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부분수용

ECCK 조치계획: 재건의

7. 정기검사제도의 유연성 제고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장기검토

ECCK 조치계획: 진행 상황 점검

2019 리뷰

8. 세미트레일러를 견인하는 트랙터의 HS Code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수용불가

ECCK 조치계획: 재건의

9. 자동차 너비 기준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수용불가

ECCK 조치계획: 재건의

10. 중대형차 온실가스 산출 프로그램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수용

ECCK 조치계획: 재건의

11. 한-EU의 소음 기준 조화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기초치

ECCK 조치계획: 진행 상황 점검

12. 타이어 안전인증의 표시 시점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기초치

ECCK 조치계획: 재건의

13. 중고차 판매업, 자동차 전문수리업의 생계형 적합 업종 지정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장기검토

ECCK 조치계획: 재건의

주류 위원회

주류 위원회는 2019년 백서에 3개의 이슈에 대하여 건의하였다. 회신기한연장 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진행사항을 점검할 예정으로, 주류의 경품제공 내용을 홍보 및 마케팅 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의 개정을 희망하는 바이다. 병맥주의 용도구분 표시제는 폐지될 예정이다. 주류의 통신/온라인 판매는 스마트 오더의 허용으로 온라인 결제까지는 가능 해졌으나 결제한 상품을 여전히 소비자가 직접 매장에 가서 찾아 가야 한다.

2019 주요이슈목록

1. 주류 경품제공 내용 디지털 마케팅 허용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회신기한연장

ECCK 조치계획: 진행 상황 점검

2. 병맥주의 용도구분 표시제 개선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장기검토

ECCK 조치계획: 안건종료

3. 주류의 통신/온라인 판매 허용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장기검토

ECCK 조치계획: 안건 종료

화학 위원회

유독물 지정과 관련한 건의사항이 수용된 것은 긍정적이나, 실제 의견수렴에 있어 산업계가 충분한 기간과 합리적인 절차를 확보할 수 있는지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또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과 관련하여 많은 의견이 수용되어 법 개정에 반영되었거나 반영될 예정이며, 연구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다. 그러나 여전히 화학법규 내 중복규제가 존재하며, 국제적으로 조화되지 않는 기준들에 대해서 해외 사례를 추가하여 재건의 할 예정이다.

2019 주요이슈목록

1. 법안·고시 개정의 투명성 강화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부분수용

ECCK 조치계획: 재건의

2. 국내 화학관련 법률의 중복규제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장기검토

ECCK 조치계획: 진행 상황 점검

3. 변경신고와 변경제출의 시기 및 기준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미수용

ECCK 조치계획: 진행 상황 점검

4.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의 성분정보 제출 제외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장기검토

ECCK 조치계획: 진행 상황 점검

5. 소비자용 살생물제품의 '화관법' 적용 제외와 '제품 안전법'의 보완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장기검토

ECCK 조치계획: 재건의

6. 중점관리물질: 지정 및 함유제품 신고**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미수용**ECCK 조치계획:** 안건종료 (중단)7. 연간 국내 총 제조·수입량 기준**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미수용**ECCK 조치계획:** 안건종료 (중단)8. QSAR 자료 제출**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장기검토**ECCK 조치계획:** 재건의9. 연구개발용 신규물질의 등록 등 면제확인제도 간소화**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미수용**ECCK 조치계획:** 진행 상황 점검10. IT System: 대리인 제도하에 등록·면제 건의 정보보호**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장기검토**ECCK 조치계획:** 진행 상황 점검11. 유해성분류 고시 전 의견수렴기간**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수용**ECCK 조치계획:** 진행 상황 점검12. OR의 간접수입 등록 한계**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장기검토**ECCK 조치계획:** 진행 상황 점검13. 유해법 때 유해성심사받은 물질의 OR 신고**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미수용**ECCK 조치계획:** 안건종료 (중단)14. 기술지침서 마련: 등록면제 대상 Article**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미수용**ECCK 조치계획:** 진행 상황 점검15. 변경 등록 및 변경신고 기간**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부분수용**ECCK 조치계획:** 진행 상황 점검16. 고분자 등록**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장기검토**ECCK 조치계획:** 진행 상황 점검17. 저우려고분자 및 신고대상 고분자화합물에서 중점관리물질 요건 삭제**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미수용**ECCK 조치계획:** 안건종료 (중단)18. 살생물제품 승인 신청자료 생략**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기조치**ECCK 조치계획:** 안건종료19. 수입살생물처리제품의 인정 기준**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수용**ECCK 조치계획:** 진행 상황 점검20. 기존 살생물물질 추가 신고**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수용**ECCK 조치계획:** 안건종료21. 생활화학제품의 표시 기준**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부분수용**ECCK 조치계획:** 진행 상황 점검22. 생활화학제품 안전확인기준의 국제적 조화**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부분수용**ECCK 조치계획:** 진행 상황 점검23. 위생용품에 대한 중복규제**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장기검토**ECCK 조치계획:** 진행 상황 점검24. 화학물질확인신고 및 화학물질정보 중복제출**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장기검토**ECCK 조치계획:** 진행 상황 점검25.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에 의한 화학물질확인신고**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장기검토**ECCK 조치계획:** 진행 상황 점검

26. 화학물질확인번호의 구성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장기검토
ECCK 조치계획: 진행 상황 점검

27. 화학물질확인 변경신고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장기검토
ECCK 조치계획: 진행 상황 점검

28.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제외 대상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미수용
ECCK 조치계획: 안건종료 (중단)

29.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미수용
ECCK 조치계획: 안건종료 (중단)

30.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변경제출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미수용
ECCK 조치계획: 안건종료 (중단)

31. 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 승인 신청 제출 자료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미수용
ECCK 조치계획: 재건의

화장품 위원회

2019년도 백서에서 수용되거나 장기 검토로 답변된 부분은 진행상황을 지속 점검할 예정이며 제조원 표시, 조제관리사, 탈모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 화장품의 인체적용 시험 자료 및 공정거래위원회 관련은 실제적인 문제점을 추가로 확인할 것이다. 자외선차단지수 표시 범위 확대는 추가 근거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된다. 검토의견 중 일부는 현재 상황과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2020년도 백서에 수정 제안될 것이다.

2019 주요이슈목록

1. 화장품 포장재 재질 구조 평가 및 표시의 합리적 도입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부분수용
ECCK 조치계획: 재건의

2. 천연 관련 표시 광고 인증 범위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수용불가
ECCK 조치계획: 재건의

3. 판매증명서 제출 요건 개선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장기검토
ECCK 조치계획: 진행 상황 점검

4. 표준통관예정보고 제출 서류 개선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수용불가
ECCK 조치계획: 진행 상황 점검

5. 표준통관예정보고 기재 항목 개선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수용불가
ECCK 조치계획: 진행 상황 점검

6. 수입통관시 전자 문서 인정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수용
ECCK 조치계획: 진행 상황 점검

7. 제조원 표시 삭제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수용불가
ECCK 조치계획: 안건종료

8.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및 범위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수용불가
ECCK 조치계획: 안건종료

9. 자외선차단지수(SPF) 표시 범위 확대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수용불가
ECCK 조치계획: 안건종료

10. 기능성화장품 인체적용 시험 자료 확대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수용
ECCK 조치계획: 진행 상황 점검

11. 부당 표시 · 광고 행위 금지의 제재 대상에 “행위자” 추가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장기검토
ECCK 조치계획: 진행 상황 점검

12.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 조사시 영장제도 도입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수용불가

ECCK 조치계획: 안건종료

13.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 요청 범위 및 형식 제한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수용불가

ECCK 조치계획: 안건종료

패션 및 유통 위원회

ECCK는 유아용 섬유제품 수입 절차 관련 문제를 제기한 후 관세청이 관세 완화 절차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여 준수율이 높은 기업의 제품에 대한 검사를 줄이고 수입 요건을 면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나아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현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에 대해 관련 산업계와 논의를 거칠 것이라는 검토의견을 받았다. ECCK는 직접운송 요건, 산성도 규제, 유아용 섬유제품의 시험 인증 기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에 주목한다.

2019 주요이슈목록

1. 직접운송 요건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장기검토

ECCK 조치계획: 재건의

2. 가격표시제 규칙관련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수용

ECCK 조치계획: 진행 상황 점검

3. 안전/ 품질표시제 산성도 규제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수용불가

ECCK 조치계획: 안건종료 (중단)

4. 유아용 섬유제품의 수입 과정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수용

ECCK 조치계획: 진행 상황 점검

5. 유아용 섬유제품의 시험 인증 기준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수용불가

ECCK 조치계획: 재건의

6. 규제 변동사항 관련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수용

ECCK 조치계획: 진행 상황 점검

식품 위원회

‘천연향료’의 정의 및 규격 개선의 경우 기준규격을 국제기준과 조화를 이루어 재검토되기를 희망한다. 또한 Non-GMO 수출국 표시 허용 및 한글 표시 개정사항에 관한 건의는 업계의 상황 및 의견을 다시 반영하여 재건의를 진행한다. 기수용 된 이슈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2019 주요이슈목록

1. 천연향료의 정의 및 규격 개선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수용

ECCK 조치계획: 재건의

2. 해외우수제조업소 제도와 해외우수수입업소 제도의 형평성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기수용

ECCK 조치계획: 진행 상황 점검

3. Non-GMO 수출국 표시 사용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수용불가

ECCK 조치계획: 재건의

4. 식품 수입검사 절차의 개선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기수용

ECCK 조치계획: 진행 상황 점검

5. 한글표시 개정사항에 대한 각부처간 논의 필요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수용불가

ECCK 조치계획: 재건의

헬스케어 위원회

위험분담제의 대상이 중증난치질환까지 확대되고 후발 약제 포함을 검토하며 대면심사 제도 도입, EU와의 GMP 상호인정 협정 체결 기반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등의 개정 노력에 긍정적이다. 정부부처의 장기검토되거나 수용된 안건은 진행상황을 점검할 것이며 수용되지 않은 부분은 문제점을 다시 확인하혁신에 대한 인정과 규제의 합리화를 위하여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재건의하였다.

2019 주요이슈목록1. 신약의 환자 접근성 개선을 위한 경제성평가 가이드라인 개선**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부분수용**ECCK 조치계획:** 재건의2. 신약의 환자접근성 확보를 위한 경제성평가 면제 제도의 범위 확대**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장기검토**ECCK 조치계획:** 진행 상황 점검3. 복합제 산정 기준 개선**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수용불가**ECCK 조치계획:** 재건의4. 약가 협상 시 부과되는 새로운 요구조건의 개선**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수용불가**ECCK 조치계획:** 재건의5. 글로벌 혁신신약에 대한 가격 우대 정책의 현실 가능화**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수용불가**ECCK 조치계획:** 재건의6. 환자의 약제 접근성 제고를 위한 위험분담제의 대상 범위 확대**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부분수용**ECCK 조치계획:** 재건의7. 위험 분담제 환급제 부가가치세 이슈**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수용불가**ECCK 조치계획:** 재건의8. 신속 등재 제도 도입(선 등재 후 평가)**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수용불가**ECCK 조치계획:** 재건의9. 제4차 국가암관리종합계획**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수용불가**ECCK 조치계획:** 재건의10. 중증·희귀질환 의약품의 보장성 강화**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부분수용**ECCK 조치계획:** 재건의11. 사용량 약가 연동제의 개선**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수용불가**ECCK 조치계획:** 진행 상황 점검12. 제네릭 개수가 3개 미만인 최초 등재 의약품에 대한 가산제도 유지**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수용불가**ECCK 조치계획:** 안건종료13. 약제 재평가, 약제비 적정관리(약제군 별 약가조정)등 약제관리제도의 합리화**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부분수용**ECCK 조치계획:** 재건의14. 위원회 의사결정에 대한 투명성 제고를 통한 의료정책 예측성 향상**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수용불가**ECCK 조치계획:** 재건의15. 실거래가로 인한 가격인하에서의 투명성 제고**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부분수용**ECCK 조치계획:** 재건의16. 위탁제조판매업 범위 확대**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수용불가**ECCK 조치계획:** 안건종료17. 신약 허가에 MRCT (다지역 임상 시험) 전략 허용 및 제도 마련**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수용**ECCK 조치계획:** 안건종료

- 18. 환자의 질병 치료 및 예방에 필요한 혁신적인 약물을 선별하고 이에 대한 신속한 승인 절차 마련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기초치
ECCK 조치계획: 진행 상황 점검

- 19. 품목허가 갱신제도 간소화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수용불가
ECCK 조치계획: 안건종료

- 20. 유럽연합과의 GMP 평가 및 품질관리 시험의 상호인정 협정 체결의 조속한 추진을 통한 제도 개선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수용
ECCK 조치계획: 재건의

- 21. 혁신적인 의약품의 조건부 허가 요건의 개선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수용
ECCK 조치계획: 재건의

- 22. 초기 임상시험에 대한 임상시험승인 검토 과정 중 추가자료 요구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수용불가
ECCK 조치계획: 안건종료

- 23. 시판 후 조사 제도의 개선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수용
ECCK 조치계획: 진행 상황 점검

- 24. 허가사항 변경에 따른 포장재 표시기재 적용 요건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수용불가
ECCK 조치계획: 안건종료

- 25. 외국계기업에게 적절한 혁신형제약기업 인증기준의 보완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장기검토
ECCK 조치계획: 재건의

- 26. 의약품 임상시험에 부수적으로 사용되는 의료 기기의 수입 절차 및 사후 보고 절차 간소화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장기검토
ECCK 조치계획: 진행 상황 점검

- 27. 동물유래 품질검사 시약의 통관 검역절차 간소화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수용불가
ECCK 조치계획: 안건종료

- 28. 매 수입 배치(Batch)별 광우병 미감염 증명서 제출 면제 요청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수용
ECCK 조치계획: 진행 상황 점검

- 29.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관세부과 면제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수용불가
ECCK 조치계획: 안건종료

- 30. 예방접종비 제도개선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수용불가
ECCK 조치계획: 재건의

- 31. 수입백신 및 의약품의 중복적인 품질검사시험 개선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수용불가
ECCK 조치계획: 재건의

- 32. 백신 제조(수입)사의 품질검사 전 항목 시행 규정 철회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수용불가
ECCK 조치계획: 진행 상황 점검

- 33. 의료장비 수리 부품에 대한 KC 인증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수용
ECCK 조치계획: 안건종료

- 34. 치료재료 가격조정 방식의 합리화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수용불가
ECCK 조치계획: 진행 상황 점검

보험 위원회

2019년 ECCK 보험위원회 백서에서는 총 5개의 사항을 금융위원회 보험과, 국토교통부 등을 통해 건의하였다. 결과적으로 수입차 표준 정비 수가 및 정비 시간 공표 관련 사항은 긍정적으로 수용되었고, 보험정비협의회를 통해 실질적인 논의와 구체적인 공표가 이루어지길 고대하며 정부의 지난 답변을 반영하여 재건의 하게 되었다. 그 외의 수용되지 않은 안건들 중 일부에 대해서도 정부의 재검토와 열린 소통을 요청하며, 2020년 백서를 통해 재건의 되었다.

2019 주요이슈목록

1. 음주운전자에 대한 보장 폐지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수용불가

ECCK 조치계획: 안건종료

2. 자동차 부품 가격 인상 사전 고지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수용불가

ECCK 조치계획: 안건종료

3. 본인 인증 절차 간소화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수용불가

ECCK 조치계획: 안건종료

4. 수입차 표준 정비 수가 및 정비 시간 공표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장기검토

ECCK 조치계획: 재건의

5. ‘빛의 대물림 방지’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 발의에 대하여 긍정적 검토 요청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수용불가

ECCK 조치계획: 재건의

지식재산권 위원회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는 2019년 ECCK 백서에서 다루어, 법정손해배상액의 상한선 상향을 검토하게 되고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위조상품 유통에 대한 책임 부과 및 이의 면제 규정 도입을 검토하게 된 점을 강조한다. 지난해에 공식 답변을 받아보지 못했던 건의사항의 경우 2020 백서에서 재건의 되었다.

2019 주요이슈목록

1. 위조산업으로 인한 경제적 손해에 대한 연구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장기검토

ECCK 조치계획: 안건종료

2. 지식재산 관련 사건에 관한 협력 부족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답변 없음

ECCK 조치계획: 재건의

3. 지식재산 범죄에 관한 효과적이지 못한 처벌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장기검토

ECCK 조치계획: 재건의

4. 국경조치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답변 없음

ECCK 조치계획: 재건의

5. 병행수입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답변 없음

ECCK 조치계획: 재건의

6. 자유무역지역(FTZ) 환적화물 단속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부분수용

ECCK 조치계획: 진행 상황 점검

7. 공공연한 위조품 판매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답변 없음

ECCK 조치계획: 재건의

8. 유사상표 단속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답변 없음

ECCK 조치계획: 재건의

9. 온라인 매개자들의 자정 노력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수용

ECCK 조치계획: 진행 상황 점검

10. 온라인 단속에 관한 이해관계자 간 협력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답변 없음

ECCK 조치계획: 재건의

11. 저작권 및 사용료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미수용

ECCK 조치계획: 재건의

12. 표준필수특허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답변 없음

ECCK 조치계획: 재건의

13. 기술 수출 관련 규제의 모호성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답변 없음
ECCK 조치계획: 재건의

14. 손해배상액 산정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답변 없음
ECCK 조치계획: 재건의

15. 법정 손해배상 제도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부분수용
ECCK 조치계획: 안건종료

16. 규제 개정 전 논의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수용
ECCK 조치계획: 진행 상황 점검

주방 및 소형가전 위원회

가정용 저울의 검사 기준 완화에 대한 건의는 2020년 7월 형식승인 규제 완화 및 사후관리 방안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위한 회의가 진행되었으며 추후 진행방향에 대해 계속해서 모니터 할 예정이다. 전기용품안전기준 최신버전 업데이트와 국내 전기용품안전기준 국제기준화는 수용되어 안건을 종료한다.

2019 주요이슈목록

1. 가정용 저울의 검사 기준 완화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장기검토
ECCK 조치계획: 진행 상황 점검

2. 전기용품안전기준 최신버전 업데이트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수용
ECCK 조치계획: 안건종료

3. 국내 전기용품안전기준 국제기준화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수용
ECCK 조치계획: 안건종료

물류 및 운송 위원회

2019 주요이슈목록

1. 톤세제도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수용
ECCK 조치계획: 안건 종료

2. Cabotage 허가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수용불가
ECCK 조치계획: 안건 종료

3. 지속가능성 & 친환경 관련 법 및 과제 (1)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수용불가
ECCK 조치계획: 안건 종료

4. 지속가능성 & 친환경 관련 법 및 과제 (2)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수용불가
ECCK 조치계획: 안건 종료

5. 지속가능성 & 친환경 관련 법 및 과제 (3)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수용불가
ECCK 조치계획: 안건 종료

6. 직접운송 요건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장기검토
ECCK 조치계획: 재건의

7. 중계 거점을 통한 직접 운송/운송 방식 변경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장기검토
ECCK 조치계획: 재건의

조선 및 해양 위원회

ECCK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실적이 우수한 원사업자에 대하여는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부여하는 점을 인지하였으며,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실질적인 사용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려는 점을 기쁘게 생각한다.

나아가 선박평형수관리법령 개정을 통해 외국에서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은 자료심의를 통해 우리나라 형식승인시험을 완화하거나 면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도 높이 평가한다. 이미 해외에서 승인받은 제품은 한국에서도 수용하고 한국 표준과 국제 표준을 일치시킨다면 한국에서의 무역이 더욱 용이해질 것이다.

2019 주요이슈목록

1. 해운조선업 국산화 정책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부분수용

ECCK 조치계획: 진행 상황 검토

2. 표준일치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수용불가

ECCK 조치계획: 진행 상황 검토

3. 불공정 구매계약 조건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부분수용

ECCK 조치계획: 진행 상황 검토

4. 국내 조선소 최저가 입찰제 관행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답변 없음

ECCK 조치계획: 재건의

항공 및 방위산업 워킹그룹

항공 및 방위산업 워킹그룹은 총 5건의 안건을 건의하였다. 한국의 중소기업을 위한 시설보안승인, 철충교역 프로젝트선발 절차 개선, 한국의 준법 회사 화이트 리스트, 일관성 없는 설명회 참석 자격요건 증빙서류 제출 요구, 대표이사 서명 요건 가운데 한국의 준법 회사 화이트 리스트 안건에 대해서는 수용 답변을 받은 바 있다.

2019 주요이슈목록

1. 한국의 중소기업을 위한 시설보안승인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답변 없음

ECCK 조치계획: 안건 종료

2. 철충교역 프로젝트선발 절차 개선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부분수용

ECCK 조치계획: 재건의

3. 한국의 준법 회사 화이트 리스트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수용

ECCK 조치계획: 진행 상황 점검

4. 일관성 없는 설명회 참석 자격요건 증빙서류 제출 요구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답변 없음

ECCK 조치계획: 안건 종료

5. 대표이사 서명 요건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장기검토

ECCK 조치계획: 진행 상황 점검

에너지 환경 워킹그룹

전기자동차 충전시스템 규격 개정 건의사항이 수용됨에 따라 안전한 사용 환경을 마련하고 글로벌 기준과의 조화를 이룰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바이오 연료 혼합 의무 비율 향상과 LNG 수입부과금의 추가 인하와 관련하여 부분적인 수용이 이루어진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자체소비를 위한 REC 부여 및 녹색건축물 인증제도와 관련하여 의견을 보완하여 재건의 할 예정이다.

2019 주요이슈목록

1. 전기자동차 충전시스템 규격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수용

ECCK 조치계획: 진행 상황 점검

2. 신재생에너지 및 재활용 정책 간의 일관성: 액체 연료 내 바이오 연료 의무 비율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부분수용

ECCK 조치계획: 진행 상황 점검

3. 가스 발전소 개발 장려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부분수용

ECCK 조치계획: 진행 상황 점검

4. 재생에너지에 대한 재정지원: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한계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부분수용

ECCK 조치계획: 재건의

5. 건물의 에너지 효율: 녹색건축물 인증제도(G-SEED)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기초치

ECCK 조치계획: 재건의

6. 국내 전력시장에 대한 접근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장기검토

ECCK 조치계획: 진행 상황 점검

7. 국내 수자원관리에 대한 접근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기초치

ECCK 조치계획: 진행 상황 점검

8. 스마트 및 지속가능한 도시의 가속화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부분수용

ECCK 조치계획: 진행 상황 점검

인적자원(HR) 워킹 그룹

ECCK는 2019년 백서에 포함된 건의사항을 통해 노동 시장 관련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계획에 주목할 수 있어 뜻 깊게 생각한다. 여기에는 직장내 괴롭힘 판단기준 사례집 발간 계획, 포괄임금제 지침 확정 계획, 공휴일 민간 적용 지원사업 신설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 계획,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최대 6개월로하는 제도 신설을 위한 입법 논의 등이 포함된다. ECCK는 위의 계획이 구체적인 결과로 현실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2019 주요이슈목록

1. 연차유급휴가 관련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장기수용

ECCK 조치계획: 재건의

2. 중소기업 혜택 적용 제외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답변 없음

ECCK 조치계획: 재건의

3. 주 52시간 근무제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부분수용

ECCK 조치계획: 진행 상황 검토

4.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부분수용

ECCK 조치계획: 안건종료

5. 포괄임금제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부분수용

ECCK 조치계획: 진행 상황 검토

6. 사기업 공휴일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수용

ECCK 조치계획: 진행 상황 검토

7. 노동법의 유연화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수용불가

ECCK 조치계획: 안건종료 (중단)

조세 워킹 그룹

2019년 ECCK 조세워킹그룹 백서에서 건의한 총 14개의 안건 중 총 8개의 안건이 수용되거나 장기검토 대상으로 신중히 개선방안 검토 중에 있다. 이러한 정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개선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향후에도 지속적이고 열린 논의를 이어 나갈 수 있길 기대하는 바이다. 수용되었지만 불충분한 안건, 수용되지 않았거나 장기 검토 중에 있지만 재건 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총 8개의 안건들은 국제 사례 추가나 보다 구체적인 설명 등을 추가하여 2020년 백서를 통해 재건의 할 예정이다.

2019 주요이슈목록

1. APA 처리기간 및 방식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수용불가

ECCK 조치계획: 안건종료

2.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 요청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수용불가

ECCK 조치계획: 재건의

3.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대상 명확화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수용

ECCK 조치계획: 안건종료

4. 외국법인에게 지급된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에 대한

원천징수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수용불가

ECCK 조치계획: 재건의

5. 국내 특수관계인거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전가격 규정 준용 기준 마련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장기검토

ECCK 조치계획: 재건의

6.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에 대한 자료 제출기한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수용불가

ECCK 조치계획: 재건의

7. 금융회사를 위한 개별기업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장기검토

ECCK 조치계획: 안건종료

8. 소득 신고 시 국외 발생한 비용 또한 세액공제 항목 포함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장기검토

ECCK 조치계획: 재건의

9. 채권 할증발행비용 국내외 소득신고 시 제외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장기검토

ECCK 조치계획: 재건의

10. 상호합의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적용 특례 명확화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수용

ECCK 조치계획: 재건의

11. 외국법인의 요형별 목록 고시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장기검토

ECCK 조치계획: 재건의

12. 다국적기업의 cash-pooling 제도 참여에 따른 국외 특수관계자 대여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에서 제외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수용불가

ECCK 조치계획: 안건종료

13. 외국법인의 경우 고용계약서에 의한 임원상여금 지급액도 손금 인정 필요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장기검토

ECCK 조치계획: 진행 상황 점검

14. 부가세 영세율 적용시 상호주의 적용 국가를 정부에서 직접 열거할 필요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수용불가

ECCK 조치계획: 안건종료

관광산업 워킹그룹

관광산업 워킹그룹은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 3 (양벌규정)의 불합리한 확대 적용에 관련된 안건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한국정부로부터 수용불가 회신을 받았으며 2020년 백서에 재건의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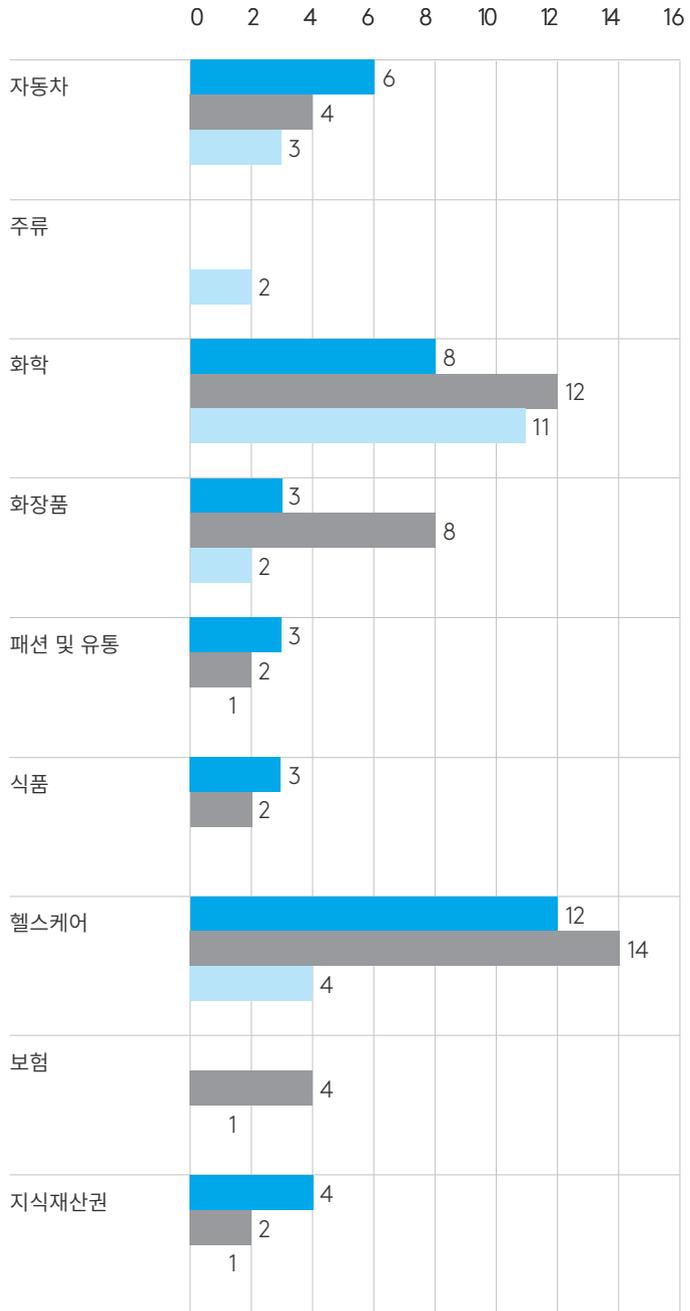
2019 주요이슈목록

1.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 3 (양벌규정)의 불합리한 확대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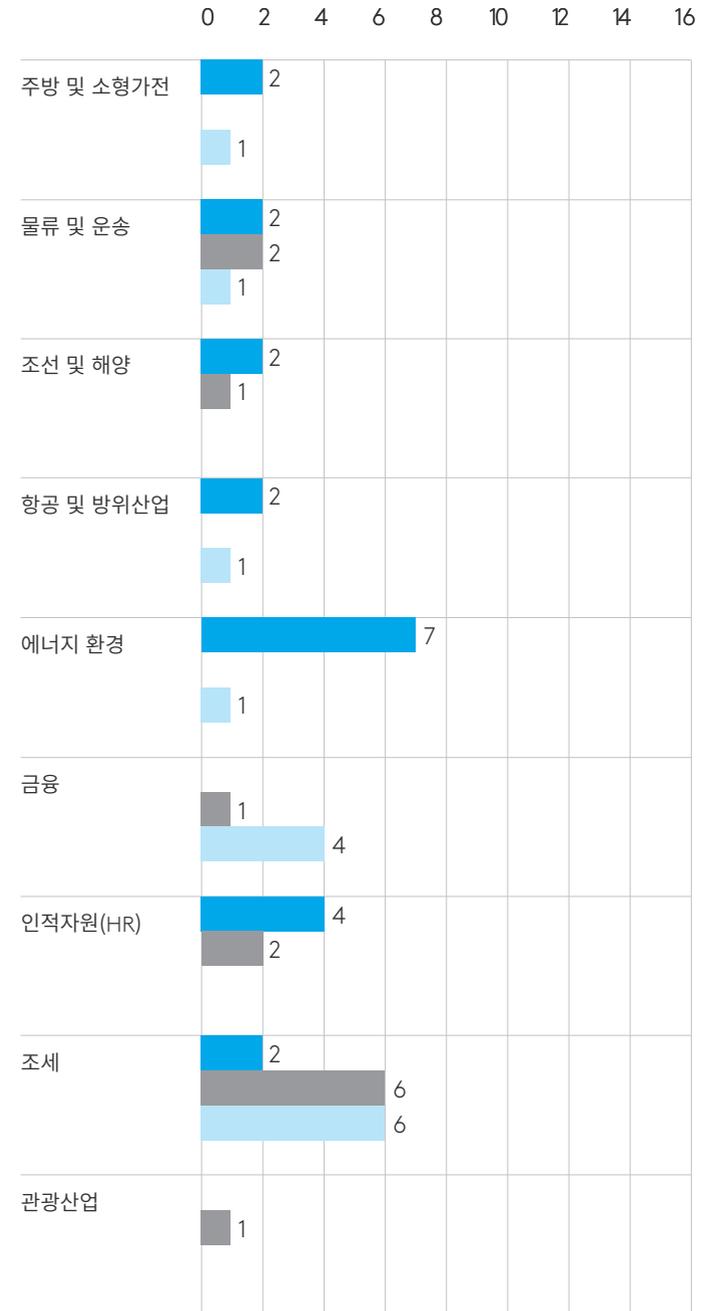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수용불가

ECCK 조치계획: 재건의

'ECCCK 백서 2019' 주요이슈 관련 정부 부처 회신내용 (위원회/워킹그룹 별)



■ 수용 ■ 미수용 ■ 진행중



ECCK 산업별 위원회 보고서

임창훈
부장,
자동차 위원회

자동차 위원회

개요

2019년도 국내 승용차 시장에서 수입자동차의 점유율은 지난해보다 6.1% 감소하였으나, 수입 승용차 시장에서 유럽 자동차 제작사의 점유율은 전년보다 상승한 75.2%를 기록하였습니다. 2019년도 상용차 시장에서 유럽 자동차 제작사의 점유율은 트랙터의 경우 73.5%, 덤프트럭은 76.9%였으며 대형 카고 시장에서는 29.8%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였습니다. 타이어 시장에서도 국내 자동차 제작사의 수입 타이어 장착 비율의 증가에 힘입어 수입 타이어의 판매가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여 주었습니다.

자동차 규제 분야에 있어서는 자동차 판매사가 저공해차를 일정 비율 이상 판매하도록 하는 저공해차 보급 목표제가 올해 2020년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또한, 교통소음 저감 및 저소음 타이어 보급을 위해 타이어 제작사가 타이어의 소음도를 신고하고 이를 타이어에 표시하도록 하는 타이어 소음도 신고제 및 등급표시 제도가 올해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현재 한국과 EU는 한-EU FTA를 바탕으로, 자동차 기술 규정의 상호 인정과 국제 기준과의 조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지금까지 매우 긍정적인 성과가 있었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국내의 관련 규제를 개정할 때 업계의 의견 수렴이나 검토 기간 부여에 있어서는 더욱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해외에 본사가 있는 자동차 제작사의 경우에는 해외 본사와의 논의와 이를 위한 번역 등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였을 때, 짧은 기한 내에 영향 분석과 의사 결정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규제나 지침을 도입할 경우에는 최소 3~6개월 간 업계와의 논의 및 업계로의 검토 기간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별히, 온실가스기준이나 저공해차 보급목표 등의 경우에는 제작사에서 필요한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중장기적 목표에 대해 충분한 기간을 두고 사전에 제시될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 제작사로부터의 충분한 의견 수렴은 정부의 규제 도입에 있어서도 국제 기준 동향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하고, FTA 측면에서도 무역장벽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게 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주요이슈

1. 자발적 제작결함 시정조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제도 개선

현재 자동차제작자는 제작결함에 대한 시정조치(리콜)를 하는 경우 안전기준 부적합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받고 있는 가운데, 자동차제작자가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를 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이 감경없이 부과되고 있어 이러한 현행 제도의 개선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자동차제작자의 자발적 시정조치는 소비자 보호조치의 일환이며, 잘못된 행동으로서 처벌받아야 할 대상으로 볼 수 없습니다. 더욱이 자발적 시정조치가 아닌 국토교통부의 조사에 따라 시정조치명령을 받는 경우에도 과징금 감경을 받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와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토교통부의 조사에 따라 시정조치명령을 받는 경우에도 해당

조사에 적극 협조한 경우에는 과징금의 감경 대상이 되고 있는데, 제작사의 자발적 시정조치는 조사에 적극 협조한 경우보다 더 많은 정상제작의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자발적인 시정조치의 경우에는 현저히 신속하게 조치가 시작될 수 있으므로 시정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관대한 처분이 필요합니다. 자동차제작자의 자발적 시정조치는 법이 정한 기준보다 넓게 행해지는 소비자를 위한 조치로서 적극 권장되어야 하는 것이나, 자발적 시정조치에 대해서 감경없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제작사의 결함 개선을 위한 자발적 노력으로의 유인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현행 과징금 부과 기준은 시정조치 대상 대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제작 결함 시정 조치 방법이 전수 조사 후 필요시 부품 교체 등의 형태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개별 자동차들”의 대수를 기준으로 과징금이 산정되어야 하며, 실제 안전기준에 부적합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차량 대수에 대해서는 과징금 산정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건의사항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제1의2 ‘법 제74조 제2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의 개정을 건의합니다. 자발적 제작결함시정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를 면제하거나 80%이상의 감경이 되도록 개정이 요망됩니다. 또한, 제작결함 시정 조치 방법이 전수 조사 후 필요시 부품 교체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개별 자동차들”의 대수를 기준으로 과징금이 산정되도록 개정을 요망합니다.

관련규정 자동차 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관련부처 국토교통부

건의사항 조치현황 신규

2. 제작 결함 시정 대상 범위의 개선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자동차제작자는 제작 등을 한 자동차에 결함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입자동차의 경우, 수입이 이루어지면 제작된 자동차로 간주되어 판매되기 전의 자동차라 하더라도 제작결함 시정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자동차제작자는 수입 후 출고대기장에 있는 반출 전의 자동차 등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가 없는 자동차에 대해서도 통지서 발송 및 신문 공고를 진행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제작 결함 내용을 알린다는 제작 결함 고지의 취지에 맞지 않고 자동차제작자에게는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소요하게 하는 문제점을 주고 있습니다.

건의사항

자동차제작자의 제작 결함 시정 대상은 판매된 자동차에 한정되도록 관련 규정의 개정이 요망됩니다.

관련규정 자동차관리법

관련부처 국토교통부

건의사항 조치현황 개정

3. 자동차교환환불 요건의 누적수리기간 30일 기준에 대한 합리적 보완

현행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 2에서는 자동차 소유자가 신차의 교환 및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요건으로 1회 이상 수리 후 누적수리기간이 총 30일을 초과한 자동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누적수리기간은 자동차 소유자의 수리요청일로부터 자동차제작자의 수리완료 통보일까지의 기간으로 해석되고 있는데,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수리기간이 지연된 경우 이를 수리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실제 자동차에 하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리기간이 30일을 초과하였다는 사유로 자동차 교환환불에 대한 신청이 있을 수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한 해외의 자동차 및 부품 공장의 가동 중단으로 부품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자동차제작자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이며 자동차 하자로 인한 자동차교환환불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건의사항

자동차교환환불의 요건이 되는 누적수리기간 30일 기준에 대하여 예외 조항의 마련이 요망됩니다. 법정공휴일 및 주말, 그리고 천재지변과 같이 제작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닌 불가항력적 사유로 수리를 할 수 없거나 부품 수급이 불가한 기간 등에 대해서는 누적수리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을 요망합니다.

관련규정 자동차관리법

관련부처 국토교통부

건의사항 조치현황 개정

4. 자동차 안전하자심의위원회 사무국의 권한 확대

자동차교환환불제도의 시행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는 관련법에서 규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교환/환불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관련법에서 정한 교환/환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중재신청을 하고 있는 사례가 폭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에 불필요한 행정력과 비용 손실의 방지를 위해 자동차 안전하자심의위원회 사무국의 역할을 확대하여 각하 결정에 대한 권한을 제도화하는 것이 요망됩니다. 명백한 각하 사유를 규정해 명시하고, 이에 해당될 경우 자동차 안전하자심의위원회 사무국에서 각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명백한 각하 사유의 예로는 하자재발사실을 자동차제조사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나, 하자재발사실 통보 후 자동차제조사에게 수리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건의사항

자동차교환환불 신청에 대한 명백한 각하 사유를 규정에 명시하고, 각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할 경우에는 중재부를 구성하지 않고 자동차 안전하자심의위원회 사무국에서 각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요망됩니다.

관련규정 자동차관리법

관련부처 국토교통부

건의사항 조치현황 신규

5. 세미트레일러를 견인하는 트랙터의 HS Code

한-EU FTA 협상 시, 한-EU FTA 협정문 부속서 2-다-1에 있는 세미트레일러를 견인하는 트랙터의 HS Code 표기 오류가 발생하여 해당 제품이 한-EU FTA 자동차 및 부품 부속서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부속서에 규정된 자동차의 안전기준에 대한 동등성 인정을 적용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좌석 안전띠 부착에 대한 안전 기준의 경우, 한-EU FTA 부속서에서 안전기준 동등성 인정 항목으로 지정되어 있어, UNECE의 해당 규정을 만족하는 경우 이에 상응하는 국내 안전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속서 적용대상에서의 제외로 인해 UNECE 기준을 한국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EU의 자동차제조사 한국 안전기준에 맞는 사양을 별도로 개발하여야 하는 추가적인 부담을 갖고 있으며, 보다 다양한 사양의 제품을 한국으로 수입하지 못하는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EU 자동차제조사와 국내 소비자가 FTA의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건의사항

한-EU FTA 협정문의 해당조항의 수정을 통하여 세미트레일러를 견인하는 트랙터가 한-EU FTA 부속서 2-다(자동차 및 부품)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요망합니다.

관련규정 한-EU FTA 부속서 2-다 자동차 및 부품

관련부처 국토교통부 / 산업통상자원부

건의사항 조치현황 재건의

6. 한-EU FTA / 한-영 FTA 부속서 최신화

‘한-EU FTA 부속 2-다-3의 표1’ 및 ‘한-영 FTA 부속 2-다-3의 표1’에서는 EU 및 영국을 원산지로 하는 자동차에 대해 국내 안전기준을 준수하는 것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UNECE의 규정 번호와 이에 상응하는 국내 안전기준 조항 번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전기준 동등성 인정 항목). 그러나 국내 안전기준의 조항 번호가 개정된 경우 이러한 개정 사항이 FTA의 해당 부속의 표에는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이로 인해 FTA 규정에 따라 UNECE의 기준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건의사항

한-EU FTA 및 한-영 FTA에서 규정하고 있는 UNECE 기준에 대한 국내 안전 기준 인정이 명확하게 적용받을 수 있도록, 국내 및 유럽 규정의 조항 번호 개정을 반영한 ‘한-EU FTA 부속 2-다-3’ 및 ‘한-영 FTA 부속 2-다-3’의 최신화가 요망됩니다. 혹은, 국내/유럽 규정의 조항 번호가 변경되더라도 기존 안전 기준 동등성 인정 사항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별도의 지침 마련이 요망됩니다.

관련규정 한-EU FTA 부속서 2-다 자동차 및 부품 / 한-영 FTA 부속서 2-다 자동차 및 부품

관련부처 국토교통부 / 산업통상자원부

건의사항 조치현황 신규

7. 유럽 형식 승인 자동차에 대한 국내 자동차 안전 기준 준수 인정

국내에서는 새로운 안전 기준이 도입되는 경우, 시행일 당시 제작/조립/수입되고 있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기존 형식의 자동차로 인정하여 새로운 안전기준의 적용에 대해 일정 기간 유예를 부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U에서도 유사한 형태로 기존 형식의 자동차에는 새로운 안전 기준의 적용 시점에 유예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EU에서 기존 형식으로 인정받아 판매가 되고 있는 자동차가 국내에 수입되는 경우, 그 수입 시점이 특정 안전 기준 시행일 이후가 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는 기존 형식의 자동차로 인정받지 못하여 신규 안전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안전 기준에 대해 한국과 EU에서 시행일을 동일하게 적용을 하더라도, 유럽산 자동차의 국내 수입은 국내 인증 및 배송 등에 필요한 시간이 추가적으로 소요됨에 따라 유럽에서의 판매 시점보다 늦게 수입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FTA의 기본 원칙 및 목적을 고려하였을 때, 유럽에서 기존 형식의 자동차로 인정받은 자동차에 대한 국내로의 시장 접근을 위한 방안 검토가 필요합니다.

건의사항

신규 안전 기준 적용에 있어서 ‘한-EU FTA 부속 2-다-3 표1’ 및 ‘한-영 FTA의 부속 2-다-3 표1’의 항목(안전기준 동등성 인정 항목)에 대해서는 유럽에서 기존 형식의 자

동차로 형식 승인을 받은 경우 국내에서도 해당 안전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받을 것이 요망됩니다.

관련규정 한-EU FTA 부속서 2-다 자동차 및 부품 / 한-영 FTA 부속서 2-다 자동차 및 부품

관련부처 국토교통부

건의사항 조치현황 신규

8. 자동차 너비 기준에 대한 유연성 부여

현행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는 자동차의 너비가 2.5m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유럽의 자동차 너비 규제는 2.55m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로 인해 2.55m 너비 기준으로 제작된 유럽의 버스 및 일부 트럭 차량은 국내로의 수입이 원칙적으로 불가한 상황에 있습니다. 자동차 너비 기준은 도로 설계 기준과 연관되어 검토될 필요가 있는데, 현행 국내 차로에 대한 폭 기준은 3m~3.5m로 규정되어 있어 운행 조건에 따라 차로 폭 기준에 유연성을 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였을 때 자동차 너비 기준에 대해서 유럽의 자동차 너비 기준인 2.55m에 해당되는 0.05m의 추가적인 유연성을 부여하는 것을 기술적으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의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한 친환경 자동차 보급정책에 따라 전기버스와 같은 친환경 승합자동차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유연성 부여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화물/특수자동차 및 2층 승합자동차, 친환경 승합/화물자동차 등 제한적인 차종에 대해서 2.55m 너비 기준 허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건의사항

화물/특수자동차 및 2층 승합자동차, 친환경 승합/화물자동차에 대해서 2.55m의 자동차 너비 기준 허용에 대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관련규정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관련부처 국토교통부

건의사항 조치현황 재건의

9. 배출가스인증 변경보고제도의 법률에서의 규정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 제2항에서는 자동차제작자가 배출가스 인증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배출가스에 영향이 없는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한 변경보고 제도는 직접적으로 규정

되어 있지 않아, 변경보고 의무 위반의 경우에 대해 변경인증 위반과 동일하게 형사처벌 대상으로 간주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수입자동차제작자는 국내자동차제작자와 다르게 변경보고 위반의 사유로 관세법에 의해서도 추가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변경보고는 그 보고의 대상이 환경으로의 영향이 없는 변경 사항이므로, 환경으로 영향을 주는 사항에 대한 변경인증에 대한 의무 미이행과 그 처벌 기준에 있어서 비례성과 정당성이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대기환경보전법과 유사한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령들의 사례에서는 변경승인/허가와 변경보고/신고를 명확히 나누어 규정하고 전자의 의무 미이행에 대해서는 벌칙을, 후자의 의무 미이행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의사항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경미한 변경 사항에 대한 변경보고 제도를 직접 규정하고, 위반 시의 제재도 다른 입법례에 따라 변경인증 미이행은 벌칙, 변경보고 미이행은 과태료 등 형사처벌 외의 제재로 달리 규정하는 것이 요망됩니다.

관련규정 대기환경보전법

관련부처 환경부

건의사항 조치현황 재건의

10. 제작자동차 배출/소음 인증 관련 불필요한 시험방법에 대한 개정

환경부에서는 배출가스 기준 강화로 인하여 관련 시험고시에서도 해당되는 시험 방법을 개정하여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험고시에는 변경 전/후의 모든 시험 방법이 포함되어 있어 혼선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유 차량은 배출가스 시험 방법이 변경(NEDC→WLTP)됨에 따라 차량 중량의 정의가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제출하는 인증 신청 자료 상에는 이전 시험 방법의 중량을 일부 기입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휘발유 차량 배출가스 시험을 위한 CVS-75 모드 측정방법에서도 현재는 유효하지 않은 경유 차량 시험 방법이 명시되어 있으며, 배기 소음 및 경적 소음 시험 방법에도 이전 고속 주행을 위한 ISO 362 시험 방법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건의사항

제작자동차 배출/소음 시험에 대한 규정의 명확성을 위해 해당 고시에서 현재 유효하지 않은 시험 방법에 대한 개정이 요망됩니다.

관련규정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

관련부처 환경부

건의사항 조치현황 신규

11. 배출가스관련 부품의 결함시정현황 보고·관리 항목의 명확화

환경부(교통환경연구소)에서는 지난 2020년 1월 자동차 배출가스관련부품 결함 보고 운영 안내서를 발간하였는데, 이를 통해 배출가스관련 부품 결함을 산정 및 분석 방법에 대한 안내와 함께 2020년 1분기부터 즉시 해당 보고 필요 사항을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인증 시스템 (KENCIS)을 통해 입력할 것을 업계에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부품의 경우 보고 대상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업계의 혼선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20]의 비고 2.에서는 주요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작동 및 제어에 관련되는 기타 부품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규정되고 있는 기타 부품도 보고 대상이 되는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해당 기타 부품들은 주요 부품의 보증수리과정에서 함께 교환되는 관계로 부품 자체로서는 결함을 갖고 있지 않으나 결함시정 요구 건수에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결함시정 요구건수 및 결함 분석현황을 제출하는 KENCIS 입력 페이지는 기본 및 변경 인증 시 제출한 부품목록을 기반으로 하는 목록화 선택이나 기타 입력의 형태로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입력 환경으로 인해 위에서 언급된 기타 부품을 입력하기 위해서는 제작사에서 상당한 행정 인력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또한 적게는 수십 건, 많게는 수백 건을 개별적으로 입력하게 되므로 오타 등의 실수로 인한 입력 오류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건의사항

배출가스관련 부품의 결함 보고 대상은 배출가스 기본인증 및 변경인증 시 제출한 부품목록으로 한정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0] 비고 2.에 규정된 부품들은 인증기관에서 별도 수집 및 관리하지 않는 항목이므로 부품 결함 보고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요망합니다.

관련규정 대기환경보전법, 자동차 배출가스관련부품 결함보고 운영 및 결함시정계획 안내서

관련부처 환경부

건의사항 조치현황 신규

12.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의 중장기 로드맵 고시

저공해자동차를 보급해야 하는 자동차판매자는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에 따라 12월 31일까지 다음 년도에 대한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를 제출하여 환경

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은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에 따라 저공해자동차를 보급하고 그 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동차판매자가 이러한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사전에 중장기적인 보급목표가 제시될 필요가 있는데, 아직까지 이러한 중장기적인 보급목표 제시되고 있지 않아 일선 업계에서 경영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일부 수립된 정책에 있어서는 업계와의 논의가 충분하지 못하였다고 여겨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목표 수립을 위한 업계와의 보다 긴밀한 논의가 요청되고 있습니다.

건의사항

자동차판매자가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 및 판매계획을 중장기적으로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는 최소 3년 이상의 중장기 계획으로 수립되어 고시되는 것을 요망합니다.

관련규정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관련부처 환경부

건의사항 조치현황 신규

13. 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 산정방법 명확화

올해 2020년도부터 시행된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 제도에 따라 자동차판매자는 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을 산정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보급실적 산정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고시 (2020년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 별표1)의 항목 중 ‘무공해 주행거리’와 ‘복합연비’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합니다. 한편, 국내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 제도는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제도와 연계되어 설계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는데,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제도에서의 실적 산정을 위한 연비는 5-Cycle 보정연비가 아닌 측정연비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제도와 연계성을 고려하였을 때, 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 산정방법에서의 ‘무공해 주행거리’와 ‘복합연비’도 5-Cycle 보정연비가 아닌 측정연비를 사용한다라는 사항이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 산정을 위한 항목 중, 2종 저공해자동차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에 대한 무공해 주행거리는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의 고시에 따라 측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종에 대해서는 해당 고시로 무공해 주행거리 측정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부분 역시,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제도와 연계성을 고려하여 해당 고시인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연료소비를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측정하도록 개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건의사항

저공해자동차 보급 실적 산정방법에 대한 해당 고시(2020년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에 무공해 주행거리와 복합연비는 5-Cycle 보정값이 아닌 측정값을 사용한다는 사항의 명시가 필요합니다. 또한, 2종 저공해자동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무공해 주행거리의 측정 방법에 대해서는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연료소비율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측정된 값”으로 개정이 요망됩니다.

관련규정 대기환경보전법, 2020년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
관련부처 환경부
건의사항 조치현황 신규

14.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 제도의 초과, 미달 실적에 대한 유연성 방안 마련
현행 저공해자동차 보급 목표제는 동일 부처인 환경부의 평균에너지 소비효율 및 온실가스 제도와 비교하여 초과 실적의 이월 및 미달 실적의 상환을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유연성의 결여는 올해 전세계적으로 발생한 코로나19 확산 상황과 같이, 기존에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목표제도 운영 주체인 환경부와 참여 대상인 업계에 무리한 목표 준수 부담감을 줄 수 있습니다.

각국의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 관련 정책안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정부의 목표는 중장기적으로 저공해자동차의 보급 대수를 특정 수준에 이르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초과 실적 이월 및 미달 실적의 상환에 대한 허용은 각 자동차 판매사별로 사업계획안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판매 계획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데에 도움을 주며, 최종적으로 정부의 중장기적인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달성에 있어 업체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발하는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건의사항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제도 운영에 있어 해당년도 초과 실적 이월 및 미달 실적 상환을 허용하고 이를 대기환경보전법에 명시하는 것을 건의합니다. 또한 각 이월/상환의 유효기간 및 기타 사용 방안(실적 거래 방법)에 대해서 업계와의 논의를 요망합니다.

관련규정 대기환경보전법, 2020년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
관련부처 환경부
건의사항 조치현황 신규

15. 중고자동차 판매업, 자동차전문수리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검토

현재 중고자동차판매업과 자동차전문수리업을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는 사항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해당 업종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될 경우, 유럽계를 비롯한 수입자동차 제작자의 추가적인 사업 진출 및 확장이 불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결과적으로 수입자동차 제작자의 고객 만족과 신차 판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중고자동차판매업과 자동차전문수리업은 자동차의 안전 운행과 관련이 있는 분야이며, 이를 위해 수입자동차의 해외 본사로부터의 전문적인 지원과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사업 분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분야에 대한 사업 제한은 한-EU FTA에서 명시하는 양허 사항에 부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유럽계를 비롯한 수입자동차 기업에 대한 사업 제한은 통상 측면에서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수입자동차의 중고자동차판매업과 자동차전문수리업 분야는 고가의 수입자동차의 매입과 상당한 시설 투자가 필요한 사업 분야로서 소상공인의 사업 분야와 연관이 적은 사업 분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건의사항

중고자동차판매업과 자동차전문수리업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지 않는 것을 요망합니다.

관련규정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관련부처 중소벤처기업부
건의사항 조치현황 재건의

16. 자동차 관련 유사/중복 규제를 조사해 일원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현재 자동차 관련 규정은 크게 국토교통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부처로 나뉘어져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되는 법령 간 중복,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가 존재하며, 관련 기관 간의 법규 해석이 서로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비나 중량과 같은 개념에 대한 해석이 기관마다 다르므로 인해 업계의 관련 대응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배출가스 시험 시 환경부 시험고시와 3개 부처 공동고시를 함께 참고해야 하는 경우 제작사 입장에서는 혼선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설 확인 검사에 있어서도 관계 부처에 따라 동일한 시험 장비에 대하여 중복으로 확인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립환경과학원고시에 따라 장비의 적합 유무를 결정함으로써 한 기관에서 시설 확인 검사 수행 및 인증서 발급 등 관련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각 행정부처의 관할권이 제한되어 있고 집행하는 정책의 취지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정부 전체의 관점에서 여러 부처가 일관되고 체계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동일한 행위에 대해 부처 간 중복, 모순되는 의견이 나온다면 기업 입

장에서는 중복 규제라 느낄 수밖에 없으며, 사업 비용 증가 등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방지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의사항

자동차 관련 유사/중복되는 규제를 조사하여, 규정에 대한 해석의 명확화와 단일화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유사/중복되는 규제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의 통폐합이 요망됩니다.

관련부처 국토교통부 / 환경부 / 산업통상자원부
건의사항 조치현황 신규

백은혜
과장,
주류 위원회

개요

2020년 주세법이 개정되면서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주류를 주문하고 매장에서 직접 주문한 상품을 찾아가는 스마트 오더가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발표한 '주류규제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주류 제조 면허를 보유한 업체가 타사 제조시설을 이용해 주류 위탁제조(OEM)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맥주와 탁주에 대한 대형 매장용 용도 구분 표시제도 폐지될 예정입니다.

2019년 와인 및 스피릿 수입량은 465백만 리터로 전년 대비 5.1% 감소율을 보였습니다. 금액 감소율은 2.2%로, 지난 10년 간 플러스 성장율을 보여온 주류 수입량이 처음으로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주요이슈

1. 시음 허용량 기준 개선

현재 국세청의 '주세법 사무처리규정'으로 정해진 시음 허용량의 기준이 일관적이지 않습니다. 맥주, 소주, 위스키의 경우 각각 18,000 리터, 12,960 리터, 900 리터로, 이를 알코올량으로 환산할 경우 맥주 576 kg, 소주 1,752 kg, 위스키 288 kg으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증류주 내에서도 시음 허용량이 가장 적은 위스키(288 kg)는 시음 허용량이 가장 많은 일반 증류주(2,880 kg)와 비교해 봤을 때 10배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건의사항

WHO에서 정한 음주의 사회적비용을 확인하기 위한 두 가지 기준은 알코올 소비량과 음주 패턴입니다. 이에 따라 주종별 시음량을 현재 병/리터 기준에서 알코올량 기준으로 맞추는 것이 사회적비용을 고려한 합리적인 기준임으로, 모든 주종별로 같은 알코올량을 기준으로 총량을 제한하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관련규정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고시 / 주세법 사무처리규정

관련부처 국세청(소비세과)

건의사항 조치현황 신규

2. RFID 시스템을 통한 명확하고 자세한 정보 공유

2011년부터 위스키의 RFID 태그 부착이 의무화된 지 10년이 지나면서, 가짜 양주 근절과 유통투명화 등 긍정적인 기능을 해왔으나 상황이 많이 바뀐 만큼 RFID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전 주종 중 유일하게 위스키에만 적용되는 RFID 태그는 추가비용 및 절차 등의 이유로 위스키 업계에 지속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주류마케팅역

건의사항

위스키 산업의 특성상 소비자 및 시장의 반응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존재하는 데, RFID 시스템을 통해 좀 더 다양하고 명확한 정보가 공유된다면, 시장과 소비자의 니즈에 맞는 제품과 서비스로 위스키 업계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련규정 주류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관련부처 국세청(소비세과)

건의사항 조치현황 개정

3. 선물 목적의 스마트오더 허용

2020년 4월부터 허용된 스마트오더 방식의 주류온라인 판매가 소비자 및 시장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에서 여전히 소비자는 직접 주문하고 수령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며, 주류를 선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주문자와 수령인이 다른 경우를 금지하는 것으로 국세청 해석이 나온 바 있어, 선물 목적의 스마트오더 사용에 제한이 있습니다.

건의사항

스마트오더의 취지에 맞춰 소비자의 편의성, 업소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주문자와 수령자가 다른 경우에도 성인확인을 거쳐 판매가 가능하도록 건의합니다. 배송업체 등을 통한 편법적인 주류배송행위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주문자와 수령자의 개인정보를 확인하는 현재 절차에 따라 충분히 가려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고시

관련부처 국세청(소비세과)

건의사항 조치현황 신규

4. 스마트오더 디지털 경품 홍보 및 할인 허용

2020년 4월 시행된 스마트오더에 의해 주류의 온라인 주문 및 판매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의 혜택을 강조하는 광고/홍보문구가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현행법상 온라인상에서 경품을 홍보하면 안된다는 내용이 있어, 소비자 혜택이나 정상적인 마케팅 활동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건의사항

스마트오더의 취지에 맞춰 소비자의 편의성, 업소의 효율성을 높이고 코로나 사태에 대면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인 온라인 주문을 장려하기 위해

주세법상 허용된 상행위인 경품 및 할인에 대한 온라인 홍보를 허용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관련규정 국민건강증진법

관련부처 보건복지부

건의사항 조치현황 신규

5. 병행수입식품 안전관리에 대한 수입자 규제 강화, 브랜드 자산 보호 및 책임소재 명확화

수입식품의 경우 소비자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품으로 수입자의 안전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현재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 유도를 위해 병행수입을 허용하고 있지만, 병행수입식품의 경우 소비자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유통상 관리 미흡으로 인한 병행수입식품의 소비자 불만사항 및 안전성 문제 발생 시 브랜드 자산보호가 어렵고 브랜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증가할 우려가 있습니다. 나아가 책임소재 확인이 불명확해 병행수입식품의 책임소재를 명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의사항

식약처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을 강화하고, 해외 생산소재지 신고 등의 의무에 대한 지속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관세청 통관 시 병행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 등에 관한 관련 규정을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병행수입제품의 국내유통시 브랜드 자산 보호의무를 강화하고, 병행제품에 대한 소비자불만, 안전성 문제 등이 발생할 경우 병행수입업자에 대해 직접 책임을 묻는 등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규정이 도입되어야 합니다.

관련규정 공정거래위원회 ‘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고시’ / 관세청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제’ / 식약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관련부처 공정거래위원회 / 관세청 / 식약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

건의사항 조치현황 신규

6. 주종별 소비자경품 한도를 주종에 상관없이 세제별로 통합 운영하고 기준을 직전 년도 매출기준으로 변경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2조 10항에 “주류 경품은 직전 년도 주종별 주세 과세표준의 1.5% 이하의 범위 내에서 주류 소매 면허장소에서 제공하여야 하며”라는 규정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다품종을 취급하는 회사의 경우 주종별로

나누어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한 직전 년도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금액이 너무 적어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혜택 또한 적습니다.

건의사항

맥주의 경우 종량제로 세제가 바뀌면서 기준을 재정비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종가세가 적용되는 주류의 경우에도 업계의 어려움을 고려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종가세가 적용되는 주류의 경우 주종 구분을 없애고, 주종에 상관없이 통합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소비자 혜택을 강화하기 위해 기준을 직전 년도 과세표준 대신 직전 년도 매출을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건의합니다.

관련규정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관련부처 국세청 (소비세과)

건의사항 조치현황 신규

7. 포장 관련 법규 개정에 대한 충분한 유예기간 및 합리적 도입

환경부의 포장재 관련 규정의 개정은 관련 제품의 디자인 및 개발 단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 많은 시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산업계에서 개정 규정을 반영하기에는 상당히 짧은 유예기간을 두어 주어진 시간 안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데 어려움이 많으며, 특히 국내 제조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준비 기간이 오래 걸리는 수입업체는 더욱 문제시됩니다.

(예1,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 (2019.11.18 개정, 2020.07.01 적용) → 7개월 안에 포장재 변경 필요

(예2, “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2020.01.29 개정, 2020.07.01 시행): 재포장 금지 -> 2021.01부터 법 적용이나 세부사항이 아직 정해지지 않음

또한「제품포장규칙」제11조(포장제품의 재포장 금지)에 명시된 ‘포장되어 생산된 제품을 재포장하여 제조·수입·판매해서는 안 된다’에 따라 이미 수출국에서 포장되어 생산된 수입품은 국내 수입 후 포장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므로 국내 생산시설에서 추가 포장이 가능한 제조업체에 비해 수입업체가 훨씬 더 불리한 입장입니다. 더욱이 수입업체의 수입 후 포장을 금지하고, 수출국에서의 포장을 독려함으로써, 국내 포장산업을 축소(일자리 감소)시키는 등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재활용의무생산자(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가 준수하여야 하는 재활용 의무대상 포장재 (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포장재)가 운영되고 재활용부과금 또는 분담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장재질과 무관하게 모든 재포장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법의 일관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건의사항

포장재 변경 관련법의 제개정은 업체에서 현실적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최소 2년 이상의 충분한 유예기간을 주어야 합니다. 또한, 「제품포장규칙」 시행규칙 제11조(포장제품의 재포장 금지) ”포장되어 생산된 제품을 재포장하여 제조·수입·판매해서는 안 된다” 관련 생산공장에서 추가 포장이 가능한 국내 제조업체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수입업체의 재포장 예외기준이 설정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포장재 재질에 따른 순차적인 시행이 필요합니다. 재포장의 재질이 필름·시트류 포장재에 대해 먼저 시행하고, 종이 등과 같은 재활용이 용이한 재질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하여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도입하는 것이 소비자 및 업계의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규정을 준수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 해당 내용은 주류 / 화장품 / 식품 위원회에서 공동으로 제기하는 안건입니다.

관련규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 방법 등 포장재 관련 규정

관련부처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건의사항 조치현황 신규

개요

화학산업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국가 기간산업으로서 화학반응, 공정과정, 배합에 따라 범용성이 무궁무진합니다. 2019년 화학산업의 세계 총 수익은 3.94 조 달러에 달했습니다. 같은 해 유럽의 대한민국 무역에서 화학제품은 기계, 운송장비 다음으로 중요한 상품이었으며 총 무역액에서 수출 17% 및 수입 16%를 차지했습니다. 2019년 한국은 261억 달러 규모의 화학제품을 수출하며 세계에서 7위에 이르렀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환경보호를 위해 국내 화학규제는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왔으며 세계 어느 국가보다 엄격한 수준입니다. 산업계 또한 근본적인 취지에 있어 환경·보건·안전을 위한 화학관련 법률의 제정 및 개정 등 의회나 법률의 개정 과정, 규제의 정도는 국제적으로 조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유럽과 미국을 포함한 전세계가 인적 및 물적자원 이동 제한이 이어지고 있어 화학산업계는 많은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따라서 전세계적으로 매우 고도화 되어있는 공급망을 고려할 때 현 화학물질관리 체계의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며, 화학규제의 원활한 이행과 준수를 독려하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과 실질적인 규제 완화가 중요한 시점입니다.

주요이슈

1. 화학제품 관련 규제 제·개정에 대한 TBT 알림

국내 화장품, 의약품 및 전기전자제품의 경우 관련 규정 등의 제·개정이 있을 경우 TBT 알림 사항이 성실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최소 60일의 의견 수렴 기간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화학제품의 경우 수입 절차 및 라벨 표시, 시험기준 표준에 영향을 주는 규제임에도 불구하고 TBT 알림이 진행되지 않으며 이로 인해 수입제품의 직접 이해관계자인 해외 제조사들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공식적인 기회와 경로가 주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WTO 회원국의 경우 기술 규정, 표준 및 적합성 평가 절차가 차별적이지 않으면서 무역 환경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에 따라 법 또는 규정의 제·개정이 있을 경우 회원국에게 TBT 사항을 사전에 알림으로써 예측 가능한 무역 환경을 조성할 의무가 있습니다.

건의사항

올해 개정된 수입 전 MSDS 고용노동부 제출 등과 같이 수입 화학제품에 영향을 주는 법규 또는 고시의 제·개정이 있는 경우, 국내외 이해관계자들이 충분한 의견 수렴기간 동안 해당 개정사항을 파악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TBT 알림을 진행할 것을 건의합니다. 화학제품과 관련한 법규 및 규정

화학 위원회

의 제·개정과 관련한 TBT 알림을 통해 국내 화학제품의 국내 무역환경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관련 규제 환경의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부처 고용노동부 & 환경부 & 국립환경과학원 & 산업통상자원부

건의사항 조치현황 개정

2. 화학물질 중복제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와 ‘공정안전보고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구 장외영향평가)가 간소화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완전히 면제되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법이 다르지만 그 취지가 근본적으로 다를 수 없으므로 두 개의 법이 같은 내용을 규제하는 것은 여전히 중복규제로 남아 있습니다.

건의사항

산안법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가 완료되었다면 화관법에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및 시설기준 준수가 면제되고, 화관법에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가 완료되었다면 산안법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를 면제하여 줄 것을 건의합니다.

관련규정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관련부처 환경부 / 고용노동부

건의사항 조치현황 신규

3. 금지물질 수입 절차 중복 규제

현재 금지물질을 수입하기 위해 수입자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제조금지물질 수입승인을 득한 후, 이를 환경부에 제출하여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금지물질 수입허가를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개별 수입 건에 대해 허가 절차를 진행해야 하고, 최종 사용자에게 전달하기까지 최대 2개월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금지물질이 연구용임을 감안할 때 이중 규제로 인해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수입판매자 뿐만 아니라 최종 사용자인 연구자들에게도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건의사항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허가를 각각의 부처별로 두 번 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하나의 주무부처로 통합하거나 허가기간을 현재 수준(고용노동부 20일, 환경부 15일)의 절반으로 단축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관련규정 화학물질관리법 (화관법) / 산업안전보건법 (산안법)

관련부처 환경부 / 고용노동부

건의사항 조치현황 신규

4. 기존물질에 대한 시험자료 재생산

환경부와 환경공단에서는 2017년부터 지속적으로 기존화학물질에 대한 자료를 생산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산된 상당수의 자료는 이미 EU 또는 다른 나라에 존재하며 자료 생산대상 물질 선정 과정 역시 불투명합니다. 시험자료의 재생산은 OECD의 척추동물시험의 최소화 원칙에도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저렴한 급성자료를 재생산하는 실정이라 등록자는 여전히 국외 자료보유자로부터 고가의 만성자료를 구매해야 합니다.

건의사항

환경부에서 시험하는 대상 물질이 국내외에 자료가 없는 고분자물질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것을 건의합니다. 또한 자료 생산 대상 물질의 선정 절차를 투명하게 개선하길 요청합니다. 실험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항목을 협의체에서 데이터검 분석이 끝난 뒤 협의체 대표자가 신청하고, 시험 진행 전, 시험대상물질을 고시하여 기존 자료 여부와 등록 면제가능 여부를 사전에 조사할 것을 요청합니다.

관련규정 화학물질등록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관련부처 환경부 / 한국환경공단

건의사항 조치현황 신규

5. QSAR 자료 제출 톤수 제한 삭제

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은 연간 제조·수입량이 10톤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QSAR자료가 허용되고 있어 다수의 독성 자료(최대 47개)가 요구되는 고톤수 등록에서는 오히려 대체 시험자료가 활용될 기회가 없습니다. 이로 인하여 국제적으로 이미 생성된 독성자료가 없는 경우 추가적인 시험자료 생성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화평법의 경우 10톤 이하 톤수 제한 및 불명확한 지침서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QSAR 자료 활용이 어렵습니다. 대체자료 활용이 가능한 상황임에도 시험자료를 추가로 생산하는 것은 동물시험 최소화라는 국제흐름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입니다.

건의사항

10톤 이상 물질의 경우 2021년까지 등록을 완료해야 하는 상황이나 QSAR 자료 톤

수 제한으로 인해 시험이 불가피한 경우 남은 유예기간(약 13개월) 내에 자료를 생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QSAR 자료의 톤수 제한을 삭제할 것을 건의합니다. EU REACH 에서는 Annex 7~11에 의거하여 톤수에 제한 없이 QSAR 자료 활용을 권장하고 있어 대체자료로 등록된 물질이 다수 있습니다.

관련규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관련부처 환경부

건의사항 조치현황 재건의

6. 유해화학물질 지정고시의 구체적 근거

현행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공고 시 유독물로 지정되는 화학물질의 식별 및 분류표시 결과만을 공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유독물로 지정된 화학물질의 시험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자는 필요시 유독물 지정의 구체적인 근거를 과학원에 문의할 수 있지만, 하위 사용자들의 경우 해당 물질에 대한 정보를 보유하지 않아 지정 고시 결과에 대한 수용만 있을 뿐 구체적 근거를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건의사항

유독물의 지정고시 공고 시 유독물로 지정하게 된 구체적인 근거 즉, "시험항목 및 결과값" 또한 명확하게 공고하기를 제안합니다.

관련규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관련부처 환경부 / 국립환경과학원

건의사항 조치현황 신규

7. 살생물물질 승인 신청자료 개별제출

기존살생물물질 승인과 관련하여 현행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4항1호에 따르면 ‘공동으로 제출하는 경우 기업의 영업비밀이 공개되어 상당한 손실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환경부장관의 확인을 받고 승인 신청자료를 개별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업비밀 손실로 인한 개별제출 확인을 신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유에 대한 보완 제출을 명령받음으로써 승인 신청자료의 개별제출이 실질적으로 불가한 상태이며 이로 인해 해당 살생물물질 승인 신청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영업비밀로 인한 승인 신청자료 개별제출 건에 대하여 협의체 내 구성원간 비용 관련 이견 등과 관련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살생물물질 승인의 지연만 초래할 것입니다. 살생물물질의 경우 식별정보, 유해성, 위해성에 대한 정보, 내부지

침 및 연구보고 등의 주요사항이 회사의 고유 보유자산으로써 정보 보호가 필요하며 공개 시 중대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는 EU BPR의 승인 사례를 미루어 볼 때 상당수의 살생물물질 승인이 개별제출로 이루어진 점으로 반증될 수 있습니다.

건의사항

영업비밀 공개로 인한 살생물물질 승인 신청자료 개별제출을 유연하게 확인하여 줄것을 요청합니다. 승인 신청자료 개별제출이 불가함에 따라 해당 살생물물질의 승인 지연 또는 철회는 해당 물질이 사용된 살생물제품 및 처리제품의 승인 계획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살생물물질의 승인 신청자료의 개별제출 시 우려되는 '시험성적서자료' 공유는 협의체 밖에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데이터갭 분석을 통해 기존자료소유자와 연락을 취하여 참조권 또는 사용권을 구매하여 희망하는 업체 간 등록서류를 공동으로 작성할 수 있으며, 다수업체 가운데 중립성 보장 및 기밀정보 노출을 제한하여 공동등록서류를 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리인을 선임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EU와 한국 법령에 따르면, 오직 물질 동등성이 인증된 물질 간 자료공유가 가능합니다. 이것은 물질 동등성 확인을 위한 요건자료(화학적 조성, 제조공정 등)가 제3자와 교류되어야 가능한 것이며, 이러한 정보공유 자체가 기밀정보 노출로 인한 심각한 영업손실을 초래할 만한 사안이므로 수용불가능 한 상황임을 나타냅니다. 본 사유로 ECHA는 BPR 등록 시 공동제출을 강제하지 않으며 실제로 EU 내 대다수 기업이 개별적으로 등록자료를 제출합니다.

관련규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부처 환경부 / 국립환경과학원

건의사항 조치현황 신규

8. 식약처 이관 의약외품 승인에 대한 시험 기준

환경부와 과학원은 안정성시험자료 검토 시, 과학원고시 제2019-69호 별표3의 '3. 안정성에 관한 기준' 가항의 1목, 2목에 따라 EU BPR, 호주 APVMA과 같이 OECD 회원국 내 유사제도를 운영하는 주무당국에서 수용한 안정성에 관한 자료를 '법 과도 기에서 업체반발을 우려함'의 사유로 해당자료를 수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제품의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등록 시, 제품에 대한 유해성자료를 제출함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살생물제품 내 사용예가 없는 첨가제 포함의 사유로 해당 첨가제에 대한 자료(물성, 유해성, 기원, 제조공정)를 요구합니다. 본 요청은 제품자체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며, EU BPR 및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살생물제품 등록과 비교했을 때에도 과도한 요구사항입니다.

건의사항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승인 규정과 살생물제 승인규정에 따른 제품/물질 승인신청 자료에 대하여 과학적 타당성에 근거하여 동법상 검토기준에 차이가 없도록 해줄 것을 건의합니다.

관련규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승인 등에 관한 규정

관련부처 환경부 / 국립환경과학원

건의사항 조치현황 신규

9. 살생물물질 승인 유예기간 연장 또는 검토기한 축소

승인유예기간이 3년인 살균제, 살조제, 살서제, 살충제, 기피제에 사용되는 살생물물질은 국립환경과학원의 적정성 검토 기간을 고려하면 승인유예기간 (2022년 12월 31일) 18개월 전인 (2021년 6월 30일)까지 승인신청 자료를 제출하도록 권고 받고 있습니다.

승인 유예기간까지 승인 통지서를 받기 위해서는 앞으로 1년 내 자료제출을 해야 하나 현재 협의체 구성 또한 지체되고 있으며 물질 동등성 확인, 위해성 평가, 효과·효능 자료에 대한 세부 지침 등도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의한 영향은 단순히 한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등록을 위한 자료준비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앞으로 1년 내 자료제출 권장기한이 도래하나 살생물물질 승인자료 준비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건의사항

유럽에서 진행되는 충분한 유예기간은 아니더라도, 현행 3년인 살균제등의 살생물제등의 승인유예기간을 추가로 2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또는, 승인유예기간이 3년으로 매우 촉박한 살균제등 물질의 경우, 제출 자료에 대한 검토기간을 6개월로 축소하거나, 제출 자료가 2022년까지 제출이 되었으면 '완결성 검토'에 기반한 승인통지를 선행하고, 추후 '정확성 검토 및 보완통지'를 검토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EU의 BPR의 경우, 2000년에 시행된 BPD에서 2013년 BPR로 전환되기까지 10년 이상의 기간이 있었으며, 살균제 active의 경우 2018년까지 Competent Authority Report (CAR)을 제출하고, 2019년까지 ECHA의 살생물제위원회(BPC)의 의견 준비를 하고 최종 승인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보다 일찍 BPR을 시작한 유럽은 BPD의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유예기간을 가지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많은 물질이 승인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련규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부처 환경부

건의사항 조치현황 신규

10. 살생물제품의 효과·효능 허가 요건에 대한 가이드 필요

현재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는 살생물제품에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 효능 자료가 요구될 것인지 불투명합니다. 향후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과도한 효과 효능 자료의 요구는 살생물제품의 승인에 방해 요소가 되고 있으며, 빠르게 살생물제품의 효과 효능 허가 수준이 정해지지 않으면 업체는 살생물물질에 대한 승인 진행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결정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업계가 표방하는 효능 효과보다 높은 수준의 무리한 자료 요구는 살생물제의 과도한 처방을 유발할 수도 있고, 다양한 제품의 출시를 방해하여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건의사항

효능 효과 자료는 각 회사가 사용하고자 하는 효과 효능 표방과 일치하는 자료를 인정해 주기를 제안합니다. 또한 생활화학제품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3자리 유효 숫자(99.9%) 결과를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관련규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부처 환경부

건의사항 조치현황 신규

11. 유해화학물질 지정 및 관리 체계의 검토

성상이 고체이거나 물리적 위험성이 없지만 단순히 환경유해성 때문에 유해화학물질로 지정된 물질이 다수 존재합니다. 이러한 물질들의 특성은 누출 화재, 폭발 등에 따른 화학사고와 관련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물질들은 장외영향평가 결과, 단지 몇 미터의 영향 반경이 나올 뿐이어서 장외영향평가와 시설기준 준수의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의사항

물리적 위험성과 성상을 고려함으로써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구 장외영향평가)가 반드시 필요한 유해성 기준을 정하고 유해화학물질 중에 위험성평가 대상을 구분할 것을 건의합니다. 구분된 위험성평가 대상 물질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

서와 시설기준을 준수하고 그 외의 유해화학물질들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와 시설기준을 준수 없이 영업허가를 받도록 현행제도를 기술적, 현실적으로 올바르게 개선하기를 요청합니다.

관련규정 화학물질관리법

관련부처 환경부

건의사항 조치현황 신규

12. 소비자용 살생물제품의 화관법 적용 제외

소비자용 살생물제품에 사용되는 살생물물질이 유독물질로 분류되고, 살생물제품도 유독물질 지정 기준 함량 이상인 제품의 사례입니다. 그 중 약사법의 의약품으로부터 이관된 살생물제품 (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제품)의 경우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환경부 승인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유독물질로 분류되어 추가적으로 화관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관리 의무도 부과됩니다.

소비자용 완제품이 유독물질로 분류되는 경우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제조·물류(보관)·취급소매점도 영업 및 취급시설 허가가 신규로 필요한데 이러한 조치는 소비자용 완제품 판매자의 제품 취급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규제입니다.

건의사항

소비자용 살생물제품의 경우, 그 특수성 (사용방법/유해성 분류사항/제품제형(고체) 등)에 따라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유해화학물질 의무 적용 범위에서 제외할 것을 건의합니다. 소비자용 살생물제품의 경우 이미 화학제품안전법에 의해 승인 및 관리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화학제품안전법을 보완 (예, 제품의 표시 사항에 화학사고 응급 조치 추가, 소매점을 제외한 보관소에 제품의 MSDS 보관 의무 등) 하여 소비자용 제품과 관련한 관리와 사고 대응을 규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련규정 화학물질관리법

관련부처 환경부

건의사항 조치현황 재건의

13. 화관법 내 유사규제: 통계조사와 실적보고

수입, 제조, 판매 등을 취급한 유해화학물질 하나의 유통정보에 대해 목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동일 법규 하에서도 양식만 달리하여 '유해화학물질 실적보고'와 '화학물질 통계조사'로 반복해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중복 제출 사실은 매우 불합리하며 행정 편의적인 규제여 여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건의사항

유해화학물질 실적보고 내용이 화학물질 통계조사 내용에 포함되므로 두개의 제출을 화학물질 통계조사로 일원화할 것을 요청합니다. 아울러 유해화학물질실적보고 내용의 활용은 제출된 통계조사 정보를 활용하도록 IT 시스템 구축 및 설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련규정 화학물질관리법

관련부처 환경부

건의사항 조치현황 신규

14.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비공개 심사

MSDS 상 대체자료 기재 제외물질의 각 규제항목은 혼합물의 기준치 함량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준치 함량 미만인 경우에도 대체자료 기재 제외대상이 되는 것은 과도한 공개요구입니다.

유해성이 높은 물질은 이미 대체자료 기재 제외물질로 지정되었으므로, 대체자료 기재 승인 절차는 최대한 간소화하여 기업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고 정부 및 기업의 인력/비용 자원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시(안) 별표 7제2호(대체 필요성에 대한 판단기준)는 비공개 승인을 위한 실질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동 고시 별표 7제1호(영업비밀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자료)에 연장하여 보다 세부적인 자료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의사항

각 규제항목별 혼합물의 기준치 함량 미만 시에는 대체자료 기재 제외물질에서 예외가 될 수 있도록 건의합니다. 더불어 비공개 승인을 위해 요구되는 영업비밀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자료(고시(안) 별표 7제1호)는 객관적으로 검증이 가능한 범위 내로 간소화하되,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고시(안) 별표 7제2호에 "대체 필요성에 대한 판단 기준"을 재명시하여 비공개 승인에 대해 공정하고, 분명하고, 객관적인 잣대를 제시해 주길 요청합니다.

관련규정 산업안전보건법 /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관련부처 고용노동부

건의사항 조치현황 개정

박안숙

이사,
화장품 위원회

개요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현상으로 여러 산업이 경제적인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화장품 산업도 예외는 아니며 이동금지,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사람들의 접촉을 줄이면서 면세점을 포함한 오프라인 매장의 매출 하락 및 온라인마켓 활성화 등 유통시장의 변화가 한층 가속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산업계는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으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정부의 다양한 지원과 지속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합니다. 특히 환경 문제로 포장 관련 법규가 계속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합리적 도입과 산업계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충분한 준비 기간을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요이슈

1. 포장 관련 법규 개정에 대한 충분한 유예기간 및 합리적 도입
환경부의 포장재 관련 규정의 개정은 관련 제품의 디자인 및 개발 단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에 불구하고 산업계에서 개정 규정을 반영하기에는 상당히 짧은 유예기간을 두어 주어진 시간 안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데 어려움이 많으며, 특히 국내 제조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준비 기간이 오래 걸리는 수입업체는 더욱 문제시되고 있습니다.

(예 1,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 (2019.11.18 개정, 2020.07.01 적용) → 7개월 안에 포장재 변경 필요)

(예 2, “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2020.01.29 개정, 2020.07.01 시행): 재포장 금지 → 2021.01부터 법 적용이나 세부사항이 아직 정해지지 않음)

또한, 「제품포장규칙」제11조 (포장제품의 재포장 금지)에 명시된 “포장되어 생산된 제품을 재포장하여 제조·수입·판매해서는 안 된다”에 따라 이미 수출국에서 포장되어 생산된 수입품은 국내 수입 후 포장행위가 원천적으로 금지되므로 국내 생산시설에서 추가 포장이 가능한 제조업체에 비해 수입업체가 훨씬 더 불리한 입장입니다. 더 나아가 수입업체의 수입 후 포장을 금지하고 수출국에서의 포장을 독려함으로써, 국내 포장산업 축소 및 일자리 감소 등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재활용의무생산자(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가 준수하여야 하는 재활용 의무대상 포장재 (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포장재)가 운영되고 재활용부과금 또는 분담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장재질과 무관하게 모든 재포장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법의 일관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화장품위원회

건의사항

포장재 변경 관련법의 제개정은 업체에서 현실적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최소 2년 이상의 충분한 유예기간을 주어야 합니다. 또한, 「제품 포장규칙」 시행규칙 제11조(포장제품의 재포장 금지) "포장되어 생산된 제품을 재포장하여 제조·수입·판매해서는 안 된다" 관련 생산공장에서 추가 포장이 가능한 국내 제조업체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수입업체의 재포장 예외기준이 설정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포장재 재질에 따른 순차적인 시행이 필요합니다. 재포장의 재질이 필름·시트류인 포장재에 대해 먼저 시행하고, 종이 등과 같은 재활용이 용이한 재질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하여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도입하는 것이 소비자와 업계의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규정을 준수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 해당 내용은 주류/화장품/식품 위원회에서 공동으로 제기하는 안건입니다.

관련규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 방법 등 포장재 관련 규정 / 그 외 제품 포장관련 규정

관련부처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건의사항 조치현황 신규

2. 재활용 용기의 포장재 재질 구조 평가 기준 합리화

재활용을 장려하기 위한 유럽 본사의 정책에 따라 다양한 색상의 재활용 유리 병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 국내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 평가 기준에 따라 특정 색깔(무색, 갈색, 녹색)외의 유리병은 '재활용 어려움' 등급으로 분류되며, 분담금 할증 대상에도 포함되므로 포장재 재활용을 촉진하고자 하는 자원재활용법의 취지와도 맞지 않습니다.

건의사항

재활용을 통하여 만들어진 포장재인 경우 재활용 등급 평가나 분담금 할증을 경감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관련규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포장재 재질 구조 및 재활용 용이성 등에 관한 기준

관련부처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건의사항 조치현황 개정

3. 천연 관련 표시광고 허용 범위

한국의 경우, ISO 등 국제 기준에 적합한 유기농/자연(유래)성분 관련 표시광고라도 국내 유기농/천연 화장품 인증 기준에 맞지 않으면, 이를 표시광고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본인이 원하는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저해 및 제조사의 자유로운 제품개발을 제한하는 것이며, 국제적 조화에도 어긋납니다.

건의사항

다수의 국가에서 인정되는 기준 (예, ISO index 등)에 따른 천연 관련 표시광고의 경우 실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 규정에 따라 해당 사실을 표시하는 것은 허용되어야 합니다. ISO Norm 16128기준 허용 국가에는 유럽, 미국, 일본, 중국, 대만, 러시아가 포함됩니다.

관련규정 화장품법 /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 /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 규정

관련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

건의사항 조치현황 재건의

4. 판매증명서, 제조증명서 구비 요건 개선

통합공고 및 화장품법에 따라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판매 및 제조증명서를 구비해야 하며 관련기관은 통상 종이 서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자보완시스템의 발달로 국내외 다양한 공적 영역에서 전자문서가 사용되고 있으므로 개별 회사의 상황에 맞게 종이문서와 전자문서를 선택하여 구비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건의사항

제조증명서 및 판매증명서 구비 요건에 대해 전자문서 형식도 포함할 것을 건의합니다.

관련규정 통합공고, 화장품법 시행규칙

관련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건의사항 조치현황 신규

5. 튼살로 인한 붉은 선을 없게 하는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의 인체적용 시험 선정기준 확대

‘튼살로 인한 붉은 선을 없게 하는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의 기능을 입증하기 위한 인체적용 시험 자료의 선정 기준에서 ‘붉은 선’은 튼살 발생시 초기에만 발견되는 증상으로 시험군을 모집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오래된 튼살에 사용하는 화장품은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건의사항

‘튼살로 인한 붉은 선을 없게 하는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의 인체적용 시험자료의 시험군에서 오래된 튼살에도 적용할 수 있는 선정 기준을 고려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관련규정 화장품법 시행규칙/튼살로 인한 붉은 선을 없게 하는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의 인체적용시험 가이드라인

관련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식품의약품 안전평가원 화장품 심사과

건의사항 조치현황 신규

이사,
패션 및 유통 위원회

개요

한국 소비자들의 패션 수요는 높으며 이들은 대체로 유럽계 브랜드와 상품에 대한 높은 인지도와 호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국내 패션 시장은 2020년 말까지 5.3%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1년에는 추가적으로 2%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럽 패션 제품은 한국 소비자들의 인기를 얻고 있으며, 이에 따라 패션 및 소매 분야의 많은 유럽 기업들이 한국 시장에 진출해 있습니다. 한국 소비자들의 높은 브랜드 인지도와 상대적으로 풍부한 해외 여행 경험 역시 유럽계 브랜드에 이점으로 작용합니다.

8년전부터 발효된 한-EU FTA는 한국으로 직접 선적되는 다양한 유럽연합 국가의 패션 제품에 대해 대우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많은 유럽계 기업들의 한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관심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ECCK는 유아용 섬유제품 수입 절차 관련 문제를 제기한 후 관세청이 관세 완화 절차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여 준수율이 높은 기업의 제품에 대한 검사를 줄이고 수입 요건을 면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외국 기업의 수입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ECCK는 이 조치를 통해 외국계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길 기대합니다.

ECCK는 2019년 백서를 통해 건의한 가격표시 실시요령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해당 실시요령 전반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관련 산업계 및 협회 등과 논의를 거쳐 법개정을 진행할 것이라는 검토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시장에는 아직까지도 많은 규제가 상존하고 있으며 해외 업체들은 실질적인 수입과 영업 과정에서 여러모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국내 소비를 활성화시키고 정부의 세수를 늘리기 위해서 ECCK는 수입 패션 상품에 대해 특히 과하게 적용되는 규제에 대해 재평가할 것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주요이슈

1. 생활용품 표시사항 관련

한국에서 판매되는 제품은 다양한 표시사항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 중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은 가족제품, 선글라스, 가정용섬유제품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제품을 대상으로 합니다.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에 따르면 특정 결함이 있는 경우 제품

패션및유통위원회

을 추적하여 쉽게 회수할 수 있도록 제조연월, 수입연월, 최초판매시즌, 로트번호 등을 표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각 부속서별로 표시사항이 달라 표시 및 제품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족 제품의 경우 제조연월을 표시해야 하는 반면, 선글라스는 제조연월, 수입연월, 로트번호 중 어느 하나로 표기하면 되며, 가정용섬유제품의 경우 제조연월, 최초판매시즌, 로트번호 중 하나로 표기하는 방식입니다.

건의사항

제조연월 뿐 아니라 수입연월, 로트번호, 최초판매시즌 등으로도 제품의 추적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가족제품과 접촉성 금속 장신구의 경우 제조연월만 표시하도록 하여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품추적을 위해 표시해야 하는 사항을 각 부속서별로 통일하고, 제조연월, 수입연월, 로트번호, 최초판매시즌 등의 어느 하나로 표시할 수 있게끔 제품 추적이 가능한 사항을 다양하게 허용하여 제품이 합리적으로 표시, 관리될 수 있도록 제안합니다.

관련규정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관련부처 국가기술표준원

건의사항 조치현황 개정

2. 유아용 섬유제품의 시험 인증 기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은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안전 요구 사항을 규정합니다. 2018년에는 (3세 이하) 유아용 섬유제품에 대한 부속서가 수정되면서 유아용 섬유제품에 대한 안전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2018년 11월부터 유아용 섬유제품이 세관장 확인 대상 품목으로 지정되었으며,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대한 성적서를 일일이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통관을 진행해야 합니다. 안전확인 대상 품목으로 지정되기 전에는 하나의 성적서로 여러 제품에 대한 인증이 가능하였습니다.

아울러, 해외 시험인증기관에서 진행한 시험 결과는 수용되지 않습니다. 국제 규정과 안전기준이 조화되지 않는 것은 국가 간 무역을 활성화하지 못하는 장벽으로 작용하여, 해외로부터 제품 수입에 어려움을 줄 뿐더러 이와 동시에 한국 제품이 새로운 시장에 진입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줍니다.

건의사항

유아용 섬유제품에 대한 불필요한 중복적인 시험을 진행하지 않도록 해외 시

험인증 성적서를 인정해주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장기간에 걸쳐 안전성 테스트 실패율이 낮은 기업은 모든 제품에 대해 안전성 테스트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물품을 무작위로 선정해 검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관련규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부처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건의사항 조치현황 개정

개요

2019년 12월 24일부터 포장재의 재질·구조 등급평가 표시가 의무화되었습니다. 포장재의 재활용 용이성 등급을 최우수, 우수, 보통, 어려움 4개 기준으로 나누고, 그 결과를 표시하는 것으로 적용 대상은 EP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의무생 산자입니다.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제품의 포장 재질·포장 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의 법규 집행이 6개월 유예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환경부는 ‘재포장 금지’와 관련해 쟁점이 되는 사항들을 분야별 협의체를 통해 논의하고 문제점을 수정해 내년 1월부터 집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2019년 식품 등의 수입액은 281억 달러로 전년대비 2.8% 증가하였고 중량은 1,860만톤으로 0.3%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수입금액은 2018년에 비해 농·임산물 및 수산물에 감소한 반면, 축산물과 가공식품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이슈

1. 표시기준 개정사항의 경과조치 필요

국무조정실 식품표시규제 합리화 대책(2017년)에 따라 각 부, 처, 청의 식품표시규제 관련 법령 및 고시를 개정할 경우 그 개정 일자 및 횟수에 관계없이 개정일로부터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일을 짝수 년도 1월 1일로 통일하여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2020년 1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2020-3호(시행일: 2022.01.01)에 “식품유형: 유함유가공품”이 신설되었음에도, 관련부처에서는 식품의 표시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사전 표시하지 않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다국가로 수출하는 해외 생산기지사나 공장의 경우 최소 포장재 재고보유량이 많고, 수입식품 표시사항 검토 및 동판제작, 인쇄감리, 포장재 제작 등 포장재 변경에 있어 해외 본사와의 업무진행에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처럼 사업 규모와 법적적용에 있어 국내 식품제조업체에 비해 유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식품수입사 입장에서 이는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건의사항

식품 표시기준의 짝수년도 원칙을 고려하여,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제 2020-3호(시행일: 2020년 1월 1일)와 일관성 있게, 신설된 유형이 시행일 전에, 즉시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될 것을 건의합니다.

식품 위원회

관련규정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2020-3호)

관련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건의사항 조치현황 개정

2. 천연/합성향료 표시 개선

2018년도 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제조화를 위해 식품첨가물의 분류체계를 합성, 천연 구분 없이 품목별 주용도를 명시해 사용목적에 명확히 하도록 개편을 하였습니다.

첨가물 개편의 주요 취지는 화학적합성품과 천연첨가물의 구분을 없애는 부분이었습니다. EU, 미국, 일본 등에서도 식품첨가물을 천연과 합성을 기준으로 분류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향료에 대해서는 천연향료와 합성향료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향료를 표기할 때에도 천연향료와 합성향료로 구분하여 표기하여야 합니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천연향료는 몸에 안전하고 유익하고 합성향료는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향료” 라고 표기만 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오인혼동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의사항

기존에 존재하던 합성감미료, 합성색소 등의 표기가 사라진 것과 마찬가지로 향료에 대해서도 천연향료와 합성향료의 표기를 구분하지 않고 “향료”만을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가 필요합니다.

관련규정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관련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건의사항 조치현황 개정

3. 천연/합성향료 기준규격 및 개선

국내의 경우, 외국의 향료사들로부터 향을 수입하여 사용하거나 대부분의 국내 향료사들도 재외국의 다국적 향료사로 부터 향료를 공급받아서 일부만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새로운 향료를 만들어내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입니다.

이와 같이 재외국의 다국적 향료사들의 향료에 의존성이 높은 상황이며, 재외국의 향료들은 이미 안전성이 입증되어 IOFI 및 FEMA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2019년 식품첨가물 기준 및 규격에서 "...합성향료에 수재된 품목이 외에도 CODEX, FEMA(Flavor and Extract Manufacturer's Associations), IOFI(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the Flavour Industry) 등 국제적으로 식품향료로서 통용되는 것은 사용할 수 있다..." 조항이 있었으나 현재는 삭제하고 합성향료 허용물질 목록이 신설 (한국형 Positive List)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산업체에서는 제품에 함유된 향료를 판단할 때 혼란이 있으며, 지방식약청에서도 국내 합성향료 positive list에 있는 향료만이 가능하고 안전하지를 확인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참고로 재외국의 향료사들은 기밀 보호 이유로 향료의 상세 내역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건의사항

기준 첨가물 공전상에 명시된 "CODEX, FEMA, IOFI 등 국제적으로 식품향료로서 통용되는 경우는 국내에서도 인정한다"는 조항을 다시 추가하는 것이 산업체 및 지방식약청에서 업무 처리시 혼선을 막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관련규정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관련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건의사항 조치현황 개정

4. Non-GMO 수출국 표시 사용

일본의 경우, 수출국에서 판매중인 제품에 Non-GMO로 표기되어 있는 경우, 일본어 표시 라벨(스티커)에 Non-GMO를 표시하지 않는다면, 수출국에서 표시된 Non-GMO에 대해서는 법적인 제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엄격한 국내 GMO 규정으로 인해 재외국에서 판매 중인 제품에 Non-GMO 표시가 있는 경우 국내 수입시 스티커 부착 등 어려움이 많습니다.

건의사항

국제적 조화를 위해서, 수출국에서 Non-GMO 표시/인쇄되어 판매중인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엄격한 국내 규정에 따라 모든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조항을 두는 것을 건의드립니다.

단, 수출국에서 Non-GMO 표시된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에 한함

- 수출국 제품의 Non-GMO 표시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음
- 하지만, 한글표시사항에는 Non-GMO 또는 유전자 변형 식품이 아니라는 표

시를 할 수 없음

- 외국어(영어, 일본어 등)로 표시된 사항은 국내 규정에 따른 표시가 아님을 한글표시사항에 명시하여 소비자의 오인과 혼동이 없도록 함

관련규정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관련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건의사항 조치현황 개정

5. 기구 및 용기포장 재활용 합성수지제 범위 확대

EU, 미국, 일본 등 주요 외국에서는 재활용 폴리프로필렌 또는 폴리에틸렌 등 재활용된 합성수지의 식품포장재 사용에 제한이 없으며 사용량도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유럽 연합의 경우 위원회 규칙 (EC) No 282/2008에서 식품과 접촉하는 재활용 합성수지에 대하여 규정합니다. 이에 따르면 화학적 해중합화를 통해 얻은 단량체나 탄화수소물은 새로이 합성수지를 생산하기 위한 단량체 등과 동등한 취급을 받도록 합니다.

미국 FDA는 지난 2006년 재활용 합성수지 재질을 식품 포장재에 이용하는 것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따르면 재활용 생산자는 식품 접촉 재활용 합성수지가 새로 생산하는 합성수지와 동등한 기준 및 규격을 만족하도록 할 책임이 있으며 세부 공정을 FDA로부터 평가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FDA에서 제공하는 재활용 합성수지 데이터베이스를 보면 이미 적지 않은 업체가 폴리프로필렌 또는 폴리에틸렌 등과 같은 합성수지 재질에 대한 No objection letter (NOL)을 취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재활용 합성수지는 "식품 기구 및 포장에서의 재활용 합성수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재활용 합성수지의 재활용 공정에서 화학적 불순물이 적절하게 제거되어 식품으로 이행되지 않음을 과학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재활용 생산자나 수입자가 일본 정부에 재활용 합성수지 이용의 안전성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식품에 직접 접촉하는 재질로 사용될 수 있는 재활용 합성수지는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와 폴리에틸렌나프탈레이트(PEN)에 한정되어 있어 안전성이 확보된 방법으로 재활용된 물질이라 하더라도 다른 종류의 합성수지는 기구 및 용기 포장에 사용될 수 없습니다.

건의사항

외국과 같이 식품에 직접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에 사용가능한 재활용 합

성수지의 범위가 폴리프로필렌(PP), 폴리에틸렌(PE) 등 다양한 기타 합성수지로 확대되기를 희망합니다.

관련규정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관련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건의사항 조치현황 신규

6. 포장 관련 법규 개정에 대한 충분한 유예기간 및 합리적 도입

환경부의 포장재 관련 규정의 개정은 관련 제품의 디자인 및 개발 단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변경이 필요시 많은 시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산업계에서 개정 규정을 반영하기에는 상당히 짧은 유예기간을 두어 주어진 시간 안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데 어려움이 많으며, 특히 국내 제제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준비 기간이 오래 걸리는 수입업체는 더욱 문제시됩니다. (예1,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 (2019.11.18 개정, 2020.07.01 적용) → 7개월 안에 포장재 변경 필요), (예2, “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2020.01.29 개정, 2020.07.01 시행): 재포장 금지 -> 2021.01부터 법 적용이나 세부사항이 아직 정해지지 않음)

또한 ‘제품포장규칙’ 제11조(포장제품의 재포장 금지)에 명시된 ‘포장되어 생산된 제품을 재포장하여 제조·수입·판매해서는 안 된다’에 따라 이미 수출국에서 포장되어 생산된 수입품은 국내 수입 후 포장행위가 원천적으로 금지되므로 국내 생산시설에서 추가 포장이 가능한 제조업체에 비해 수입업체가 훨씬 더 불리한 입장입니다. 더욱이 수입업체의 수입 후 포장을 금지하고, 수출국에서의 포장을 독려함으로써, 국내 포장산업을 축소(일자리 감소)시키는 등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재활용의무생산자(EPR)가 준수하여야 하는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 (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포장재)가 운영되고 재활용부과금 또는 분담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장재질과 무관하게 모든 재포장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법의 일관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건의사항

포장재 변경 관련법의 제개정은 업체에서 현실적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최소 2년 이상의 충분한 유예기간을 주어야 합니다. 또한, 「제품포장규칙」 시행규칙 제11조(포장제품의 재포장 금지) “포장되어 생산된 제품을 재포장하여 제조·수입·판매해서는 안 된다” 관련 생산공장에서 추가 포장이 가능한 국내 제조업체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수입업체의 재포장 예외기준이 설정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포장재 재질에 따른 순차적인 시행이 필요합니다. 재포장의 재질이 필름·시트류 포장재에 대해 먼저 시행하고, 종이 등과 같은 재활용이 용이한 재질에 대해서는 후후 검토하여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도입하는 것이 소비자와 업계

의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규정을 준수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 해당 내용은 주류 / 화장품 / 식품 위원회에서 공동으로 제기하는 안건입니다.

관련규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 방법 등 포장재 관련 규정

관련부처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건의사항 조치현황 신규

개요

코로나19라는 초유의 감염병 사태에 따른 경제 및 사회 구조 전반의 대대적인 변화가 야기되면서 비대면 등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헬스케어 관련 산업의 주목도가 상승하였습니다.

향후 헬스케어 사업은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경제적, 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혁신을 창출할 것이고 이러한 혁신적인 가치에 대한 적절한 인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변화에 따른 규제의 유연성이 보다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요이슈

1. 신약의 환자 접근성 개선을 위한 경제성평가 가이드라인 개선

HTA guidance of HIRA는 질병 부담, 환자의 사회적 요구 및 혁신적인 신약의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의 ICER 임계값은 GDP에 대한 기준이 오래되어 2013년 기준 1인당 GDP 23,000 달러에서 2019년 기준 GDP 31,940달러로의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입 이후 10년 이상 관련 업데이트가 없었던 현행 경제성평가 지침도, 업계와 충분한 합의를 통한 할인을, EQ-5D tariff 등의 현실적인 기준 개선이 필요합니다.

건의사항

질병의 중증도, 대체약제의 유무, 생존기간비율, 삶의 질, 혁신의 가치 및 사회적 요구도 등 현실을 반영한 ICER 임계값 적용이 필요합니다. 비용효과모델에서의 기본 사례 추정치에 있어 보다 유연한 접근방식이 권장되어야 합니다. (예, 표준 시간대, 유용성, 감소속도, 할인을 등).

또한, 한 개의 HRQoL 측정값을 제안하기 보다는 보다 유연한 EQ-5D tariff 적용이 필요하며, 비용 효과성 모델평가의 한계가 있고 약의 가치평가가 과소평가되거나 충족되지 않은 요구가 높은 경우, ICER 임계값을 넘어 임상적 가치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권장되어야 합니다.

관련규정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의 평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관련부처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

건의사항 조치현황 재건의

헬스케어 위원회

2. 글로벌 혁신신약 가격우대 정책의 현실화를 통한 혁신적 신약의 가치 인정
EU는 현행 해당 규정이 적법한 절차를 통해 국내외의 기업 모두가 공정하게 적용되도록 완성된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해당 규정의 적용 조건이 현실적으로 매우 제한적이어서 국내 보건의료 발전에 기여한 혁신적 약제를 해당 규정에 적절히 적용하기 어렵고, 예측할 수 있는 혜택이 불분명하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해당 규정으로는 국내 보건의료에 중요한 혁신 신약의 도입 또는 개발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이러한 약제의 지속가능한 도입 및 공급을 위해 중요한 요소인 혁신 가치의 인정이 적절하게 이루어 지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건의사항

현행규정이 국민 보건의료에 지속적 발전을 위해 적절한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면밀하고 시기 적절한 평가가 중요합니다. 해당 규정은 적용 기준에 대한 유연성을 가지고 (예, 5개 조건 중 3개 만족 시 적용), 적용 약제에게 예상되는 우대 약가 수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예, ICER 역치 2배 상향)을 만들어 국내 보건의료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중대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신속한 개선을 건의합니다.

관련규정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의 평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6조3

관련부처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건의사항 조치현황 재건의

3. 복합제 약가산정기준 개선

복합제의 가격산정은 각 성분의 기준가격의 53.55%의 합 또는 각 성분 중 한 성분의 최고가격으로 평가되어 왔으며, 이는 제네릭 약가산정 기준에 근거합니다. 이러한 접근은 이미 특허가 만료된 약제의 복합제인 경우 복제약의 약가산정 방식을 준용할 수 있겠으나, 특허가 유효한 신약의 요양급여 상한금액 결정은 의약품의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

현재 복제약이 없는 (특허가 유효한 성분) 각 성분의 복합제 약가 산정은 이러한 원칙에서 벗어나 임상적 유효성과 비용효과성을 상한금액 산정에 반영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특허에 대한 침해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환자의 순응도를 향상시켜 보다 우수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복합제의 출시가 가격산정방식의 문제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건의사항

특허 성분을 포함한 (단일성분의 복제약이 없는) 복합제에 대한 평가 기준 개선을 요청하며, 이를 위해 생물의약품에 대한 산정기준 수준 (70%)의 복합제 약가 산정을 건의합니다.

관련규정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관련부처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건의사항 조치현황 재건의

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약가협상 생략 상한금액 수용 약제들에 대한 협상대상 및 협상 내용 관련)

해당 규정에 따르면 약가협상 생략 상한금액 수용 약제들에 대해서도 반드시 예상 사용량 협상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불필요한 행정력 소모이며, 무리한 협상으로 조기에 약가 인하를 유도하는 위험성도 있습니다.

약가 협상 생략 상한금액을 수용한 약제들에 대한 약가 협상 생략 절차는 정부재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에 따라, 불필요한 행정적 소모를 최소화함으로 약제 등 재절차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과 배치됩니다.

건의사항

약가협상 생략 상한금액을 수용한 약제의 경우, 해당 시장에서의 기존 가중 평균가를 수용함으로써 정부재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에 따라 등재 시, 예상사용량 협상을 하지 않고 사용량 연동제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관련규정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 11조의 2의 7항 3호 및 8항 2호

관련부처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건의사항 조치현황 신규

5. 중복적인 약가 인하 기전

사용범위 확대 약제의 경우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예상 사용 추가금액을 산정하여 사전 약가 인하를 하고 있습니다.

사용범위 확대 급여기준 고시 후, 실 청구금액이 예상 사용량에 미치지 못할 경우, 기 인하된 가격에 대한 보상기전이 없고 이는 해당 제약회사에 대한 재산권 침해의 여지가 있습니다.

건의사항

사용범위 확대에 따라 예상되는 추가 청구금액에 따른 사전인하제도를 폐지하고 현재의 사용량 연동 약가협상제도에 포함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규정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별표 3

관련부처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건의사항 조치현황 개정

6. 위험분담제 운영의 예측성, 투명성 및 유연성

위험분담제는 보험자(지불자)에게 환급을 통해 표시가와 실제 가격을 달리하는 등 보험재정의 부담을 완화하고, 기존에 보장이 힘들었던 혁신 신약들의 환자 접근성을 개선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위험분담제 약가 협상 세부운영지침’은 제약사의 경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며 사전 공개된 의견개진 등 합리적 절차 없이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개정(안)이 제한적으로 논의되어 합리성, 투명성, 예측가능성을 저해합니다. 또한, 대상이 제한적이고, 급여범위 확대 및 계약 연장시에도 필수적으로 경제성평가가 요구되어 절차가 매우 복잡하며 경제성평가를 거쳐 등재된 타약제와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환자의 접근성이 저해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영국, 호주, 프랑스, 이태리 등외국에서는 없는 부가가치세 관련 과중부담으로 한국에서 신약가치가 추가 하락되는 문제가 2014년 시행이후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담보 등 운영상 부담 및 환자에 대한 환급이 공단과 개별 회사로 나누어 진행되어 환자개인정보보호 우려 등 운영면에서 개선될 필요가 있습니다.

건의사항

대체약제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치료적 위치가 다르고 질병 부담, 환자의 사회적 요구가 높은 약제들은 환자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회사 요청 시 위험분담제 적용이 가능해야 합니다. 위험분담제의 급여 확대 절차를 유연하고 간소하게 하고, 제네릭이 등재될 때 계약기간을 보장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공단의 위험분담제 약가협상 세부운영지침 개정은 투명하고, 유연성과 예측성을 갖고 환자접근성을 개선하는 제도도입의 취지에 부합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민관위험분담제 운영개선실무단을 구성, 부가세 과부담에 따른 신약가치 추가 하락 방지책* 마련, 정보보호를 위해 전액본인부담 환자에 대한 환급절차 개선, 담보 등 기업 부담을 합리화하는 운영 개선이 필요합니다.

* 제외국 및 타산업 사례: 면세, 환급시 부가가치세 제외, 환급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규정

관련규정 위험분담제 약가협상 세부운영 지침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 관련)

관련부처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 관련)

건의사항 조치현황 재건의

7. 희귀질환, 희귀 암환자 약제 접근성 강화

지난 2007-2019년도에 식약처에서 허가 받은 희귀의약품 156개 제품 중, 환자가 실제 접근이 가능한 급여 등재의약품 비율은 56%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들 56% 약제의 급여 지출이 전체 약제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18년 약제비 지출액 기준 1.4%에 불과합니다.

건의사항

희귀질환 및 희귀 암환자가 실질적인 약제 접근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2021국민건강보험 종합 계획 실행계획'에 이들을 위한 신약 급여 등재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마련해 명시해야 합니다.

중증질환 약제비 계정을 위해 필요한 자원은 리펀드, 약제재평가 등 기존 제도를 통해 절감된 재정을 이용하며, 첨단 바이오 의약품을 포함해 환자들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삶의 질을 현격히 저하시키는 질환에 사용되는 치료제 등 사용 대상을 명확히 하여 제약사에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미국, 캐나다, 유럽 에서는 이미 10년전부터 희귀질환약제비 지출 비중이 약제비 지출 금액 중 2.5~8.9%에 달했습니다. 의료 보장 제도에 앞서 있는 한국에서도 비슷한 수준으로 희귀질환, 중증 암환자들의 약제보장성 강화가 필요합니다.

관련규정 2021국민건강보험 종합 계획 실행계획

관련부처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건의사항 조치현황 개정

8. 중증 암환자의 빠른 약제 접근성을 위한 항암제기금의 조성

수개월 내 사망이 예견되는 중증 암환자의 빠른 약제 접근성 마련을 위해, 급여 등재 결정 전 환자들의 약제비 부담을 완화하면서 급여 결정에 참고할 수 있는 실사용 데이터(RWD)를 구축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건의사항

영국 또는 호주와 같은 별도의 기금 제도를 도입하여 급여 등재 전 환자 약제 접근성을 보장하고 기금 운용 범위를 마련 (실사용증거(RWE) 활용을 위한

데이터구축 등)하여 급여 등재 시 비용 효과성 평가에 참고할 수 있는 실제 임상 자료 수집을 제한합니다.

2011년에 영국에서 설립된 항암제기금(cancer drug fund)은 2016년 재개정을 통해 단점을 보완하여, 급여가 결정되지 않은 항암제의 약제 접근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관련규정 암관리법

관련부처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건의사항 조치현황 신규

9. 세포유전자 치료제 국내 도입 논의를 위한 보건복지부 산하 협의체 구성
미국 FDA가 지난 2017년 최초의CAR-T 항암면역세포치료제 및 최초 유전자 치료제를 허가한 이후 주요 선진국에서는 세포유전자 치료제가 다양한 급여 모델을 통해 제도권에 진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세포유전자 치료제는 단일 약제로는 초고가 의약품이라는 점에서 기존의 건강보험 급여 원칙 및 기존 약제 급여 등재제도로는 적절한 급여가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해당 혁신신약들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의약품으로 신속한 급여도 필요한 실정이라는 점에서 이들 의약품의 급여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필요한 실정입니다.

건의사항

향후 국내에서도 세포유전자 치료제들이 지속적으로 출시될 예정이라는 점에서 이들 세포유전자 치료제들이 국내에서도 적절히 급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적합한 급여 모델 등 제도 개선을 논의할 수 있는 복지부 산하 세포유전자치료제 제도개선 협의체 구성을 제안합니다. (위원장은 보건 의료정책실장 또는 건강보험정책국장으로 함)

협의체에서는 이미 세포유전자 치료제가 출시된 국가들에서의 급여 모델에 대한 분석 및 적합한 국내 도입 모델에 대한 평가 등을 통해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협의체는 복지부 보험약제과, 심평원 약제관리실, 건강보험공단 급여 전략실 등 의약품 급여평가 및 협상을 담당하는 부서를 포함해 외부 전문가 및 환자단체, 제약업계 등이 동시에 참여해 세포유전자 치료제 국내 도입 및 제도 개선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병행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향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차원에서의 후속 논의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함)

관련부처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전략실

건의사항 조치현황 신규

10. 항암제 급여 검토 시 선 등재 후 평가 제도의 도입

희귀 중증 난치성 질환 치료 약제의 경우, 질환의 특성으로 인해 약제의 비용 효과성 입증 등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식약처로부터 희귀 지정을 받았음에도 심사평가원에서 마련한 신속 심사를 위한 제도에 속하지 못하는 약제가 있는 바, 희귀 및 중증 난치성 환자들의 약제 접근성 보장을 위해 선 등재 후 평가 제도의 마련을 제안합니다.

건의사항

이미 정부에서 사후평가를 계획한다고 밝힌 항암제, 희귀 난치성 질환 치료 약제의 경우, 급여 등재 결정시 최우선순위로 두고, 중증환자들의 빠른 약제 접근성 보장을 위해 암질환심의위원회 평가 이후 특정 가격으로 선 등재한 후 사후평가 시점에 기준에 따라 등재 가격을 결정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관련규정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관련부처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건의사항 조치현황 개정

11. 혁신적인 의약품의 신속심사(조건부허가) 요건 및 심사기간의 개선

치료적 확증(3상) 시험 결과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치료적 탐색(2상) 시험 결과로 조건부허가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경우, 2상과 동일한 치료군 대상의 3상 임상시험이 필수적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신속심사는 ‘실제 검토 및 승인 기간’을 절대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어야 하나, 식약처 관련규정 내 면제되는 요건 및 신속심사 소요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조건부허가 외에는 현재 실효성이 없는 조항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혁신적인 의약품 혹은 의학적 미충족 요구가 높은 신약 및 신규 적응증에 대한 국내 도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건의사항

1. 조건부허가 요건의 개선

합당한 경우 (예. 항암제에서 현실적으로 2상과 동일한 치료군(동일 차수

등)으로 3상을 진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허가조건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 규정 혹은 가이드라인(예. 신속심사 적용기준 가이드라인)의 개정을 건의합니다.

2. 신속심사 절차의 개선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58조 및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 규정41조2에서 제출 면제가 가능한 자료 및 단축할 수 있는 심사 소요기간에 대하여 명확한 범위 및 기간을 정의하지 않고 불분명하게 표현하고 있기에 (예. ‘일부를 시판 후 제출’, ‘우선적으로 신속하게 심사’, ‘신속한 허가심사’), 이는 동 규정 내 혹은 가이드라인(예. 신속심사 적용기준 가이드라인)을 통해 일반심사 대비 신속심사에서 면제되는 요건 및 단축되는 심사기간을 분명히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규정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제58조 및 제7조 6항 마목 /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 규정 제41조, 41조의2 및 제24조 3항

관련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총괄팀

건의사항 조치현황 개정

12. 약가 협상 시 약가 합의서 및 이행관리

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 및 환자보호를 위해 2019년초에 도입된 약가합의서는 현재 관련 조항이 점점 늘어나면서 제약사에 과도하고 불공정한 의무로 보일 수 있는 내용까지 추가되고 있으며, 중복적이거나 불필요한 조항도 다수 포함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급 보고의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의약품 관리종합정보센터에 이미 보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추가적 의무를 부여하여 공급 보고 지연 시 벌금납부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중복적인 규제라 볼 수 있습니다.

건의사항

약가합의서를 통해 원활한 공급 및 환자를 보호하고자 한 도입 취지에 맞게 기간 축적된 합의서 조항의 중복적이고 비현실적인 조항 등을 삭제한 표준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약가합의서를 표준화하는 과정 중 제약회사에 지나치게 불리한 조항들이 강요되는 일이 없도록 충분한 협의를 거쳐 표준화 절차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관련규정 신약 등 협상대상 약제의 세부평가기준

관련부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약가협상부

건의사항 조치현황 개정

13. 건강보험 관련 위원회 의사결정에 대한 투명성 제고 및 명확한 역할 분담
보건의료정책결정은 신약 접근성, 보험정책 및 규제 등 포괄적인 의사결정으로,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증거 기반으로 투명한 의사결정을 유지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와 회의록 공개를 통해 투명성 개선이 되었으나, 여전히 중증질환심의위원회, 경제성평가소위원회, 위험분담소위원회의 회의록 및 평가결과는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비용효과성, 재정영향 등에 대한 각 위원회들 및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간의 검토 과정이 중복적이고 반복적이며, 제약사 입장에서는 동일한 내용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을 여러 번 거쳐야 하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건의사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소속 각 소위원회에서 검토된 내용은 평가서를 제출한 제약사에게 만이라도 회의록을 공유하고 보건복지부는 정책 예측 가능성 및 증거 기반 의사결정을 위해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과정에서 적법하게 협의하고 중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심평원의 각 위원회 및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여, 각각의 위원회 특성에 맞는 전문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며, 중복적이고 반복적인 검토는 최소화 되어야 합니다.

관련규정 국민건강양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관련부처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의사항 조치현황 재건의

14. 실거래가 조사 개선 및 투명성 제고

현재 의약품 실거래가 조사는 매 2년마다 건강보험 청구내역을 활용하여, 가중평균가격을 산출하고 약가를 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매상의 실제 구입가 미만 공급은 약사법상 유통질서 준수 위반인 사항으로 정상적인 거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결국 실거래가 조사를 통해 제약사의 과도한 약가 인하의 결과로 이어지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가중평균가격 산정방법에 대한 세부 내용은 공유되지 않아 제약사는 가격인하 결정을 평가하고 실거래가 조사로 인한 가격인하를 완화하기 위한 계획 마련에도 어려움이 있어 정책의 투명성과 정책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건의사항

회사가 공급한 최저가 이하의 가격으로 도매상을 통해 유통되어 건강보험에 청구된 건에 대하여는 실거래가 가격 산정 시 제외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실거래가 산정방식 및 세부사항을 업체와 공유하고, 가중평균가격 산출 결과에 대하여도 충분한 의견수렴을 가져야 합니다.

관련규정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관련부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의사항 조치현황 재건의

15. 공정한 혁신형제약기업 인증기준의 보완

제약산업육성법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국내 R&D 발전에 공헌한 업체를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하여 세금, R&D 관련 지원, 약가 혜택 등을 부여하여 국내 제약산업을 육성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9년 1월 기준으로 47개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된 기업 중 오직 4개의 기업만이 다국적 제약기업입니다.

현재 평가기준은 국내제약사에 유리한 항목이 많아 다국적 기업들에게 불공정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다국적 기업이 국내 제약산업에 공헌하고 있는 다양한 활동들이 제대로 평가에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해외수출, 기술이전/외국기업과의 협업만이 다국적 기업의 활동 평가 기준으로 포함되어 있고, 본사가 CRO를 통해 직접 지불한 국내 R&D 비용은 평가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건의사항

국내 R&D 발전 목표 달성을 위해 중요한 요소인 외국계 기업의 국내 연구개발 및 다양한 국내사와 파트너십 관계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다국적 기업에 대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준이 별도로 수립되어야 합니다.

관련규정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
관련부처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 보건산업진흥원
건의사항 조치현황 재건의

16.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의 개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건강보험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되어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 요양급여비용, 보험료 등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입니다. 공익, 사용자단체, 근로자단체대표,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등 전체 2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의료계 및 약업계를 대표하는 단체에서도 8명의 위원을 위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다국적제약기업이 한국 전체 전문의약품의 상당량을 공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참고: 한국글로벌의약품협회 회원 기준으로 40% 이상), 국내에서 활동하는 다국적 제약기업의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단체는 위원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어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정책 결정

에 공식적으로 의견을 전달할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건의사항

국내에서 활동하는 다국적 제약기업의 단체도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함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공정한 기회가 주어질 것을 건의합니다.

관련규정 건강보험법 4조

관련부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건의사항 조치현황 신규

17. 국내 선택발명에 관한 특허성 판단 기준

제약 분야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선택발명’의 경우, 다른 나라에서는 등록 및 유지되는 특허들이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까다로운 요건으로 인해 등록이 되지 않거나 어렵게 등록되더라도 추후 무효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약 분야에서 속(genus) 특허 출원 후 12-13년의 신약 개발 과정에서 종(species) 특허 및 후속 특허를 출원하는 일은 매우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특허 주요국 중 유달리 우리나라에서만 많은 노력과 시간과 비용을 들여 개발한 종(species) 특허를 단순히 ‘선택발명’의 카테고리로 분류하고 별도의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하며 쉽게 거절되거나 무효화되고 있습니다.

건의사항

우리나라에서도 국제적 조화에 맞는 특허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선택발명 판단기준 정립을 건의합니다.

관련부처 특허청 약품화학심사과

건의사항 조치현황 신규

18. 유럽연합과의 GMP 평가 및 품질관리 시험의 상호인정 협정 체결의 조속한 추진을 통한 제도 개선 (백신과 생물학적제제 우선 적용)

유럽연합(EU) 국가 제약사는 식약처가 유럽연합과의 상호인정협정체결(MRA)을 통해 유럽 내 GMP 실태조사 및 국내 출하시험 면제를 추구하고 2020~2023년을 목표로 관련 정책연구를 시작하려는 움직임을 환영합니다.

관련 정책연구 결과가 나오기 전이지만 이러한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기에 지속적이고 다차원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더욱이 한국은 PIC/S 회원 국가로서

이미 높은 의약품 품질 수준을 보유한 국가이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이미 한국과 비슷한 품질 수준을 보유한 몇몇 비 EU 국가들(호주, 이스라엘, 일본, 미국 등)과 10년 이상 MRA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을 상호인정 국가에 포함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은 타당합니다.

건의사항

한국과 EU간 의약품 품질기준의 상호인정을 통한 국내 출하시험 면제를 신속한 공급이 필요하고 높은 기술의 시험 방법이 필요한 의약품 (예, 생물학적 제제, DTP 백신 (Tdap, 혼합 백신))에 대하여 시범적으로 우선 적용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EU국가 제약사들은 식약처 및 EC와 협력하여 가능한 모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관련규정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관련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건의사항 조치현황 개정

19. 독감백신의 신속 국검 및 위해도 평가기준 개선

국내생산 독감백신은 생산시설의 자체 품질검사시점과 동시에 국가출하승인을 위한 검사절차가 진행되지만, 수입 독감백신의 경우 생산시설의 자체 품질검사와 수입통관 절차를 마친 이후 국가출하승인을 위한 시험 및 생물학제제 제조 및 품질관리 요약서 검토가 이루어져 수입 독감백신의 출하시점은 늘 국내생산 독감백신보다 늦습니다. 또한 출하승인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생물학제제 위해도 등급 절차도 년 간 얼마나 많은 생산단위(batch number) 백신이 국가출하승인 절차를 거쳤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수입 독감백신이 전 세계적으로 훨씬 많이 접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수입된 백신의 생산단위가 적다는 이유로 높은 위해도 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건의사항

백신의 위해도 등급은 전세계 접종실적도 함께 반영하여 등급을 책정하고 생산지(해외) 품질검사와 동시에 국내 국가출하승인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독감 백신의 경우 신속 국검 절차를 도입할 것을 건의합니다.

관련규정 약사법, 의약품 등 안전에 관한 규칙, 생물학적 제제 등의 품목허가 `심사 규정 / 국가출하 승인 의약품 지정, 승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관련부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바이오생약심사부, 백신검정과

건의사항 조치현황 신규

20. 예방접종비 제도개선

여러 감염병을 동시에 예방하기 위해 개발된 콤보백신은 1990년대 이후 미국, 유럽 등 여러 나라에서 접종되고 있습니다. 콤보백신은 접종 횟수를 줄여줘 영유아의 주사로 인한 고통을 경감하고 백신의 완전 접종률을 향상시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콤보백신이 좀더 널리 접종되게 하기 위해서는 예방접종비용 규정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 중 중요한 한가지는 의사의 백신접종료 산정입니다. 현재 백신접종료 제도는 병원에서 콤보백신을 접종하면 모노(단독항원)백신을 여러 번 접종할 때 보다 더 낮은 접종료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즉 백신접종료가 예방접종 전체일정에 기초하여 설계되지 않고 백신접종건수에 따라 지급되도록 되어 있어 잦은 접종에 더 많은 접종비가 지급되는 구조로 향후 개선된 콤보백신이 국가예방접종사업에 도입되는 것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건의사항

영유아의 백신접종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비용을 줄여주고 접종율을 향상시키는 콤보백신의 지속적 개발과 도입을 위해, 해당 접종료를 성분(항원)수에 따라 정하는 것을 건의합니다. 또한 접종률 향상에 기여한 병원에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하길 요청하며, 모든 백신의 접종비는 각 접종건수가 아닌 접종일정 기준으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관련규정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관련부처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

건의사항 조치현황 재건의

21. 공중보건을 위해 백신의 혁신적 기술에 대한 가치 인정

백신은 바이러스를 배양, 약독화 후 접종하는 전통적인 백신 개발 방법으로도 충분히 높은 면역능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백신의 효능의 개선이 본질적으로 어려운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새로운 질환의 예방은 물론, 면역능을 개선하고, 잠재적 위험성을 최소화하며, 편의성/준수 등을 개선하기 위해 끊임없는 혁신적 백신의 개발이 필요하며, 정부는 이를 제도적으로 독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백신은 임상적 개선이나 이를 도모하고자 새로 개발된 기술에 대한 혁신성의 가치 보다는 낮은 가격으로 구매하기 위한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처럼 가격이 책정되고 있습니다.

효능, 안전성, 편의성 개선 시 차별화된 가격을 줄 수 있다고 명시된 가격 책정 가이드라인이 있으나, 실제로 새로운 기술을 인정받아 차별화된 가격이 책정된 백신은 거의 찾기 힘든 상황입니다. 또한 가이드라인조차 가격을 차별화할 수 있는 기준인 혁신성에 대한 기준은 백신의 특성을 고려하여 새로운 기술 개발을 지속적으로 독려하기에는 제한적입니다.

건의사항

백신의 혁신적 기술의 가치 인정은 국외는 물론 국내 업계가 공중보건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된 백신을 개발하고자 하는 노력을 다하도록 유도할 수 있고, 수입 백신의 공급 문제 발생 소지를 없앨 수 있는 등 혁신적인 백신의 국내 도입을 더욱 강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백신 특유의 개발상 어려움을 고려하여 백신의 가격 책정 및 도입 정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길 건의합니다. 또한, 공중보건 향상을 지속적으로 도모할 수 있도록 백신의 효능, 안전성, 편의성 및 기술 혁신성을 충분히 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및 정책 결정을 개선하길 요구합니다.

관련부처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건의사항 조치현황 신규

22. 생물학적 제제의 허가변경 된 항목에 대한 유예기간 설정

수입의약품의 경우 허가변경이 완료되면 이후 통관되는 제품에 대하여 변경된 허가 사항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즉, 허가 후 변경에 대한 유예기간이 없습니다. 따라서, 허가 변경 시점과 적용된 완제품 수입 시점을 맞추기가 어렵고, 허가 변경 전 사항으로 생산되어 있던 기존 재고를 사용할 수 없어, 이에 따른 수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국내 공급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허가 변경 진행 중에 국내 재고를 비축하거나 적용시점에 맞게 허가 변경을 진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으나, 충분한 재고량을 단시간 내에 비축하는 것, 국내 및 제조소의 비축 재고의 소진 시점과 예상 허가 변경 소요 기간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특히 백신은 여러 균주를 사용하여 세포부터 목적산물 생산까지 제조방법이 다 단계로 이루어져 있고 다양한 항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세계적으로 수백만 명의 환자에게 공급되기 위해 대단위 용량으로 생산되며, 생산 주기가 수개월에서 수년에 걸쳐 이루어집니다. 허가 후 생산 공정의 완건성과 효율성 증진, 품질 관리 기술 발전 등으로 품질 관련 변경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며 100개국 이 넘는 규제기관으로부터 변경 승인을 득해야 합니다.

현재 변경 전/후의 허가사항을 원료물질(예, seed)의 단계에서 한시적으로 승인하고 있으나, 그 허용 수준이 매우 제한적이고 추가적인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하며, 다양한 항원을 함유한 경우 허가 변경 관리는 더욱 복잡해집니다. 따라서 허가변경 사항의 즉각적인 시행은 제품 손실, 비용 증가, 공급의 유연성 감소를 야기하고, 궁극적으로 환자 접근성을 지연시키게 됩니다.

건의사항

허가 변경된 항목은 당시 적절한 요건 및 데이터에 근거하여 검토 및 허가되므로 변경 전/후 사항은 환자에 대한 안전성 및 유효성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한 모두 적합한 품질을 유지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허가 변경된 항목에 대해 허가 변경 이전의 제품이 생산 및 입고될 수 있도록 변경된 허가사항 시행에 대한 유예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건의합니다. (*해외 사례: 미국 및 영국에서는 6개월, 스위스의 경우 최대 12개월 (또는 허가변경 후 다음 번 생산 배치부터 적용)의 유예기간을 부여)

관련규정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관련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건의사항 조치현황 신규

23. 생물학적 제제의 품질시험에 사용하는 동물 시험법 대체의 건

전세계적으로 동물을 이용한 시험을 지양하고 대체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여 품질검사를 하는 추세입니다. 해외 제조소에서는 우리 나라를 포함한 여러 국가에 의약품을 수출하고 있으며, 제조소를 포함한 각 수입국에서는 대체 시험법을 이용하여 품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동물시험 대체법을 인정하고 있어 생물학적 제제에서 대체 시험법을 적용하는 것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였으나 리소스 부족 등의 이유로 동물을 이용한 역가 시험을 유지하고 있어 제품의 공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의사항

제약사에서 동물을 이용한 생물학적 역가 시험을 대체할 시험방법이나 모델을 개발하여 기준 및 시험방법 변경 의뢰시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합니다.

관련규정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관련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건의사항 조치현황 신규

24. 국내에서 추가로 설정하는 완제의약품 기준및시험방법 시험 항목에 대해

필요성 재검토

수입의약품들에 대해 원제조원에서 설정하지 않는 시험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품목허가 시에 제품의 제형에 따라 일부 시험 항목들이 필수적으로 추가됩니다 (예를 들어 주사제의 경우, 제제균일성시험, 불용성이물시험, 불용성미립자시험, 이상독성부정시험 등이 제형에 따라 추가됨).

이는 기술 발전으로 인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된 시험 항목이 규정으로 인해 불필요하게 설정되는 상황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상독성 부정시험의 경우, GMP 도입과 공정 밸리데이션의 발전 및 엄격한 품질관리로 인해 그 필요성이 낮아졌고 유럽약전에서는 삭제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특정 시험항목이 공정 중 관리 또는 실시간 모니터링 등으로 관리되는 경우, 이종으로 규격 설정이 필요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건의사항

유럽약전에서 삭제된 이상독성부정시험을 생물학적제제 기준및시험방법에서 삭제하거나, 필요에 따라 설정하길 건의합니다. 그리고 시험 항목을 제형별로 설정하지 않고 각 제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에 따라 적절히 설정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약전에 명시하길 요청합니다.

관련규정 생물학적제제 기준및시험방법, 대한약전

관련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정책과

건의사항 조치현황 신규

25. 제조품질관리 관련 보완자료의 요구 수준 개선

제조품질관리 관련, 업체에서 위해평가자료 및 고찰자료를 제출함에도 불구하고 국제공통기술문서(CTD)외의 실측치나 시험기초자료 등 불필요한 보완자료를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 기준및시험방법 심사 시, 밸리데이션 '전 항목'에 대하여 시험기초자료 요구하거나, 원료의약품 품질심사 시, 출발물질에 대한 과도한 실측치 요구 및 기등록 물질의 제조소 추가로 인한 신규 DMF등록 시에도 물질특성자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조품질관리 심사 시, 위해평가자료로 그 필요성이 같음되거나 검증이 필요하지 않은 항목들에 대해서도 보완을 요청하는 것은 업계에는 자료 준비 및 제출에 부담을 야기하고 식약처에서도 오랜 검토 시간이 소요되어 부담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건의사항

제조품질관리 심사 시, 위해평가자료 및 고찰자료로 그 필요성이 같음될 수 있는 국제공통기술문서(CTD)외의 시험기초자료 또는 실측치 제출을 요구사항에서 제외하길 건의합니다. 또한, DMF 심사 시, 출발물질에 대한 근거 규정과 심사 방향성 마련하고 기등록된 물질의 DMF 제조소 추가 시에는 DMF 등록이 아닌 DMF 허가 변경(제조원 추가)로 심사하는 것을 고려하여, 불필요한 자료를 제출/심사하는 것을 개선하길 요청합니다.

관련규정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7조2항다목4) / 원료의약품 등록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항제4호가목

관련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규격과 / 서울청 유해물질분석과

건의사항 조치현황 신규

26. 완제의약품의 출하 승인 규격과 유효 기간 규격 분리

기준 및 시험방법의 설정에 대한 상세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다수의 의약품이 국제공통기술문서의 형태와는 상이한 형태로, 하나의 규격을 품목의 출하 승인 시점부터 유효기간 전체에 적용하도록 허가되어 있습니다.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ICH) 및 EU에서는 출하 승인 규격과 유효 기간 규격을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ICH 및 해외 규정과 상이함으로 인해 해외 제조소로부터의 공급에 차질을 빚을 뿐 아니라 의약품 제조 및 공급의 각 단계에 가장 적절한 규격 확보가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의사항

환자들이 의약품을 차질없이 원활히 공급받을 수 있고, 출하 승인 규격과 유효 기간 규격을 적절히 적용하도록 의약품 허가 및 심사 가이드라인 혹은 완제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가이드선의 개정을 통해 의약품 제조 및 공급 과정의 각 단계(출하/안정성)에 적합한 기준 및 시험방법을 설정하길 건의합니다.

관련규정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정 /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관련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품질과, 허가총괄팀, 융복합기술정책팀

건의사항 조치현황 신규

27. 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의 국제기준조화

현행 국내 비교용출시험방법 및 동등성 판정기준이 미국, 유럽 및 일본 등을 포함한 국제기준과 상이하여 수입사의 경우 제조소에서 시험한 비교용출시험 결과를 국내에 제출 불가능해 재시험을 진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용출시험방법	판정방법
한국	제형만 고려한 방법 제시	비교시점별 판정 혹은 유사성인자
미국	제형 및 성분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방법 제시 또는 설정 가능	유사성인자
유럽		유사성인자
일본		비교시점별 판정 혹은 유사성인자

<용출시험방법 관련>

미국과 유럽의 경우, pH 1.2, 4.5 및 6.8 용출액에서 시험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 반면에 국내에서는 “물”에서도 용출시험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체내 환경이 아닌 ‘물’에서 비교적 불안정한 약물인 경우에는 용출시험 자체를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판정방법>

미국과 유럽의 경우, 유사성인자를 이용한 용출유사성 비교 필요 시점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반면에 국내는 비교시점을 15분, 30분, 45분으로 추가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국내는 코팅제 첨가제의 변경 시, 변경 수준을 코팅층 내 함유율 차이로만 계산하여 기타 국가의 규정과 비교하여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에는 단위제형 총 중량과 비교)

수입의약품의 경우 국내에서 추가 자료를 준비해야 하고 외국의 규정에 따르면 비교용출시험만으로 변경이 가능한 수준의 변경도 우리나라에서는 생물학 적동등성 시험까지 요구되는 경우가 있어 허가 변경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의사항

의약품 동등성시험 기준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건의합니다. 비교용출시험방법 및 판정기준의 국제 조화를 통해 보다 합리적이고 분명한 의약품동등성 판단 기준을 성립해야 하며, 부형제 변경 등 변경 수준에 따른 의약품동등성시험의 종류, 분류 기준의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관련규정 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

관련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약효동등성과

건의사항 조치현황 신규

28.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고시 재검토

국내 갱신제도 도입은 기존의 의약품 재평가의 평가주기가 21년까지 장기화되는 문제점이 있어, 이러한 의약품재평가를 대체하는 5년 주기의 갱신제도를 도입하여 최신 과학수준을 반영하여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의약품 재평가의 목적도 이와 동일합니다. 갱신제도 도입으로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이 주기적으로 평가가 가능한 상황에서 중복 규제로 보이는 재평가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건의사항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고시의 실효성에 대하여 삭제 등을 포함한 적극적인 재고가 필요합니다.

관련규정 「약사법」 제33조 및 제37조의3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조 3항 3호, 제11조 1항 6호, 제47조 1항 1호 및 제47조의2 1항 /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관련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

건의사항 조치현황 신규

29. 임상시험 변경승인 절차 개선 및 일괄적용에 대한 공식절차 및 가이드라인 구축
항암제 임상시험은 한 시험약으로 다수의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나 한국의 시스템은 변경승인, 변경보고로 나누어져 있고, CMC변경사항과 IB 변경사항 등을 따로 진행하게 되어 EU시스템과도 절차가 다릅니다.

또한 식약처에서는 임상시험을 스테디별로 각각 관리하고 있어 동일한 변경사항 이더라도 여러 번의 변경승인, 보고로 인해 시간적 낭비를 초래합니다. 이는 타국에 비해 절차적, 제도적 부담을 가중시킴에 따라 한국의 글로벌 임상 유치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건의사항

임상시험 변경승인 일괄적용에 관한 공식적인 절차 마련과 외국의 사례를 기반으로 한 스테디 별 IND관리 시스템 개선이 필요합니다. 현재 식약처에서 변경승인에 대해서는 스폰서에서 일괄적용을 요청하는 공문을 통해서 처리시행문에 명시해주는 방식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해당 절차에 대한 공식적인 규정 및 가이드라인의 마련이 필요합니다.

관련규정 의약품 임상시험 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

관련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제도과

건의사항 조치현황 신규

30. 허가 변경 시 변경 내용에 따른 보고 방식 범주화 및 구비요건의 수준 간소화
품목의 변경 허가 시 변경 내용과는 무관하게, 변경 항목에 따라 동일한 수준의 구비서류가 요청됩니다. EU, 미국, 캐나다 등지에서는 동일 변경 항목 내에서도 변경 내용이 품목의 품질, 안전성, 유효성 등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major/moderate/minor로 나누어 변경 신청을 하며, 이에 따른 변경 방식과 구비서류가 다르

게 요청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요구되는 부가적인 서류가 해외 제조소에는 구비되어 있지 않아 의약품의 공급에 차질이 생기기도 합니다.

건의사항

ICHQ12 가이드라인의 신속 도입에 따라 변경 내용을 major/moderate/minor 등으로 범주화 및 그에 따른 구비서류를 간소화할 것 요청합니다. 또한, 연차 보고 가능한 대상을 확대 및 구체화시켜 허가 변경 일정으로 인한 품목의 공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합니다.

관련규정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 8조 /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제 3조 /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제 3조

관련부처 의약품심사부 의약품심사조정과 / 바이오생약심사부 바이오심사조정과 / 생물제제과

건의사항 조치현황 신규

31. BSE 자료제출 관련 전자 서명 허용 및 공증 기준 완화 요청

수입사에서 의약품 수출입 협회를 통하여 관련 품목을 수입/통관 시 ‘BSE Statement’를 제조처의 수기 서명과 함께 제조국 정부 혹은 공공기관의 공증을 받아 원본 제출하도록 요구받고 있습니다.

백신 등 미감염 증명서는 제조처의 수기 서명 및 공증을 받은 원본을 제출하고 있었으나, 코로나19 기간동안 제조처 직원들의 물리적인 이동 제한 및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재발되는 감염병으로 인해 기존 진행 중이던, 수기 서명 및 대면 공증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건의사항

제조처에서는 향후 직원의 안전 및 거리두기 규정 정착의 일환으로 법적 효력을 인정받고 있는 전자서명 및 전자공증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BSE Statement’ 제출 시, 요구받는 제조처 직원의 수기 서명 및 공증에 대해서 법적 효력이 있는 전자서명으로 대체되도록 건의합니다.

관련규정 약사법, 대외무역법 통합공고

관련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 품질관리과 / 산업통상자원부

건의사항 조치현황 신규

32. 필러의 관리범위 명확화를 위한 별도 분류 체계 마련

현재 의료기기 필러는 주름개선과 같은 치료목적외로만 사용되고 있으나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등 EU 국가에서는 피부탄력 개선, 수분 보충 등 미용 목적의 카테고리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미용 필러의 카테고리가 없어 미용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off-label이 되며, 이는 오히려 안전관리의 사각지대가 되고 필러가 가진 효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건의사항

미용목적을 표방하는 필러가 속하는 카테고리를 선정하고, 해당 법령의 정의 개정 및 해당 제품 분류체계 마련이 필요합니다. (예,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류에 관한 규정 개정 등)

관련규정 의료기기법/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류에 관한 규정

관련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

건의사항 조치현황 신규

김시윤
과장,
보험 위원회

개요

ECCK의 보험위원회는 한국에서 활동 중인 보험사들의 대변인으로, 업계와 정부 간 소통의 매개체로서 상호간 이해와 협조를 촉진시켜서 한국의 사업환경의 선진화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산하 보험위원회는 정부가 보험상품 고객들을 적절히 보호함과 동시에 보험회사들이 우수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규제환경을 제공할 책임이 있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는 그와 같은 규제환경의 핵심요소를 다음과 같이 인식합니다.

- 강력한 규제와 감독을 지향하되 보험사에 불필요한 부담을 가중시키지는 않을 것
- 투명성과 예측가능성: 명확하고, 시장상황 및 정책 목표에 부합하되, 신규 규제 신설로 인한 “컴플라이언스 규제 비용”을 최소화하는 규제
- 보험사들의 일상적인 업무가 방해받지 않도록, 감독기관의 예측 가능하고 공백없는 조직개편 및 구조조정
- 감독과 모니터링의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밀접한 협력
- 모든 시장참여자가 동등한 조건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시장환경
- 일괄적 규제보다는 혁신을 위한 융통성 있는 정책

주요이슈

1. ‘빛의 대물림 방지’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 발의에 대하여 긍정적 검토 요청
보험업법 제100조에서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대출 등을 조건으로 대출 등을 받으려는 자에게 보험계약 체결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서 신용보험의 취급을 꺼리고 있는 실정으므로 신용보험의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용보험은 대출자에게 사망 등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대출자의 빚을 보험회사가 대신 갚아주는 ‘대출금 갚아 주는 보험’으로 빛의 대물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중요한 보장 장치입니다.

신용보험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채무의 상속을 방지하고 대출 건전성 향상, (2) 가장 소중한 자산인 집(주거) 보호, (3) 가장 취약한 가계 지원 및 과잉 채무 방지, (4) 금융포용성 촉진, (5) 보험사에 혁신적 성장엔진 제공.

상기의 장점들을 통해, 신용보험은 사회의 후생을 증진시키는 사회안정망으로서 역할을 합니다.

과제점추진방안

건의사항

‘빛의 대물림 방지’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 발의에 대하여 긍정적 검토를 요청합니다.

관련규정 보험업법 100조

관련부처 금융위원회 보험과

건의사항 조치현황 개정

2. 수입차 표준 정비 수가 및 시간 공표

ECCK 보험위원회는 정비소와 보험사간 분쟁 방지를 위해 2백만 대 이상이 등록되어 있는 수입차의 경우에도 국산 자동차와 동일하게 표준 정비수가 및 시간을 공표하도록 국토교통부에 건의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는 법규 개정에 따라 보험정비협의회가 구성되면 동 협의회에서 수입차에 대한 정비요금이 논의되도록 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건의사항

국토교통부는 해당 법규 시행일(2020.10.8)에 맞추어 수입차에 대한 정비요금을 논의하고, 구체적인 표준 정비수가 및 시간을 공표하길 건의합니다.

관련규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5조의2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

관련부처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건의사항 조치현황 개정

3. 대인배상II 치료비 전액지급제도의 개선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의무보험인 ‘대인배상I’에 대해서만 치료비 전액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서는 이를 ‘대인배상II’까지 확대 적용 중입니다. ‘대인배상II’에까지 과실비를 상계 없이 치료비를 전액 보상하는 것은 과잉진료 및 법적 정합성 문제가 발생합니다.

건의사항

‘대인배상I’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치료비에 대해서는 전액 지급하도록 하는 현행 제도를 폐지하고, 과실비율에 따라 계산된 치료비만 보상하도록 표준약관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표준약관 <별표3> 과실상계 등”을 개정하길 건의합니다.

관련규정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관련부처 금융위원회 보험과 및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건의사항 조치현황 신규

4. 정비견적서 발급대상자에 보험회사를 추가하도록 명시

자동차정비업자는 정비를 의뢰한 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정비견적서와 점검·명세서를 발급하고 사후 관리 내용을 고지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험사고로 인한 정비의 경우 통상적으로 정비업체에 차량이 입고되면 보험사 직원이 정비업체와 협의하여 수리범위 및 수리방법을 정하고 지불보증 후, 정비업체에서 수리비를 청구하면 보험사 직원이 손해 산정하여 수리비를 지급하는 절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법 16조에 근거하여 수리비를 산정하고 있으나 일부 정비업체에서는 보험사고로 인한 정비임을 인지하고도 법 조문의 모호함을 이유로 보험회사에 통보 없이 임의로 수리한 후 과도한 수리비를 청구하거나 차량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는 차량소유자 등에게 과도한 수리비를 직접 수령하는 등 지속적인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건의사항

수리비 산정 절차의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를 통한 보험소비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보험사고로 인한 정비의 경우, 자동차관리법 58조 4항 6호에 보험금 지급 책임이 있는 보험회사를 고지 대상에 추가해야 합니다. 관련 법문을 “정비를 의뢰한 자 및 보험회사”로 개정하길 건의합니다.

관련규정 자동차관리법 제58조 4항 6호

관련부처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건의사항 조치현황 신규

1. ECCK가 2019년에 실시한 소비자 설문 조사에서 소비자의 44%가 위조품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ECCK (2019), 부산 소비자들의 위조품 인식 조사

지식재산권위원회

개요

지식재산권은 인간의 정신적인 창조물 즉, 지식재산에 소유권을 부여하는 법적 근간입니다. 지식재산권으로 잘 알려진 권리로는 상품과 서비스의 출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로 하여금 구매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상표권과 제품(전체 또는 일부)이나 제품의 장식의 시각적 외관을 보호함으로써 혁신을 촉진하는 산업 디자인권, 그리고 기술 혁신을 보상하는 특허권이 있습니다.

2018년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지식재산 집약적 산업은 한국 전체 GDP의 43%를 차지합니다. 나아가 IP 집약 산업은 60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직원들에게 50%의 임금 프리미엄을 제공할 만큼 한국 경제에서 주요합니다.

이러한 중요성을 고려하여 ECCK는 설립 이래 지식재산권위원회를 운영해 왔으며 수년 동안 다양한 건의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보다 협조적인 한국의 IP 환경을 구축하는 데 일조할 수 있었던 점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ECCK는 2019년 ECCK 백서에서 다루어, 법정손해배상액의 상한선 상향을 검토하게 되고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위조상품유통에 대한 책임 부과 및 이의 면제 규정 도입을 검토하게 된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한국의 국경, 자유무역지역, 국내 및 온라인에서의 위조품 판매에 대한 단속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오프라인 시장에서의 단속이 감소하여 위조 제품 판매가 증가하고, 온라인에서의 판매 역시 증가하여 지적 재산 보호에 있어 새로운 차원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적 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었음에도 공무원과 시민들 내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에 대한 깊은 이해가 요구됩니다.¹

ECCK 지식재산권 위원회는 한국에서의 지식재산 환경 개선을 위해 사회 각 계층의 지식재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임으로써 혁신을 활성화하고 모든 종류의 지식재산의 권리 집행을 지원하는 등 모든 관계자들을 돕는 노력을 계속할 것입니다. 한국에서의 지식재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입법이나 관행의 개선을 통해 도움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이슈들을 아래에 제시하였습니다. ECCK는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모든 관계자들의 협력을 환영하는 바입니다.

주요이슈

1. 지식재산 관련 사건에 관한 협력 부족

각 기관마다 단속 공무원들의 집행 권한의 범위는 다르지만 권한이 겹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식재산권 집행 전반에 있어서 뿐 아니라 특정 사건에 많은 수의 전담 인력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위원회

2 OECD (2018),
Governance Frameworks
to Counter Illicit Trade.

3 European Commission
(2020) COMMISSION
STAFF WORKING
DOCUMENT - Report
on the protection
and enforc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third countries.

4 European Commission
(2018) COMMISSION
STAFF WORKING
DOCUMENT - Report
on the protection
and enforc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third countries.

5 OECD (2018),
Governance Frameworks
to Counter Illicit Trade.

하지만 단속 기관들이 효율성과 단속 집행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각자의 인력을 모아 합동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아울러 한 기관의 단속 및 시장 동향에 대한 정보가 다른 기관의 단속 공무원들과 공유되지 않아 단속 활동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건의사항

OECD는 “협력 강화와 국제 공조 체제의 범위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따라서 국내외의 단속 기관들은 물론, 산업계와 정기적으로 정보 및 사례를 공유하는 기회를 만들 것을 건의합니다.

나아가 지식재산 관련 단속 권한을 부여받은 모든 기관에서 지식재산권 전담부서를 설립하는 것을 환영합니다.

관련부처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보호정책과)

건의사항 조치현황
재건의

2. 지식재산 범죄에 관한 효과적이지 못한 처벌

효과적인 지식재산권 법 집행은 강력한 지식재산권 시스템의 기반입니다.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 (TRIPS)² 제61조는 회원국들로 하여금 “적어도, 고의로 상표 또는 저작권을 상업적 규모로 침해한 경우에 [...] 이에 상응하는 정도의 범죄에 적용되는 처벌수준과 일치하고 동일 범죄를 방지할 수 있는 정도의 구금 및/또는 벌금을 포함”하는 형사적인 절차와 처벌을 마련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에 따라 한국의 ‘저작권법’ 침해 시 최대 5년의 징역과 최대 5천만원의 벌금,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및 ‘특허법’ 침해 시에는 최대 7년의 징역 또는 최대 1억 원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그러나 지식재산권 침해 사건의 경우, 실제로 선고되는 형량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낮은 수준입니다. 한국의 처벌 수위는 “범죄를 적절하게 방지하기에는 불충분한 것으로 간주”³되었기 때문에 ‘체계적 결함’⁴으로 지적되었습니다.

특히, 위조 제품의 생성, 배포 및 판매에 관여하는 행위자들의 경우 “이러한 행위자들은 고가이지만 위험이 가장 낮은 위조품을 거래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벌금 및 제재가 주요 억제 수단입니다.”⁵ 여러 국가에서 위조가 실제 징역형을 받는 반면, 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징역형의 집행 유예를 선고받습니다. 또한 위조품 판매자에게 수십만 원 정도의 낮은 벌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건의사항

단속 기관과 사법 기관의 공무원들이 지식재산권의 침해행위가 끼치는 영향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수치에서 나타난) 지식 재산의 중요성을 인식할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인식이 있어야 심도 있는 조사, 적극적인 기소 및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처벌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특히, 위조 산업의 수익성에 대한 이해가 강화되면 이해관계자들이 해당 법률에서 제공하는 강력한 선고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는 위조품 생산을 억제하고 중복범죄를 줄일 것입니다.

관련부처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보호정책과)

건의사항 조치현황 재건의

3. 국경조치

관세청은 밀수품 및 위조품을 단속하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입국 전에 위조품을 단속하고 압수하는 것은 국가에서 유통 가능한 위조품의 수를 직접적으로 감소시키기 때문에 효과적인 위조 방지 정책의 필수 요건입니다. 세관 공무원의 압수 및 단속력 강화와 소포로 발송된 위조품 압수 특별 프로젝트는 칭찬받을 만한 발전입니다.

건의사항

무역활동을 지나치게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화물에 대한 적정 검수율을 유지하고 검수 담당 세관 공무원의 인원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식재산 역량 개발 세미나에 참여할 기회를 충분히 마련하여 담당 공무원들이 수출입 물품을 신속하고도 철저하게 검수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기를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관련부처 관세청 (특수통관과)

건의사항 조치현황 재건의

4. 지식재산권 침해단속 연간보고서

ECCK는 관세청의 권고에 따라 2015년부터 위조품 압수에 대한 연간 보고서를 발간하기 시작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관세청의 지식재산권 침해 단속 연간보고서에서는 전체 압수량 및 통관 형태별 적발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압수물 규모의 표기에 있어서는 수량, 중량, 금액의 3가지 다른 단위를 혼합 사용하고 있습니다.

관세청 특수통관과는 ECCK 2018년 백서의 권고에 따라 통관절차를 개선하고

통일된 표기방식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건의사항

ECCK는 관세청 지식재산권 침해 단속 연간보고서에 압수물의 표기 방식을 통일하여 총 압수된 품목 수를 수량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관련부처 관세청 (특수통관과)

건의사항 조치현황 재건의

5. 관세청 우체국 국제특송(EMS) 사업 효율성 제고

수년 동안 국경을 넘어 위조 제품을 유통하기 위해 소형화물을 사용하는 사례가 증가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국제 우편물 통관 규정 제8조의 2를 개정하여 위조품을 발송인에게 반송하지 않고 위조품을 압수·보관할 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규제 개정에 따라 관세청, 상표권자 및 산업계 대표자들이 수입품 검사를 늘리기 위해 협력하여 소위 Express Mail Service (EMS) 프로젝트라는 이니셔티브가 시작되었습니다. 매주 지정된 요일에 관련 이해 관계자가 소포를 분류하고 공동 현장 검증을 하고 소포 데이터베이스를 업데이트하여 신속한 통관을 가능하게 합니다.

나아가 항구에 도착하는 소포와 민간 택배 서비스를 통해 수입된 소포로 EMS 프로젝트가 확장되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EMS 프로젝트는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협력을 활용하는 놀라운 프로젝트지만 그 효과를 최대한으로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구조적 과제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소수의 세관 공무원이 우편 세관을 통해 한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물품을 단속하는 데 관여한다는 점입니다.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는 높은 검사율에 의해 결정되므로 단속에 관련된 공무원의 수를 늘릴 것을 권장합니다. 더 나아가 EMS 프로젝트를 통해 압수된 소포를 보관할 창고 공간이 제한적입니다.

건의사항

EMS 프로젝트를 통해 최대한의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우체국 통관을 통해 한국으로 들어오는 물품을 단속하기 위한 인력 추가 배치 및 EMS 프로젝트를 통해 압수된 소포의 보관을 위한 창고 공간 추가할당을 권장합니다.

관련규정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관련부처 관세청 (특수통관과)

건의사항 조치현황 신규

6. 특별사법경찰권 지정

ECCK는 지식재산권 위원회를 통해 소비자, 기업 및 사회 전체를 보호하기 위해 위조 산업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에 지속적으로 헌신해왔습니다. 이러한 취지로 ECCK는 2013년 서울시 지자체 공무원들과 기업간의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서울의 유명 관광지에서의 공공연한 위조품 판매를 근절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위조품 판매는 서울시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부산 국제 시장과 대구 서문 시장에서도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서울과는 달리 부산과 대구 중구청의 지방 공무원은 국제 시장과 서문 시장에서 위조품의 생산, 판매, 유통을 조사하고 단속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 받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여러 경찰 부서에서 위조 제품에 대한 조치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건의사항

한국의 다른 지자체, 특히 부산중구청과 대구중구청은 사법경찰직무법 제6조 제34호, 제5조 제38호에 의거하여 위조 행위를 조사하고 불법 제품을 압수하기 위해 근무지 관할 검찰청 검사장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제청할 것을 제안합니다.

관련규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사법경찰직무법)

관련부처 부산중구청 & 대구중구청

건의사항 조치현황 재건의

7. 공공연한 위조품 판매

ECCK는 지식재산권 위원회를 통해 소비자, 기업 및 사회 전체를 보호하기 위해 위조 산업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에 지속적으로 헌신해왔습니다. 이러한 취지로 ECCK는 2013년 서울시 지자체 공무원들과 기업간의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서울의 유명 관광지에서의 공공연한 위조품 판매를 근절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운영 시간(21시경부터5시 사이), 상인들의 은밀한 수법 또는 시장 규모 등을 포함한 시장에 따른 여러가지 요인들 때문에 단속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는 위조품 판매를 근절하기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의 확산을 억제하는 조치로 인해 단속 활동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이로 인해 위조 단속 태스크 포스의 신규 구성원이 적절한 교육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더라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건의사항

인사이드가 있을 경우 적절한 인수인계가 이루어지고 팀원의 기술과 통찰력이 팀 내에 남아있을 수 있도록 할 것을 권장합니다.

관련규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사법경찰직무법)

관련부처 서울중구청

건의사항 조치현황 재건의

8. 유사상표 단속

지난 몇 년간 국내에서의 위조품 단속 활동은 증가하였습니다. 위조품업자들은 위조품의 압수 및 폐기 처분을 피하기 위해 저명한 브랜드 명성에 쉽게 무임승차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고 있어 소비자에게는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 중 하나는 브랜드 제품을 거의 동일하게 복제하되 교묘하게 변형시키는 것입니다. 유사상표 사용은 상표법 침해로 간주되지만, 단속 활동은 주로 동일상표를 사용한 물품 압수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단속 활동을 동일상표로만 제한하는 것은 위조산업에게 유사상표 사용은 허용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것입니다.

건의사항

단속 공무원들은 등록된 상표와 동일한 경우뿐만 아니라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물품도 압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ECCK와 회원사들은 담당 공무원들에게 다양한 지식재산권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단속 활동에 협조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관련규정 상표법

관련부처 서울중구청

건의사항 조치현황 재건의

9. 온라인 단속에 관한 이해관계자 간 협력

세계적으로 인터넷을 통한 거래가 급증하고 있으며 코로나19의 확산은 이를 가속화하였습니다. 위조산업 또한 이 같은 추세를 따라 인터넷 시장으로 확대하면서 의심없이 구매하는 소비자들에게 불법 위조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상에서 위조품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유럽집행위원회는 인터넷 매개자, 상표권자 및 유관협회 같은 이해관계자들간 대화를 도모하여 서로 협력하여 자발적이면서 실용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대화를 통해 이해당사자들 간 양해각서(MoU)⁶가 체결되기도 했습니다.

온라인 공간에서 악의적인 위조 제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상표권자는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해당 운영자에게 위조 제품 판매를 알립니다. 온라인 매개자들 간 각자의 절차와 저작권 보유자와의 협력 의지가 크게 다르다는 점은 위조품 단속을 어렵게 합니다.

이해관계자 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9년 3월 한국에서 온라인 지식재산권 보호 및 단속을 위한 라운드테이블이 개최되었으며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상표권자, 특허청,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유럽연합대표부, 그리고 주한유럽상공회의소에서 참가하였습니다. 이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모든 이해관계자들 간의 양해 각서 작성의 이점에 동의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에의 위조품을 줄이기 위한 양해 각서가 특허청,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간 체결되었지만, 상표권자들은 이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건의사항

인터넷에서의 위조품 불법 유통은 전세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모범 사례는 모든 이해관계자들(관련 정부기관, 인터넷 매개자, 상표권자 및 유관협회) 간에 공유되어야 하고 이를 통해 (유럽연합의 인터넷을 통한 위조품 판매 양해 각서와 같은) 자발적이고 실용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협력이 가능해집니다.

ECCK는 모든 이해 관계자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상표권자, 협회) 사이에 양해 각서를 준비하도록 권장합니다.

관련부처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
건의사항 조치현황 재건의

10. 저작권 및 사용료

한국은 여러 국제 조약과 더불어 유럽연합과 자유무역협정에도 서명했으며, 이 협정에 따라 저작자, 제작자 및 공연자 등의 공연권을 보장해주시기로 약속하였습니다.

한국의 저작권법은 음반이나 영화, 그리고 공연 및 방송 등 다양한 유형의 저작물을 보호합니다. 하지만 해당 법의 제29조 제2항은 사용료 지불 의무를 면제해 줌으로써 저작자, 제작자 및 공연자에게 공연 권리 행사를 심각하게 제한합니다.

시행령에는 면제 적용 조건이 명시되어 있는데 그 조건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며

7.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실연 음반 조약,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 (TRIPS), 베른 협약 포함

대다수의 한국 기업들이 사용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보상 기준은 당사자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수립되었지만, 사실상 저작권 보유자가 창작물의 가치를 공정하게 반영한 것으로 간주할 수 없는 극히 낮은 보상을 수용해야 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건의사항

모든 음반 저작자, 제작자 및 공연자가 저작물 사용에 대해 적절히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위 시행령에 규정된 면제 범위를 좁히고, 사업주가 사업의 매력도를 높이기 위해 음악 재생 여부를 결정한다는 점을 감안할 것을 권고합니다.

또한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통찰력과 해외 관행, 당사자들 간 협상을 통해 보상금 기준을 설정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해당 보상에 대한 철저한 재평가를 수행할 것을 건의합니다.

관련규정 저작권법
관련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건의사항 조치현황 개정

11. 표준필수특허

오늘날의 유비쿼터스 연결 시대에 국제 표준은 핵심입니다. 연결성은 코로나19의 영향을 완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여러 지역 기업들의 집중적인 연구 및 개발 활동으로 표준화된 국제적인 통신 기술이 탄생되었고, 이를 통해 종단(end-to-end) 시스템 실현과 전세계적인 상호운용성이 보장되었습니다.

셀룰러 기술의 중요성은 빠른 확산 및 사용으로 한국에서 이미 700만 명 이상의 가입자가 5G기술의 혜택을 받고 있다는 점으로도 입증되었습니다.

5G는 향후 10년동안 자동차, 건강, 에너지, 농업 및 제조업을 포함한 주요 업계의 니즈에 부응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사물 인터넷(IoT)에 필수적인 자동화 및 데이터 교환을 지원할 것이며, 교통, 공공 안전 및 방위와 같은 사회적 기능에도 핵심이 될 것입니다.

5G와 IoT가 제공하는 엄청난 사회적 혜택을 구현하려면 이동 통신 기술의 표준이 전세계 기업들이 보유한 최신 기술을 기반으로 협력과 경쟁이 가능한 프레임워크 안에서 지속적으로 개발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균형 잡힌 접근 방법을 통해 글로벌 시장이 육성되고 건전하고 개방적인

기술 생태계가 뒷받침될 것이며, 지속적인 R&D 투자와 최신 기술의 접근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건의사항

새로운 통신 기술 표준이 개발되고 사용되기 위해서는 시장 주도적이고 개방적이며 균형 잡히고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보존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기 위한 주된 요소로는 지식재산권에 대해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FRAND) 조건에 따라 권리를 부여해주어 첨단 기술이 계속해서 개방형 표준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와 특허에서 미국과 유럽연합의 최근의 발전 상황을 고려하고, 이러한 발전이 그들로 하여금 더 많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지 평가해볼 것을 권장합니다.

관련규정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

관련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지식산업감사과) / 특허청(IP Creation Strategy Division)

건의사항 조치현황 재건의

12. 기술 수출 관련 규제의 모호성

기술 수출에 대한 규제와 그 규제에 대한 모호한 해석 때문에 기술 혁신과 지식재산권 창출이 저해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산업기술의 부정한 유출을 방지하고 산업기술을 보호함으로써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해, 그리고 “대량파괴무기와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 및 재래식무기의 제조·개발·사용 또는 보관”을 막기 위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대외무역법은 '전략적 기술/자료'의 국가 핵심 기술 수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특히 (i)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 핵심 기술’과 (ii) ‘대외무역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략적 기술/자료’의 해석상의 모호함 때문에 국제 협력을 통한 기술혁신에 제한이 있습니다.

건의사항

ECCK는 위 법률들로 인하여 산업계에서 겪는 어려움을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혁신과에서 확인한 것을 높이 평가합니다. 나아가 ‘국가 핵심 기술’ 및 ‘전략적 기술/자료’에 대한 설명과 구체적인 예시를 포함하여 그 범위와 의미를 규정하는 명확한 지침 마련을 제안합니다.

관련규정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대외무역법

관련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혁신과)

건의사항 조치현황 개정

13. 손해배상액 산정

한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에 있어 손해배상액을 계산하기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i) 원고의 일실이익; (ii) 피고의 침해행위로 인한 이익; (iii) 합리적인 통상실시료.

또한, 배상액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밝히는 것이 곤란한 경우, 법원이 제반사항을 고려해 재량으로 손해액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독일, 일본, 미국을 포함한 다수의 국가에서는 주로 합리적인 통상실시료를 기준으로 배상액이 산정되지만, 한국에서는 법원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금액에 따라 배상액이 결정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⁸

건의사항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에 있어 손해배상액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법부는 합리적인 통상실시료 조항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숙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식재산권 분야의 종사자들과 협의하여 합리적인 통상실시료의 액수에 관한 전문가 견해를 받아들이는 기준을 마련해 볼 수 있습니다.

관련규정 특허법

관련부처 특허법원

건의사항 조치현황 재건의

⁸ 조영선 교수, (2013) 상표권 침해에 대한 구제 법리의 재검토 —경과실 감액을 중심으로

주방및소형가전위원회

개요

주방·소형가전 위원회의 관련 부처는 식품을 담는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식품 검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가전 중 전기용품 안전인증 관련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 전자파적합성 인증 관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전파연구원입니다.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시스템인 환경성보장제(EcoAS)는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내 생활가전 시장이 커짐에 따라 수입량도 늘어나는 추세이지만, 한국 시장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비관세 무역 장벽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먼저, 식품용 기구, 용기의 경우 식품 접촉 재질 및 색상 별 식품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하고, 전기를 이용해 작동하는 제품은 전자파인증(EMC)과 전기용품 안전인증 두 가지 인증의 대상 여부를 확인 후 인증을 거쳐 수입이 가능합니다.

주요이슈

1. 가정용 압력솥 표시사항 개선

가정용 압력솥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관리대상품목이지만, 표시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가정용 압력냄비 및 압력솥 안전기준’에 의하여 표시를 해야 합니다.

압력솥 안전기준의 다른 표시사항 항목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유사하기 때문에 별 다른 특이사항이 없으나, 제조시기 표시에 대해서는 ‘가정용 압력냄비 및 압력솥 안전기준’에 따라 표시해야 하는데, 해당 기준에 따르면 표시사항에 ‘제조연월(MMY)’을 표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조주차(WWYY)’와 같이 제품의 제조시기를 알 수 있는 사항이 제품 자체에 표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압력솥 표시사항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제조연월 표시를 위한 스티커 등을 박스에 따로 부착해야 합니다.

건의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해당되는 품목 중, 각 품목의 별도의 안전기준 표시사항 기준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에 따른 표시 방법이라면 그 표시가 인정될 수 있길 건의합니다.

관련규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 안전인증대상공산품(가정용 압력냄비 및 압력솥)의 안전기준

관련부처 국가기술표준원

건의사항 조치현황 신규

주방 및 소형가전 위원회

2. KC 인증서 전자문서화

‘KC 인증서’는 현재 3사 시험소를 통해서 발급받고 있으며, 이렇게 발급된 ‘전기용품안전인증서’는 Safety KOREA, UNI-PASS 등의 사이트를 통해서 인증정보가 공유되고 있습니다.

인증서를 발급받은 기업들은 이렇게 발급된 실물 인증서를 별도 보관 관리를 하여야 하는데 인증서의 갱신 및 취소 반납 등의 해당 인증서 업무를 진행할 때 원본을 제출하는 것 이외에 별도의 원본인증서를 사용할 일이 없습니다.

‘전자파 적합등록필증’의 경우엔 전자 문서 형태로 발급되어 보관 및 갱신이 매우 간편한데, 이와 같이 ‘전기용품안전인증서(KC 인증서)’도 전자문서 형태로 전환되면 보다 효율적인 관리 및 보관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건의사항

‘전기용품안전인증서’ (KC 인증서)의 전자 문서화를 건의합니다.

관련규정 전기용품안전관리법

관련부처 국가기술표준원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건의사항 조치현황 신규

개요

국내 물류 산업은 한국 경제 성장의 중요 요소입니다. 2019년 동안 수출입 감소에 따라 국내의 수송량이 전체적으로 줄어든 가운데 코로나 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국경 봉쇄로 인해 해외 시장에서 생산이 중단되었으며 물류 관리에도 어려움이 발생했습니다. 더 나아가 여객 및 화물 운송 항공편 운항이 중단되면서 물류 업계 전체에 파장이 일어났으며 2020년 크로스 보더 출하의 전망은 어두울 것으로 보입니다. 해양수산부는 2020년 1월부터 6월동안 국내 항구에서 선적 처리 건수가 8% 떨어져 실질적인 회복은 어려워 보임을 발표했습니다. 여객기의 화물 수용량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항공 운송 업계 전체가 하락세를 경험했으나 반면 순수 화물 운송업체의 용량 활용도는 화물 수수료에 따라 급증했습니다. 이에 따라 항공사들은 개인용 보호구 (PPE) 운송을 위한 임시 조치로 여객기를 화물기로 사용하거나 여객기 자체를 화물기로 개조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국내 물류와 운송업계는 백화점, 슈퍼마켓 등 직접 방문하는 대신 온라인 쇼핑이 급증해 호재를 맞았습니다.

주요이슈

1. 항만 운영 정보 시스템 운영에서 보고 제의

해양수산부에서 해운법 제 28조 4항에 따른 외국국적 정기선사의 운항계획 신고를 2020년 7월 3일부로 전산으로 시행함에 따라 기존 신청양식에 비해 전산 입력시간이 더욱 소요됩니다. 특히 대형 선사의 경우 운항선대의 변경이 빈번해 업무에 큰 지장이 있습니다.

건의사항

전산입력에 드는 시간 단축을 위해 운항 신고 전산 입력방식 간소화를 건의합니다. 또한, 선대의 운항계획 변경이 아닌 단순 선박 변경의 경우 신고면제 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관련규정 항만법 제 28조 제4항 (2020년 7월 3일 시행)

관련부처 해양수산부

건의사항 조치현황 신규

2. 운임공표제 실시

2020년 7월 1일부터 해양수산부는 운임 및 요금의 공표를 통해 화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불공정 과당 경쟁을 방지하여 공정한 해상운송시장의 경쟁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운임공표제를 실시했습니다.

물류 및 운송 위원회

운임공표제의 요건은 화주와 해양수산부의 가격책정 형태로의 시스템적 변화에 대한 이해가 다르기에 특정한 문제를 야기했는데 화주의 부킹 시점에 따른 가격 변동 운임체계와 현 운임공표제 요구사항과의 괴리가 그 예입니다.

또한, 화물 운송 운임을 결정은 쉽지 않으며 비밀유지조항을 위반 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건의사항

한국에서 실질적인 운임에 대한 논의 및 계약을 체결하는 화주에 대해서만 공표 및 신고할 것을 건의합니다. 더 나아가 실제 시장에서 운임 발효되는 시점을 고려해 발효일 5-7일 전에 공표 및 신고할 것을 요청하며, 실제 장기운임계약 협의과정 및 화주의 실질적 결정 시기를 고려한 장기운임계약에 대해 운임 소급적용 인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관련부처 해양수산부

건의사항 조치현황 신규

3. 복합운송주선업체의 통관 대행업 겸업

한국은 복합운송업체(해상화물운송주선업)의 통관대행업 겸업이 가능한 곳입니다. 그러나 통관대행업을 겸할 수 있는 복합운송업체의 자격요건은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어려워 복합운송업체의 통관대행업 진출은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관세청은 수출입화물 통관업무를 복합운송업체를 통해 가능하게 하되 그 자격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하였습니다:

- 자본금 5억원 이상
- 육상운송의 경우 화물자동차70대 또는 트랙터 30대 이상
- 항공운송의 경우 화물전용기 2대 이상
- 부산지역 하역업체의 경우 하역장비는 5억원 이상 등으로 규정

위 규정을 적용할 경우 업체가 통관업을 진행하는데 있어 차질이 생길 뿐만 아니라 국내 물류 프로세스의 복잡성으로 인한 물류 경쟁력 저하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건의사항

국내에서 실현 가능한 자격 조건 제안과 통관업무 취급 법인 자격 완화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관련부처 관세청

건의사항 조치현황 신규

4. 직접운송 요건

한-EU FTA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 13조는 본 협정에 “규정된 특혜대우는 ... 양 당사자간 직접적으로 운송되는 제품에만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효율성을 위하여 다수의 기업들은 주로 허브 지역을 통하여 상품을 유통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FTA에 따르면 기업들은 상품을 재포장하거나 재분배하기 위하여 허브 지역을 경유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FTA의 엄격한 요건은 기업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안기며 몇몇 기업들로 하여금 한국이나 유럽연합과 비즈니스를 할 때 FTA를 활용하지 않는 결정을 내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의사항

이에 유럽연합 정부와 한국 정부에게 적절한 환경 아래 재포장과 재분배를 허락하는 FTA의 현대화 작업을 합의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관련규정 한-EU 자유무역협정 제 13조

관련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건의사항 조치현황 재건의

5. 중계 거점을 통한 직접 운송/운송 방식 변경

상품은 열차를 이용해 유럽에서 항구로 운반된 후 물류 서비스 제공업체가 최종 목적지 한국행 선박으로 재선적하는 방법을 포함해 물류 서비스 제공업체(예, 카타르와 같은 비 EU 국가의 항공사 거점)의 재위탁을 위한 중계 거점을 통해 유럽에서 한국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배송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부 기업들은 관세청 으로부터 이를 간접 발송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고 한-EU FTA의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건의사항

위에서 언급한 경우는 운송 발신자가 직접 발송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예외 없이 관세청에 의해 직접 운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ECCK의 의견입니다. 운송 경로의 선택과 그 운영 방식은 직접 또는 간접 운송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합니다. ECCK는 관세청이 공통적인 절차를 확립할 수 있도록 내부 통신문 초안을 작성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관련규정 한-EU 자유무역협정 제 13조

관련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건의사항 조치현황 재건의

스벤-에릭 바텐버그
이사,
조선 및 해양 위원회

개요

2019년 세계 선박 발주량은 2,529만 CGT로 전년 대비 11.6% 감소했습니다. 한국 조선사들은 전체 선박 발주량의 약 37.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국내 조선업체 실적의 핵심은 액화 천연 가스선(LNG)과 초대형 원유선(VLCC)의 글로벌 수주였습니다.

2020년 1월부터 7월까지 신조선 발주는 661만 CGT로 전년 대비 40% 감소했습니다. 감소는 주로 코로나19로 인한 선사들의 투자심리 저하와 국제해사기구(IMO)의 황산화물 배출규제 시행에 따른 관망세 심화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실적이 우수한 원사업자에 대하여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ECCK는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실질적인 사용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려는 점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나아가 선박평형수관리법령 개정을 통해 외국에서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은 자료 심의를 통해 우리나라 형식승인시험을 완화하거나 면제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는 점도 높이 평가합니다. 이미 해외에서 승인받은 제품은 한국에서도 수용하고 한국 표준과 국제 표준을 일치시킨다면 한국에서의 무역이 더욱 용이해질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국내 제품과 부품의 사용을 촉진하는 국산화 정책을 지속해왔습니다. 이는 원천 기술을 보유한 외국 장비공급업체와 한국 장비제조 업체 간의 기술 협력의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외국 장비공급업체들은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한 채 기술을 활용하고 있는 국면입니다.

주요이슈

1. 국내 조선소 최저가 입찰제 관행

한국 조선기자재 업체들은 생산원가를 밀도는 총비용 입찰 등 국내 조선소 수주 입찰에 악탈적 입찰 관행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행은 불공정하게 경쟁을 저해하고 제품 품질의 저하를 초래하며 기술의 현상 유지, 연구개발 투자 감소, 기술혁신 저해 등을 초래합니다. 또한 이는 사업의 지속 불가능성을 높이는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건의사항

공정한 경쟁을 허용하고 지속 가능한 사업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는 입찰 과정에서 단순한 가격보다는 안전성, 기술, 품질 및 사업 경험에 대한 적절한 고려가 이뤄져야 합니다.

조선및해양위원회

관련부처 공정거래위원회

건의사항 조치현황 재건의

2. 간접손해에 대한 공급 업체 보상 범위

공정거래위원회는 거래 조건의 균형을 맞추고 하도급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표준하도급계약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약 및 규정은 부분적으로 채택되어 조선소의 자체 약관에 통합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하도급계약서 작성 의도는 높지 평가하나 간접손해에 대한 조항은 하도급 업체의 어려움을 초래합니다. 기본계약서 제45 조는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이 계약을 위반한 상대방의 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상대방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고 규정합니다. 이 문구로 인해 조선소는 공급자에게 간접손해에 대해 무한한 책임을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무한책임은 업계에서 일반적이지 않으며, 책임의 정도는 일반적으로 양 당사자 간의 계약 협상 사항입니다. 기본계약서에 이러한 문구가 포함됨에 따라 조선소는 간접손해에 대한 공급자의 무한책임 이하의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는 계약에는 동의하길 꺼려합니다.

건의사항

한국의 관행을 국제 관행과 일치시키기 위해 다음사항을 권장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간접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문구를 완전히 삭제하거나 기존의 기본계약서 제45조를 “상대방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에서 “상대방은 손해배상 책임을 [...]의 한도로 진다”로 변경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하도급계약서의 문구가 하도급공급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기본 틀이며, 하도급공급자에게 유리한 변경을 허용하고 환영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전달합니다.

관련규정 기계(기타기계장비)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관련부처 공정거래위원회

건의사항 조치현황 신규

3. 해상풍력발전사업 허가

2020년 7월 한국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안 중, 그린 뉴딜은 탄소 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도약하는 구상입니다. 친환경 인프라와 신재

생 에너지 생산을 위한 투자를 늘리고, 국가 태양광 및 풍력 발전 용량을 2025년까지 42.7GW로 3 배로 늘리겠다는 목표가 설정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7월 17일 연설에서 “그린 에너지” 중에서 가장 성장 가능성이 큰 ‘해상풍력’은 “육상풍력에 비해 설치장소가 자유롭고, 대규모단지 개발이 가능하며, 설비 이용률도 높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나아가 “해상풍력 타워는 해양 플랜트와 조선·기자재 기술, 하부구조물 시공에는 건설기술이 적용”되어 “해상풍력의 확대는 조선산업과 철강산업, 건설산업에도 새로운 수요 창출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외국 투자자들은 한국 기업과 함께 한국에서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 단지를 건설하고자 합니다.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하는 데 있어 주요 장애물은 해당 사업 추진단계(라이다 센서 설치 초기)에서 지역 주민과 어업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정부의 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 결과 사업자는 보상제금 여부와 보상정도에 대해 사업별로 양자 간 협상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사업개발에 상당한 지연을 초래합니다.

건의사항

해상풍력단지 건설 지연을 막아 행정부에서 목표하는 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들을 건의합니다:

- 보상 기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은 관련된 모든 정부 기관이 공동으로 작성할 것. 이러한 표준은 관련 이해관계자 식별 절차, 영향 분석 및 보상 유형을 다루고 기업 규정 준수 요구 사항도 고려할 것.
- 지방자치단체는 사업 유치에 대한 동의를 얻기 위해 사업자가 지역 주민과 어업과 논의하는 과정을 지원할 것.

관련규정 수산업법

관련부처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 산업통상자원부

건의사항 조치현황 신규

개요

한국의 2020년 국방 예산은 2019년 대비 7.4% 증가한 50조 1500억 원으로 사상 처음 50 조원을 돌파했습니다. 이 예산의 많은 부분(약 33%)은 유럽 기업들이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 중요한 국내 개발을 포함한 한국 국가 안보에 결정적인 장비 획득에 할당되었습니다. 2020년 대한민국은 주요 수출 계약들을 통해 글로벌 항공 우주 및 방위 시장으로 자리매김했으며, 이는 앞으로도 계속될 추세입니다.

세계적인 COVID-19 대유행과 예산 삭감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방산 활동은 여전히 견재했습니다. 이는 국내 방산 업체들을 위한 한국 정부의 국내 개발에 대한 공약 증가 및 여러 프로젝트 납품 일정 변경 등의 중대한 지원이 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절충교역 제도는 국내 방산 산업의 역량을 키우고 나아가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방위사업청은 절충교역지침이 한국 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침 내용을 여러 차례 검토해왔습니다. 또한, 한국은 해외 방산업체들이 해당 의무를 이행하고, 국내 가치를 창출하는데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하고자 가치추적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 제도는 해외 업체들이 한국 정부에 제안할 수 있는 절충교역 대상을 식별하고 한국 정부가 제안된 사업들을 평가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제공하기에 매우 중요합니다.

유럽 기업들이 개정된 절충교역지침을 따를 경우, 일부 개정안과 기존 조항들이 외국 기업들의 책임과 의무를 증가시킬 수 있고, 결국 한국 방산장비, 방산업체, 나아가 수출 활동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가치추적제도는 보다 더 많은 기술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수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방위사업청, 유럽(해외), 한국 방산 업계는 절충교역 지침 이행(가치추적 포함)에 관한 공식적인 대화를 통해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공식적인 대화의 형태는 방위사업청 절충교역팀, 국내외 방산업체,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주한유럽상공회의소와 같은 절충교역지침 관련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하는 모범 사례를 공유하는 정기적인 포럼 및 워크숍으로 진행될 수 있고, 이를 통해 절충교역과 관계된 담당자들이 절충교역 지침, 특히 새 조항에 관한 바른 이해를 갖고 모든 관계자들이 더 유익한 조건을 식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요이슈

1. 방위사업청 절충교역지침 제13조 관련 법적 책임 확대

2018년 이후 새로 개정된 방위사업청의 절충교역지침 제13조에 따르면, 계약된 사업수행 기간이 모두 충족되지 않을 경우 기업들의 법적 책임은 확대됩니다.

항공 및 방위산업 워킹그룹

개정된 조항에 따라, 사업수행기간연장에는 1일 기준 0.15%, 연간 최대 54.75%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러한 책임부담은 1일 기준 0.075%, 연간 최대 27.38% 부과 대상인 국내 공급 업체들의 의무의 두 배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법적 책임이 처음 1년은 나머지 절충교역 가치의 20% 증가하고 그 다음 해부터는 매년 10% 증가하는 이전 지침에 비해, 이러한 조건은 법적 책임의 상당한 증가를 의미합니다.

2019년 12월에 발표된 개정 지침으로 인해, 사업수행기간 연장 시 의무 증가와 더불어, 이미 체결된 합의각서의 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도 의무 증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인상액은 이행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나머지 의무의 10%로 책정됩니다.

위에서 언급한 새로운 조항은 한국군의 방위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기업들에게도 많은 부담을 줄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잠재적으로 무한한 재정적 위험에 따른 부담으로 기업(이행 의무자)의 사업 참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계약자들이 이러한 위험 부담에 대한 비용을 포함시켜 한국 정부에 결국 더 높은 가격을 제안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행 의무자는 협상 장기화 및 향후 의무조항에 관한 타결 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한국 방산 장비, 방산업체, 나아가 수출 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건의사항

현실적으로 기업들(이행 의무자)이 개정 지침을 수행하는 데에 어려움이 따릅니다. 따라서 방위사업청에서 기업들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때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보다 유연한 제도로 개정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절충교역과 관계된 담당자들이 절충교역 지침, 특히 새 조항에 관한 바른 이해를 갖고 모든 관계자들이 더 유익한 조건을 식별할 수 있도록, 방위사업청과의 워크숍 개최를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해당 워크숍에는 방위사업청 절충교역팀의 모든 관련 이해관계자 및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주한유럽상공회의소와 같은 협회를 포함하여 국내외 방산업체까지 포함 되기를 제안합니다.

관련규정 방위사업청의 절충교역지침 제13조

관련부처 방위사업청

건의사항 조치현황 신규

2. 방위사업청 절충교역지침 제14조 관련 절충교역 이행 보증

절충교역지침 제14조에 따르면 해외 계약자가 합의각서에 합의된 이행기간 내에 절충교역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방위사업청이 미이행분의 10%를 절충교역 이행보증금에서 계약위반에 대한 위약금으로 압수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계약자들의 채무 이행 의무 면제 여부가 언급되어있지 않을 뿐 더러, 계약자에게는 이러한 결정에 대해 논의할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개정 지침은 해외 계약자가 이행 보증금을 몰수하기로 결정한 경우 절충교역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던 이전 지침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입니다.

또한, 개정 지침은 이행기간연장 기간 동안 추가 벌금을 요구하는 다른 조항들에 더해져 이전 지침보다 훨씬 더 공격적이고 징벌적인 성향의 패널티 구조를 보입니다. 실제로 이번 개정 지침은 이행 의무자에게 잠재적으로 무한 재무책임을 지게 하는, 무제한적인 의무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위에 언급된 개정 조항은 한국군이 진행하는 방위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기업들에게도 많은 부담을 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잠재적으로 높은 재무적 책임에 대한 부담으로 이행 의무자들이 사업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될 수 있으며, 계약자들이 위험 부담 비용을 가격에 포함시켜 한국 정부에게 결국 더 높은 가격을 제안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협상 장기화 및 향후 의무조항에 관한 타결 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 방산 장비, 방산업체, 나아가서 수출 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건의사항

방위사업청은 위 조항을 수정하여, 합의된 기간 내에 절충교역 의무를 이행하지 못해 이행 보증금이 몰수된 경우 해외 계약자가 절충교역 의무를 면제받는, 최소한 개정 전 조건으로 되돌릴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방위사업청 절충교역팀의 모든 관련 이해관계자 및 국방위산업진흥회, 주한유럽상공회의소와 같은 협회를 포함하여 국내외 방산업체까지 절충교역 지침 관련 모든 이해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개최할 것을 제안합니다.

관련규정 방위사업청 절충교역지침 제14조

관련부처 방위사업청

건의사항 조치현황 신규

김태양
과장,
에너지 환경
워킹그룹

주요이슈

1. 기존 도시 가스 사용 중인 업체의 액화천연가스(LNG) 직수입 허가 요청
산업용 가스 업체는 천연가스(NG)를 원료로 H2/CO를 생산하고, H2/CO를 중간원료로 사용하여 최종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고객에게 H2/CO를 공급합니다. 이후 고객의 최종 제품(TDI/MDI/PC)은 주로 해외 시장에 수출됩니다.

도시가스사업법(10조 9항)에 따르면 LNG 직수입은 자가사용 중 신규 증설 또는 연료교체용으로만 수입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가스 업체들이 공급하는 기존 천연가스 이용자들 (산업용 가스 및 화학업체)은 LNG직도입을 할 자격이 없습니다. 기존 도시가스 이용자들은 LNG직도입을 하는 신규 경쟁업체 및 해외 생산자들과 경쟁해야 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경쟁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건의사항

도시가스사업법 제10조9항을 기존 도시가스 사용자 에게도 LNG 직도입을 할 수 있도록 조항을 개정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구조적으로 기존 도시가스 사용자들은 LNG직도입자에 비해 차별적인 환경에 놓여져 있으며 법률 개정을 통해 경쟁력을 재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EU 국가에서는 NG/LNG 시장 규제가 완전히 철폐되었습니다. 사용자들 (산업 사용자, 전력 회사 등)간 완전한 수준의 자율경쟁이 가능하며 NG/LNG는 민간 소매업체(국제 석유 회사, 가스 거래자 등)로부터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공기업 (예, 한국가스공사)이 터미널을 운영할 경우 터미널 수수료 비용(기화, 저장 등)은 규제를 받습니다. 그러나 민간업체가 터미널을 소유·운영할 경우는 자유롭게 협의할 수 있으며, 내륙 배관 운송비(용량)는 규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관련규정 도시가스사업법

관련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

건의사항 조치현황 신규

2. 한국가스공사와 산업용가스·화학업체 간 천연가스(NG) 직접 계약
산업용 가스 업체는 천연가스를 원료로 H2/CO를 생산하고, H2/CO를 중간으로 사용하여 최종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고객에게 H2 및/또는 CO를 공급합니다. 이후 고객의 최종 제품(TDI/MDI/PC)은 주로 해외 시장으로 수출됩니다.

도시가스사업법(2조3호)에 따르면 도매업은 동법 시행규칙에서 정의된 바 대규모 소비자에게 가스를 공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에너지환경

2-2에 따르면 설비용량 100메가와트 이상의 발전 및 열병합발전 사용자는 도매업자로부터 직접 천연가스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용 가스 업체도 해당 조항에 추가하여 도매업자(한국가스공사)로부터 직접 천연가스를 공급받아 해외 시장에서 고객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건의사항

현재 정부는 발전회사에게 한국가스공사와 직접 거래 및 도매가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기존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 2조의 2항에 "산업용가스를 생산하는 도시가스 사용자 중 지정된 사업장에서 설비용량의 합이 시간당 9,400Nm³을 초과하는 사용자"를 한국가스공사의 도매요금이 적용되는 사용자에 추가할 것을 요청합니다. 시간당 9,400 Nm³의 사용량은 기존 법에 허용하고 있는 100메가와트 이상의 발전 및 열병합 발전 사용자의 사용량에 해당합니다. EU의 경우 천연가스시장은 이미 완전히 규제가 해제되었습니다.

관련규정 도시가스사업법

관련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

건의사항 조치현황 신규

3. 전기자동차 충전기 형식승인

2020년 1월부터 시행된 전기자동차 충전기 형식승인제도는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하나의 전기 계량기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제도는 대한민국에만 존재합니다. 과금형 충전기에 디스플레이 설치 및 계량부 봉인의 의무화됨으로써 외산 제품의 경우 한국 시장 전용 상품을 개발해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국내 업체의 경우 충전기 제조일자가 2019년인 경우 2020년까지 판매가 가능하도록 유예기간을 두었으나, 대다수의 국내업체는 아직도 해당 테스트를 완료하지 않은 상태로 제품을 판매중입니다.

외국 생산 제품의 경우 통관일자 기준으로 적용, 2019년 12월 31일 이후 통관된 제품은 국내 판매가 불가능합니다. 대응 과정이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되는 외국 제품에 대해 유예기간없이 바로 적용하는 것은 차별적인 조치로 한국 시장의 외국산 전기자동차 충전기에 대한 진입장벽이 더욱 높아진 상황입니다.

건의사항

해당 법안의 폐지 즉, 디스플레이 의무 설치 조항을 삭제할 것을 요청합니다. 해당 조항의 삭제가 불가능하다면, 외국산 전기자동차 충전기에 대해 3년간 유예조치를 요청합니다. 유럽의 경우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법정계량기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관련규정 계량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1조, 제23 조 및 제24조 /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17조 및 제20조

관련부처 국가기술표준원 (계량측정제도과)

건의사항 조치현황 신규

4. 전기자동차 충전 방식 표준 플러그

한국 정부는 전기자동차 판매 수량증가 및 배터리 용량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충전 시간을 줄이기 위해 현 완속충전기 정격 용량을 단상 기준 7kW(32A)에서 17.6kW(80A) 상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AC 단상 17.6kW 80A 충전기는 유럽 AC 삼상 22kW 32A 충전기 대비하여 다음과 같은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1) 전력부하가 큼, (2) 80A 온보드 차저는 가격이 비싸고 무거움, (3) 충전케이블 두께도 2배이상 두꺼워져 사용자가 사용하기 불편, (4) 충전기 제작단가가 비쌌, (5) 설치 공사비가 비쌌, (6) 충전기 추가 시 확장성이 떨어짐.

건의사항

유럽 AC 및 DC 충전 표준인 IEC 62196 Type 2와 CCS 2를 현 한국의 공식 충전 표준인 AC충전 SAE J1772 (IEC Type 1) 및 DC 충전 CCS 1과 함께 공식 충전 표준으로 지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관련규정 KS R IEC61851-1, KS R IEC62196-3

관련부처 국가기술표준원 (기계융합산업표준과) / 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

건의사항 조치현황 신규

5. 방사선 취급 관련 면허 규제 완화 (RI 라이선스 허용 범위 확대)

현정부의 뉴딜 정책에 따라 수소, 전기차, 배터리 등 산업의 고성장은 국가경제발전엔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수소, 배터리 등 국가경제에 중요한 성장산업에서 X-Ray 비파괴 검사 니즈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R&D/생산 시료 대형화로 350kV 이상 고에너지 X-Ray 검사장비 수요 역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 규정상, 350kV 이상 장비 소유 시, SRI 면허 보유자 고용이 필수입니다. 그러나 RI 면허와 달리 SRI 면허 보유자가 적고 상대적으로 보수가 높아 고용에 부담이 됩니다.

건의사항

성장 산업의 선도기술 도입을 촉진하고 국제 수준과 부합하는 규제를 실현하

기 위해 X-ray장비 운영 위한 SRI 면허 보유자 요구 조건을 1MeV 이상으로 상향할 것을 제안합니다. 아울러 합리적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최소경력, 의무교육 조항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관련규정 원자력안전법 제53조 제2항, 제84조 /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82조의 3

관련부처 한국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

건의사항 조치현황 신규

6. 탄력성 있는 연료사용 및 효율 증대를 통한 청정 에너지 생산

기후환경 변화에 대처하고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더 청정하고 효율이 높은 에너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열병합발전용(CHP)으로 적용된 가스 터빈은 이 부분에 대해 완벽히 적용될 수 있으며, 특히 제조부문 및 지역 냉난방 부문에 효과적입니다. 가스터빈을 이용한 열병합발전은 탄력성 있는 연료 활용을 가능케 하는데, 발전기를 전통적인 연료(디젤 및 천연가스)로부터 100% 차세대 청정연료인 수소연료로 전환하여 전체적으로 새로운 시스템을 갖추지 않고서도 CO2배출을 없앨 수 있습니다.

열병합발전은 연료수입을 최소화하도록 주에너지를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제조 및 공정산업 부문에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합니다. 전체 플랜트 효율이 90%에 이르게 되어 CO2 배출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생산업체로 하여금 분산발전을 활용하여 에너지 생산의 다양화 및 국지화 함으로써 한국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게 하며, 국내 생산업체의 비용구조를 줄여 낮은 에너지 단가를 확보할 수 있게 합니다.

나아가 유럽에서 제안되고 있는 국경조정기구를 통한 생애 동안의 공해배출 기준 특정제품에 대한 세금 부과 및 수입금지 조치 등이 한국에 도입될 경우 열병합발전의 경쟁력 제고를 가능케 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탄소배출거래제 및 기존의 보조금만으로는 열병합발전의 경제성은 다른 발전원보다 더 매력 있어 보이지 않으며, 해당 분야의 성장을 억제합니다.

건의사항

가스터빈을 통한 열병합발전 보조금 정책 적용 가능 용량을 일반적으로 생산 분야에서 사용되는 최대 용량인 50MW로 제한하는 것을 요청하며, 가스터빈을 통한 신규 열병합발전소 설치 시 검증된 공장 에너지 프로필 기준 및 시스템 효율 대비 최소 10% 에너지를 절감 할 경우로 제한하길 건의합니다.

아울러 생산분야에서 50MW 미만 용량의 가스터빈을 통한 열병합발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우대정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1) 자본금 지출에 대한 투자

세금 총당, (2) 수입된 장비에 대한 수입관세 및 수입세 면제, (3) 패키지 보일러와 같은 재래장비에 대한 내용보다 유리한 천연가스 관세, (4) 일괄적용 및 사전허용 및 면허체계.

해당 지원금체계는 1980년대부터 유럽에서 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EU-15 열병합발전은 약 18%의 총발전량에 이바지하고 열병합발전을 적용할 수 있는 총발전량의 비중은 20-25% 정도입니다.

관련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5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관련부처 환경부 (대기관리과) /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

건의사항 조치현황 신규

7.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계약방식 변경

2020년 5월 산업부통상자원부 전력시장과에서 REC 장기구매 계약에 대한 개정을 아래와 같이 검토하였습니다.

- 개정(안): REC 가격만 고정으로 체결하며, 그 금액은 최초 REC 발급 년도의 '정부정산 REC가격'으로 확정됨
- 현행: 발전자회사가 고정가와 계통한계가격 (SMP, System Marginal Price)의 차액을 REC로 보전하여 사업자에게 고정가격을 보장하고 있고 (REC=고정가-SMP), 이 고정가는 REC 계약체결시 확정되며 일반적으로 프로젝트파이낸싱 이전에 완료됨

개정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1) 신재생에너지의 양적성장에도 불구하고 발전단가의 하락이 기대만큼 크지 않고,
- (2) 고정가계약 금액이 현물시장 가격보다 현저하게 높으며,
- (3) 발전공기업이 주주로 참여함으로써 고정가가 가격이 높게 형성되는데 영향을 줌

그러나 검토된 개정(안)은 신재생에너지산업에 전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1) 사업개발을 위한 투자 결정이 어렵고,
- (2) 매출이 불확실성에 노출되며 (SMP의 변동),
- (3) 매출단가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프로젝트낸싱이 불가함

건의사항

공지된 개정(안)에 원칙적으로 반대함에 따라 REC계약방식을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SMP+REC 고정가 방식 유지하되, REC 가격에 상한선을 적용할 것을 건의합니다.

관련규정 한국전력거래소 비용평가 세부운영규정18.5.1

관련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시장과)

건의사항 조치현황 신규

8. 국산 - 외산 풍력기자재에 대한 REC 계약금 차별화

2020년 6월에 에너지경제연구원(KEEI)에서 발표한 풍력 및 태양광 사업의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용 가격전망 분석 연구서에 따르면 육·해상 풍력 균등화발전단가(LCOE, Levelized Cost of Electricity) 산정에 있어 풍력발전기의 원산지에 따라 SMP+ EC 가격에 차등하여 적용하는 것이 제안되었습니다.

<육상풍력 SMP+REC 가격 산정>

- 국산 기자재: 175.5원/kWh
- 외산 기자재: 164.9원/kWh

<해상풍력 SMP+REC 가격 산정>

- 국산 기자재: 175.3원/kWh
- 외산 기자재: 156.0원/kWh

연구용역 배경은 경제성 분석을 위한 고정가격계약의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하기 위함이나 본 보고서는 사업타당성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경제성 분석(이용율, 파워커브 등)이 적정하지 않으며, 외산터빈에 대해 PPA 가격을 낮게 책정하기 위함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풍력산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1) 국산 기자재의 경우 LCOE를 낮추고자 하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2) EU와의 수출입 프로세스에 불공정한 거래로 오인될 소지가 있음.

건의사항

국산 및 수입산 풍력기자재의 고정가를 차등 적용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토목여건, 계통연계조건, 주변 마을의 수 등의 요인으로 인해 투자비 변동폭이 크므로, REC 계약은 프로젝트별로 산정되어야 함을 건의합니다. 아울러 국산 기자재 사용시 사업주가 운영기간 동안의 장기 유지·보수에 대해 높은 위험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며, 국산 기자재를 사용한 많은 사업주가 부품수급 및 기술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관련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 / 에너지경제연구원 (신재생에너지 연구팀)

건의사항 조치현황 신규

9. 신재생에너지 인·허가 프로세스의 일원화

한국은203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 2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하기 위한 인허가 절차는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지방정부 등에 의해 진행되고 있으며, 여러 정부기관이 인허가 절차에 관여되어 있어 상호 협조의 문제로 인해 프로젝트가 지연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균등화발전단가(LCOE)를 낮추는 데에 도움이 안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별로 그리고 지역별로 민원해결비용이 상이하고, 지역정부는 민원을 100% 해결한 후 예야 인허가 진행을 재개해주기 때문입니다.

건의사항

신재생에너지 인·허가 프로세스를 산업통상자원부로 일원화하고 군별로 상이한 조례를 폐지하기를 제안합니다. 더불어 민원해결 비용에 대한 통합 가이드를 마련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덴마크의 경우 덴마크에너지공단이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를 총괄하고 풍력의 경우 터빈으로부터 반경 500m 안에 위치한 민가 및 시설만 민원비용을 지급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련규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관련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 / 한국에너지공단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지방 정부

건의사항 조치현황 신규

10. 전력구매계약 (PPA, Power Purchase Agreement)의 차별

현재 국산 터빈 사용 비중을 늘리기 위해, 해외 터빈 사용시, 국내경제 공헌도 및 국산부품 비중 등을 제출해야만 전력구매계약(PPA)을 진행해 주고 있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 국산 또는 해외터빈 여부에 따라 PPA 금액도 차등을 주어 국산터빈이 내부수익률 (IPR, Internal Rate of Return)을 충족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국산터빈의 설비투자비용 (CAPEX, Capital Expenditure)와 운영비용 (OPEX, Operation Expenditure)이 해외터빈 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건의사항

PPA를 요청하는 개발자가 사용하는 풍력터빈의 원산지와 관계없이 공정히 대우받을 수 있는 환경 (외산 터빈 사용으로 인한 추가 서류제출 요구 지양 등)을 마련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관련규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관련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

건의사항 조치현황 신규

11. 재생에너지에 대한 재정지원: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한계

현재 REC는 전기생산을 해서 직접 및 간접으로 공급하는 시설에 대해 부여되고 있고, 이러한 공급은 발전사를 대표하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준비된 입찰을 통해 부여되고 있습니다. 한국정부는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시설에 대해 REC를 부여하지만, 현실은 주로 태양광사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태양광 사업은 한국에서 개발(사업부지 등)하기가 어렵습니다. 발전사나 한국에너지공단은 중/소규모 (0.2-2MW) 신재생 에너지로부터 생산되는 장기 전력공급 계약에 소극적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촉진을 위한 정부의 REC정책이 현실과 부합하지 않습니다.

건의사항

자체 소비 프로젝트에 대하여 REC를 부여하고, 민간 전력구매계약 (PPA)에 대하여 명확한 규칙을 설정하여 주기를 요청합니다. 또한 REC부여를 더 작은 규모로 확장하고, 실제로는 더 다양한 재생 가능 및 신 에너지 기술 (예, 연료 전지, 히트 펌프 등)로 확장하길 건의합니다. (유럽재생에너지 지침 (RED II, renewable Energy Directive II) 및 전력 시장 지침 (EMD II, Electricity Market Directive II) 참조 요망)

관련규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 신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제6조

관련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 / 한국에너지공단

건의사항 조치현황 개정

12. 건물의 에너지 효율: 녹색건축물 인증제도(G-SEED)

한국은 건축물에 대하여 친환경규정을 도입하였으나, 건물의 관리에 대해서는 에너지효율, 환경에 대한 영향을 고려한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국제적으로는 건물 운영 중 또는 생애주기 동안의 성과를 평가할 뿐만 아니라 주변 주거지에 대한 영향성까지 확장한 미국 녹색건축위원회의 친환경건물 인증제도 (LEED) 또는 영국 녹색건물 인증제도 (BREEAM)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건의사항

한국 G-SEED를 현행 설계 및 시공 단계 평가에서 건물의 전체 생명주기로

확장하고, 특히 정기적인 모니터링, 검사 및 검증을 통해 실질적인 건물의 사용에 있어 에너지효율 및 성능을 고려할 것을 제안합니다.

유럽의 규제로는 건물의 에너지 성능 지침 2010/31/EU (EPBD) 및 에너지 효율 지침 2012/27/EU이 있으며, 두 법률은 모든 유럽인을 위한 청정 에너지 패키지의 일부로 각각 2018 년과 2019 년에 개정되었습니다.

유럽 그린 뉴딜 (European Green New Deal)의 일부인 “Renovation Wave”는 2019 년에 시작되어 “Carbon Neutral by 2050”을 목표로 기존 건물의 리노베이션을 계획중입니다.

관련규정 녹색건축 인증 기준

관련부처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건의사항 조치현황 개정

개요

코로나19의 발생은 기업들의 재정적 안정에 위협을 초래하였고, 이에 한국 정부의 다양한 재정 정책은 기업들이 사업을 유지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은 노동 시장의 구조적 문제 해결에 주목하게 합니다.

OECD가 최근 한국 보고서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노동 시장의 이중성과 일자리 연결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노동 시장의 경직성을 낮추고 사회보호를 강화해야 합니다. 일자리를 보호하기보다는 사회 안전망 확대와 적극적인 노동 시장 정책을 통해 노동자를 보호하는 데 초점을 두면 복지, 고용, 노동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더 많이 고용하면 중소기업 (SME)에서 노동력 부족과 장시간 노동에 대한 압박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한국 노동 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많다는 점은 분명하고, ECCN은 회원사들과 협력하여 이와 관련된 논의에 기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ECCN은 2019년 백서에 포함된 건의사항을 통해 노동 시장 관련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계획에 주목할 수 있어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직장내 괴롭힘 판단기준 사례집 발간 계획, 포괄임금제 지침 확정 계획, 공휴일 민간 적용 지원사업 신설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 계획,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최대 6개월로하는 제도 신설을 위한 입법 논의 등이 포함됩니다. ECCN은 위의 계획이 구체적인 결과로 현실화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ECCN은 개선을 필요로 하는 주요 과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이슈

1. 연차유급휴가 관련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에게 기본적인 공휴일 수를 보장해주기 위해 1년 미만 입사자에게 1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으며, 만 1년을 채운 즉시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기본 휴일 수를 보장하려는 법의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나, 1년 도달 즉시 퇴사할 경우 총 26개의 미연차 수당이 생긴다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속출되었습니다.

건의사항

ECCN은 고용노동부에서 연차유급휴가 사용 활성화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를 계획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기본 휴일 수를 보장하면서도 미연차 수당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년 도달 시 첫 해의 모든 미사용 휴가 수혜 자격을 소멸시킬 것을 제안합니다.

관련규정 근로기준법

관련부처 고용노동부

건의사항 조치현황 개정

2. 중소기업혜택 적용 제외

국내 사업체의 대다수는 중소기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내 고용의 약 90%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여러가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법인을 설립한 외국계 자회사도 한국에서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요건 (예, 총 직원 수 또는 총 매출액 기준)을 대부분 충족하지만 국내 중소기업이 제공받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외국계 자회사들도 국내 중소기업들과 비슷한 이슈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국내 법률을 준수하고 법인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며 양질의 일자리 확대에 기여하고 있는 외국계 회사에 대한 차별적인 대우는 정당화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한국에 있는 외국계 기업에서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난 7개월 동안 실업률이 1.7%p 증가한 젊은 전문직 종사자의 고용과 특히 관련이 깊습니다.

건의사항

중소기업에게 특정 혜택을 주는 일부 정책의 지원 자격 기준을 해외 본사 운영기준(본사의 자본액)이 아닌 국내 운영에 따라 설정해주시기를 요망합니다.

특히 중소기업 요건에 해당하는 외국계 기업이 청년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고, 고용노동부에서 인가한 중소기업복지지원단 자금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관련규정 다수

관련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복지지원단

건의사항 조치현황 재건의

3. 장애인 고용 촉진 제도 방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 28조와 제 33조 및 관련 시행령에 따르면,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하며,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의 사업주는 의무고용 미달률에 따라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업 상당수가 장애인에게 적절한 고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현재 시스템에서는 이를 저해하는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직무에 적합한 역량을 보유한 장애인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장애인 고용공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사무종사자의 경우 구인수에 비하여 구직자수가 80%,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는 구인수에 비하여 구직자수가 60%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장애인 고용은 중앙 집중식이 아니며 여러 기관을 통해 수행되는 등 분산되어 있습니다.

건의사항

장애인의 실 고용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장애인 직업 연수 기관들은 그들의 직업 훈련을 필요한 직무를 중심으로 산업 수요에 맞출 것을 제안합니다. 산업계는 장애인 고용 기회를 높이기 위하여 해당 기관들과 의견 공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적합한 후보자를 쉽게 찾고 산업계에서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단일화된 장애인 고용 관리 담당 컨택포인트를 설정하길 건의합니다.

관련규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 28조와 제 33조

관련부처 장애인 고용공단, 고용 노동부

건의사항 조치현황 신규

개요

정보통신기술(이하 'ICT')는 한국의 핵심 주력 산업이며 국가 경제의 핵심 동인입니다. 한국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세계 2위, 4위 반도체 공급자를 배출해냈으며, 초고속 인터넷과 5G기술의 빠른 도입에서 볼 수 있듯 오래도록 ICT인프라 구축에 주목해왔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시장 또한 한국의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이 장악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적으로 알려진 글로벌 시장 리더가 지배하는 여타 시장과는 다른 양상입니다.

2019년 ICT산업 총 생산액은 5G, 기기 인터넷, 디지털 콘텐츠 관련 투자가 주를 이루었으며 전년 대비 약 2% 성장하여 500조원을 상회하였습니다. 반도체와 ICT 장비는 주로 수출 목적으로 생산되었기에 2020년에는 해외 국가들의 국경 봉쇄로 인해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모바일 게임과 보안용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예상되는 성장에도 불구하고 상용 소프트웨어 시장 환경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온라인 교육, 전자정부, 전자물류의 성장으로 ICT산업의 전망은 조심스럽게 낙관하고 있습니다.

주요이슈

1. 클라우드 보안인증 프로그램의 진입장벽

현재 공공기관의 경우 대국민 서비스에 한하여 중앙정부는 정부통합전산센터 클라우드 (G클라우드)를 사용할 수 있고, 지방정부의 경우 전용 클라우드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기타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프라이빗 클라우드의 사용이 가능하지만, 한국인터넷진흥원 (KISA)의 보안인증 (CSAP)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현재 KISA의 보안인증을 받은 업체는 모두 23개로 전부 국내회사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외국계 기업이 인증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CSAP의 경우 필수인력의 국내보유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외국계 기업은 글로벌 파트너십 계약에 따라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거나 관리하기 위해 글로벌 서비스 파트너에 일임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관리체계로 인해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인증기준을 충족시키기 어렵습니다.

ECCK는 CSAP의 주된 동기가 가능한 최고 수준의 보안을 보장하는 것임을 이해하고 있으나, 국외에 주재하는 직원이 해당 분야에서 자격을 갖추고 최신의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적용한다면 분명 동일한 수준의 정보통신기술 보안을 달성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건의사항

클라우드 보안규정에서 안정성 확보를 위해 글로벌인증을 상호 인정해 주는 제도를 도입할 것, 그리고 운영주체의 국내 상주를 필수 요건으로 할 것이 아니라, 원격으로 운영이 가능한 경우 국외 주재를 허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관련규정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 진흥과

건의사항 조치현황 신규

2.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 우선 적용 권고

행정안전부의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에서 공공분야의 정보시스템을 개발할 경우,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 적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행정기관에서 사실상 강제 조항으로 해석하여 적용하는 관행이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는 JAVA 기반의 웹시스템에만 적용이 가능한 프레임워크로, 이 관련 규정을 근거로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는 JAVA 기반으로 개발되지 않은 패키지 소프트웨어의 공공분야 정보화사업 참여를 사실상 제약하고 있습니다.

건의사항

현재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 적용을 위한 전제조건을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정보시스템 구축 발주자를 위한 표준프레임워크 적용가이드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적용의 조건을 상위 기관인 행정안전부 지침으로의 격상이 필요합니다.

또한, 정보시스템 개발 언어가 다양화되고, 새로운 신기술이 급속하게 적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JAVA 이외의 개발언어에 대한 적용배제를 철회할 것을 제안합니다.

관련규정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 정보시스템 구축 발주자를 위한 표준프레임워크 적용가이드

관련부처 행정안전부

건의사항 조치현황 신규

3. 공공기관의 외국계 공급업체 표준계약서 수용

공공기관에서 물품을 도입하는 계약을 하는 경우, 제품의 종류와 상관없이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및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을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위 계약은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계약으로 체결되고 있습니다.

ICT분야의 H/W 및 S/W 라이선스 공급업체는 자사의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공공기관과의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행정기관의 공급업체 표준계약서 수용 또는 발주처와 공급업체 간 계약서 협의조정이 가능하다면 도입원가 절감 및 행정비용 절감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의사항

계약예규에 규정되어 있는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및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강제 적용의 탄력적인 운용을 건의합니다.

나아가 공급업체 표준계약서를 활용한 계약이 가능한 예외 조항을 신설하여 발주 행정기관에서 탄력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제안합니다.

관련규정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건의사항 조치현황 신규

주요이슈

1.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요청

법인세법 상 법인세의 신고기한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 지방소득세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주식회사 등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감사대상 회사의 범위가 증가하였고, 표준감사시간제도의 도입에 따른 감사 투입 시간의 증가로 인하여 감사보고서의 발행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외부감사 대상 법인들은 감사보고서 발행의 지연에 따라 기한 내 법인세 신고를 수행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유럽 소재 외국인투자법인들의 대부분은 국내 비상장 법인이기 때문에 감사인에 우선순위가 아니므로 이로 인해 감사보고서 발행이 지연되는 경향이 있어 기한내 법인세 신고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타국가 법인세 신고기한을 참고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영국 (12월31일), 아일랜드 (9월30일), 이탈리아 (6월30일), 스페인 (6월25일), 헝가리, 네덜란드, 포르투갈, 중국 (5월31일), 홍콩, 싱가포르 (11월30일), 말레이시아 (7월31일), 호주 (6월1일), 미국 (4월15일 연장 신고서 제출 시 6개월 연장 가능)

건의사항

신중한 검토와 정확한 신고를 위해 법인세 신고 기한을 연장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규정 법인세법 60조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

건의사항 조치현황 개정

2. 코로나 19 관련 외국인 근로소득의 국내 과세 요건 완화

일반적으로 조세조약 상 비거주자의 국내 근로소득은 체류 목적 여하에 불구하고 과세기간(연간) 183일 체류 요건에 따라 과세됩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일부 국가의 봉쇄 등으로 인해 본국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외국인의 경우 국내 체류 목적이 업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근로소득이 과세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인도의 경우, 코로나 19관련 봉쇄로 인한 국제항공의 연기 등이 있는 경우 연기된 항공편이 출발할 때까지의 기간을 체류기간에서 제외해주며, 봉쇄 기간의 경우 거주자판정시 체류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조세 워킹그룹

건의사항

코로나19 관련 본국의 봉쇄 조치 또는 항공편 연기로 인하여 국내 체류가 불가피한 경우 해당 기간을 근로소득 과세요건 산정 체류기간에서 제외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근로소득 과세요건을 완화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규정 소득세법 1조의 2 정의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

건의사항 조치현황 신규

3. 외국법무법인의 비거주자 파트너 관련 개인소득세 신고/납부 편의 제고 및 납세행정 효율성 제고

법인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2항에 따라 외국법인으로 보지 아니하게 되는 외국법무법인의 경우, 현 소득세법상 비거주자 구성원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를 부담합니다.

과세당국/외국법무법인 입장에선 전 세계의 수백명의 비거주자 구성원으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신고납부의무를 준수하게 함에 있어 많은 어려움 및 행정적 비용 발생이 예상됩니다.

영국의 경우, 파트너십의 거주자 파트너로 하여금 모든 비거주자 파트너들을 대리하여 single (composite) 세금 신고할 수 있도록 영국 국세청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수의 미국 주정부는 파트너십으로 하여금 비거주자 파트너들을 대리하여 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건의사항

수백명의 비거주자 파트너 각각 개별적으로 신고납부의무를 부담하는 방식에서 대표 거주자 파트너 1인이 각 비거주자 파트너를 대리하여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 신고서 합계표 제출 및 구성원의 납부세액을 일괄 대리 납부하도록 하는 방식을 제안합니다.

관련규정 소득세법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

건의사항 조치현황 신규

4. 코로나19로 인한 국제적 이동 제한, 격리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일시적 국내체류가 연장되어 이로 인한 국내 고정사업장 구성 법인세법 94조에서는 외국법인이 고용인을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개월 중 총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용역이 수행 되는 장소는 고정사업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법인 명의 계약 등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자를 두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자의 사업장을 고정사업장으로 규정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당국에 의해 국제간 여행이 제한되거나 격리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국내 체류기간이 연장되어 법인세상의 고정사업장을 구성하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건의사항

코로나19등 예외적이고 일시적인 상황에서 여행 제한, 격리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국내 체류기간이 법인세법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하더라도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예외 규정을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러한 예외 규정은 2020년 4월3일 OECD에서 발표한 권고사항*에도 포함되어 있으며, 호주, 아일랜드 등에서는 이미 이러한 예외 규정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https://read.oecd-ilibrary.org/view/?ref=127_127237-vsdaagpp2t3&title=OECD-Secretariat-analysis-of-tax-treaties-and-the-impact-of-the-COVID-19-Crisis

관련규정 법인세법 94조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

건의사항 조치현황 신규

5. 불명확한 서면심사 기간

관세법시행령 제139조의2 제1항 및 기업심사운영에관한훈령 제12조 제1항에 따라, 관세기업심사의 기간은 90일 (또는 120일)로 규정되어 있고, 기업심사의 종류는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 방문심사 및 후속 서면심사
- 서면심사 (방문심사 제외)

방문심사의 경우, 기업심사운영에관한훈령 제12조 제4항에 따라 방문심사를 개시하는 날로부터 기업심사기간이 시작되므로 기업심사의 기간 및 종료시점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면심사의 경우 심사를 개시하는 시점이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업심사운영에관한훈령 제12조 제5항에 따르면, “서면심사의 기간은 심사대상자가 세관장이 요청한 자료의 제출을 마친 날의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관세과세관청과 납세자 사이에서 세관장이 요청한 자료의 제출을 마친 날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을 보이는 경우가 있어, 기업심사의 기간 및 종료시점을 명확히 할 수 없습니다.

건의사항

납세자가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좀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납세자가 서면심사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기업심사기간을 계산하는 방법 또는 서면심사 통지 시 기업심사개시일을 명시하는 방법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관련규정 관세법시행령 제139조의2, 기업심사운영에관한훈령 제12조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 관세청

건의사항 조치현황 신규

6. 이전가격 조정에 대한 관세 평가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하는 다국적기업은 OECD 이전가격 가이드라인에 따른 적정이윤을 창출하기 위해 사후적인 이전가격조정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인세 목적상 이전가격원칙에 따라 사후이전가격조정을 통해 이전가격이 감액되는 경우에는 관세법 시행령 16조의 1에 따라 사전에 수입물품 거래가격 조정 계획서를 제출하는 등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입가격을 잠정 신고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이 감액되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전가격이 사후적으로 증액된다 하더라도 관세목적상 수입금액을 반드시 증액하여야 할 필요는 없지만, 실무적으로 관세청은 사후적으로 증액된 이전가격에 대해 관세를 부과합니다.

건의사항

사후적인 이전가격 감액조정이 항상 관세법상 수입가격의 감액으로 반영되지 않는 것처럼, 법의 일관된 적용을 위해 사후적인 이전가격 증액조정이 반드시 관세법상 수입가격의 증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관세법에 명시하는 것을 건의합니다.

관련규정 관세법 제30조 제1항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

건의사항 조치현황 신규

7.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명확한 소득구분 기준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에 있어 법에서 규정하는 몇 가지 구분 항목이 있지만 실무적으로 판단하는데 있어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기술 산업의 빠른 성장으로 과거와 비교하여 많은 소프트웨어들이 범용화 됨에 따라 외국 법인으로 대가 지급 시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건의사항

상용 또는 범용소프트웨어의 구분에 있어 실무적으로 판단하기 쉽도록 소프트웨어의 예시 또는 구분 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관련규정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

건의사항 조치현황 신규

8. 주택비용 관련 소득·세액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경우 주택의 구입 및 임차 관련 비용에 대해 다음과 같은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개념이 내국인에게만 적용됨에 따라, 외국인은 거주자인 경우에도 해당 공제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소득공제 중 주택자금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등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건의사항

조세형평 제고를 위해 외국인 거주자도 주택비용 관련 소득·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하도록 관련세법 개정을 건의합니다.

관련규정 소득세법 52조, 조세특례제한법 87조, 95조의2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

건의사항 조치현황 신규

9. 국외교육비 세액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근로자 본인,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1명당 300만원 (고등학교 이하) 및 900만원 (대학생) 한도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교육비를 지급하는 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거주자만 공제가 허용되고 있습니다.

건의사항

조세형평 제고를 위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국외교육비에 대하여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하도록 관련세법 개정을 건의합니다.

관련규정 소득세법 59조의4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

건의사항 조치현황 신규

10. 소득 신고 시 국외 발생한 비용 또한 세액공제 항목 포함

외국인 거주자도 원칙적으로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따라서, 과거 10년 기간에 국내에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외국인 거주자는 국내의 모든 소득에 대해 매년 5월에 국세청에 소득 신고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반해 국외 연금에 대한 납입금 또는 기부금은 세액공제되지 않습니다.

건의사항

공정한 국내외 세금 정산을 위해, 소득뿐만 아니라 국외에서 발생한 공제 가능한 비용 또한 국내외의 소득세 신고 시의 세액 공제 항목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관련규정 소득세법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

건의사항 조치현황 개정

11. 채권 할증발행비용 국내외 소득신고 시 제외

국외 금융기관을 통한 채권 이자 소득은 국내외 소득신고시 과세됩니다. 액면가보다 높게 할증발행된 채권을 매수하는 경우, 납세자는 채권에 대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지만 더 높은 이자 소득을 받습니다. 따라서 납세자는 높은 이자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지만 이는 높은 채권 매수 가격에서 비롯된 세금 손실과 상계 되지 않습니다.

건의사항

채권 투자는 공정한 과세 기준에 근거해야 합니다. 따라서 할증발행비용은 국내외 과세 계산 시 제외되어야 합니다.

관련규정 소득세법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

건의사항 조치현황 재건의

12. 외국법인에게 지급된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에 대한 원천징수

비거주자에게 지급된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6호에서는 원천징수 대상 기타소득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법인세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상 원천징수 규정의 불일치로 이하여 동일한 소득에 대하여 원천소득자가 법인(외국법인)인지 또는 개인(비거주자)인지에 따라 원천징수 여부가 달라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 입장에서는 외국법인에게 계약금을 지급한 후에 소득구분이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에서 기타소득으로 변경되어 사후적으로 원천징수 의무가 생겨서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여야 하는데 이는 사실상 매우 어렵고, 외국법인 입장에서도 지급 시 원천징수하지 않았다가 사후적으로 소득구분이 변경되어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반환해야 하는지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건의사항

외국법인에게 지급된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 이미 지급되어 원천징수가 불가하고, 사후적인 구상권의 행사는 원천징수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아니하며, 동 위약금·배상금은 기존 법인세법 하에서도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계약 파기에 따른 손해액 이내로 볼 수 있고, 외국법인과 분쟁의 소지도 있으므로, 소득세법 규정과 동일하게 원천징수 대상 기타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관련규정 소득세법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

건의사항 조치현황 재건의

13. 국내 특수관계인거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전가격 규정 준용 기준 마련

국내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는 법인세법 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법인세법 제52조)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국내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는 복잡하고 다양화하고 있어서, 법인세법 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 만으로서 규정하기 어렵고, 법인세법 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에서는 대응조정이 허용되지 않는 등 국제거래에 적용되는 이전가격 규정에 비하면 불합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국내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대한 시가를 검토함에 있어서도 국제거래에 적용되는 이전가격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건의사항

미국과 같이 국내 특수관계인 거래 시가 산출 시 이전가격 규정 준용을 위한 법 개정을 권고합니다.

관련규정 법인세법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

건의사항 조치현황 개정

14.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에 대한 자료 제출기한

통합/개별기업보고서, 국가별보고서의 제출 기한과 달리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에 대한 자료’ 제출 기한은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이므로 기한을 헛갈려서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는 납세의무자가 종종 발생합니다.

건의사항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에 대한 자료’ 제출 기한도 사업연도 종료 후 12개월로 개정 권고합니다.

관련규정 국조법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

건의사항 조치현황 재건의

15. 상호합의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적용 특례 명확화

국조법 시행령 제40조 제4항 1호에서는 징수유예 등을 불허하는 경우로 “신청인이 과거 체납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 규정 외에 해당 체납이 발생한 시기, 체납액의 크기와 체납의 기간 그리고 체납 사유

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당초 법 취지와는 다르게 과세당국의 자의적인 해석에 의해 법집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건의사항

체납이 발생한 시기(과거 5년 또는 10년까지 소급해서 체납 여부 검토 등), 체납액의 규모와 체납기간 (수입액에 달하는 세금에 대한 징수유예 신청 과정에서 과거 세금 몇 만원을 하루이를 체납한 기록이 발견되어 해당 신청이 거부되는 경우)등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와 관련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1의 2조에 대한 2019년 세법개정안에서도 체납세액을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납부한 경우는 체납의 예외로 보아 납부유예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체납 여부 판단 시 "국세"와 "지방세" 모두 포함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아 실무에서 혼란이 있을 수 있는 바, 동 규정에서 "국세"의 체납사실이라고 명확하게 지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규정 국조법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

건의사항 조치현황 재건의

16.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의 유형별 목록 고시

법인세법 시행령 2조 3항에 따라 국세청장은 외국법인의 유형별 목록을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관련 고시가 마련되지 않아 외국법인 판정에 있어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과세당국과 납세자간의 불필요한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건의사항

외국법인의 유형별 목록을 고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규정 법인세법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

건의사항 조치현황 재건의

17. 국외투자기구가 아닌 일반 외국단체의 실질귀속자 판정기준(특례) 마련
법인세법 제93조의 2(국외투자기구에 대한 실질귀속자 특례)의 도입으로 국외투자기구*의 실질귀속자 판정요건(납세의무를 부담할 것, 조세회피목적이 없을 것 등)은 명확해졌습니다.

하지만, 외국단체 중에는 지주회사, 중간자회사 등 국외투자기구의 정의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다양한 외국단체들이 존재하는 바, 법인세법 제93조의 2는 국외투자기구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제98조의 4 및 제98조의 6의 비과세면제 신청서 및 제한세율적용신청서 등에서도 국외투자기구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고, 국외투자기구의 정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외국단체들에게 적용되는 실질귀속자 판정기준이 없고, 도관회사인 외국중간자회사처럼 국외투자기구의 정의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외국단체의 경우 비과세면제신청서 및 제한세율적용신청서 작성 시 국외투자기구로 보아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인지 여부도 혼선이 있습니다.

*국외투자기구: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 등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 자산의 취득, 처분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투자행위를 하는 기구로서 국외에서 설립된 기구

건의사항

국외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외국투자단체의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93조의 2 제1항 제1호 실질귀속자 요건이 적용되고, 제98조의 4 및 제98조의 6의 비과세면제신청서 및 제한세율적용신청서 작성 시에도 도관회사인 외국단체 등의 경우 국외투자기구로 보아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관련규정 법인세법 제93조의2, 제98조의 4, 제98조의 6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

건의사항 조치현황 신규

개요

항공사들이 운영하는 노선이 줄어들고, 아웃바운드 수요가 '제로'에 수렴하면서 항공사는 물론 여행사까지 유·무급휴직으로 허리띠를 동여매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본격화되던 3월부터 현재까지 항공사와 여행사들은 고강도 휴직 제도를 시행하며 자금을 확보하려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항공사들의 2분기 실적은 국적FSC와 국적LCC의 명암이 엇갈렸습니다. 국적 FSC의 경우 여객운항의 급감에 따른 항공화물 증가로 인해 영업이익과 순이익을 달성했습니다. 매출액 역시 지난해 동기에 비해 절반가량만 줄어들었습니다. 반면 국적LCC의 경우 국제선 운항이 막히면서 국내선 운항으로 적자폭을 줄이려 했지만 대부분 90%에 가까운 감소를 보였습니다.

상반기 전체 실적을 살펴보면 상장항공사들은 총 7조600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으나 지난해 동기 11조7000억 원에 비해 40%가 감소했습니다. 한편 상장여행사와 항공사 직원은 코로나19가 시작되기 직전인 지난해 12월에 비해 지난 6월 말 현재 총 840여명이 퇴사한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항공사의 경우 코로나19 한파에서 벗어나기 위해 국제선 노선을 조금씩 재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수요를 기대하기는 힘들어 항공사들이 적자운영을 벗어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LCC들은 국내선에 노선이 집중된 상태입니다. 국내선은 전체 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지 않아 직원들의 유/무급휴직은 계속될 예정입니다.

여행사의 상황도 항공사와 같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애초 3월부터 시작된 휴직제도는 코로나19 사태가 악화되면서 점차 기간이 늘어났습니다. 3월에는 정상근무를 해왔던 여행사들도 5월부터 하나 둘 휴직에 동참하며 인건비를 줄이기에 나섰습니다. 여행업은 현재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돼 최대 6개월 동안 유급 휴업·휴직 수당의 9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무급휴업의 경우 최대 180일 동안 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198만원까지 지원받습니다. 다음 달부터 일부 항공노선이 재개됨에 따라 업계도 다시 도약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의 시선도 있지만, 해외입국자에 대한 2주 격리조치 등 아직 넘어야 할 장벽은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의 절정기였던 지난2분기 상장여행사의 매출액은 171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지난해 동기대비 95%가 감소한 수치다. 상반기 매출 또한 2182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 비해 70%가 줄었습니다.

최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2분기 상장여행사들은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대부분의 여행사들은 95~99%의 매출감소를 보였습니다. 상장된 여행사의 경우 분기별 매출액이 5억 원을 넘지 못할 경우 주식매매거래가 중지되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통해 재개여부를 결정을 합니다.

관광산업 워킹그룹

주요이슈

1.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양벌규정)의 불합리한 적용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양벌규정)의 확대 적용으로, 제3국에서의 업무과실에 따른 위반 행위에 대해 한국에 있는 법인(외국 법인의 지사)은 물론 이의 대표자에게도 이중으로 벌금형을 부과되는 것은 양벌규정의 본래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그 행위자가 외국에 있거나 그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무인 발권기 키오스크 상의 오류 포함)로, 그 행위자 대신 한국지사 대표자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이는 양벌규정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으로서, 그 행위자를 특정할 수 없다면 그를 대신하여 지사 대표자가 아닌 법인에 부과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죄를 범한 사인, 즉 그 행위자는 따로 있는데 그를 대신하여 다른 사인이 그 벌을 받는다는 점은 현행 법리체계에도 배치되는 것 입니다.

양벌규정의 본래 취지에 따라 그 죄를 범한 사인에 대한 관리책임을 물어 법인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그 행위자를 특정할 수 없다면 그 행위자에 대한 벌금과 그 행위자의 관리 책임에 대한 벌금 모두를 법인에 부과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그 행위자 외에 법인에 벌금을 부과하면서, 그 행위자를 특정할 수 없다고 하여 단순히 그 행위자를 대신하여 지사 대표자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양벌규정의 취지인 것은 아닙니다. 누가 되었건 간에 '사인'과 '법인'을 동시에 처벌하는 것이 양벌규정인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건의사항

그 행위자를 특정할 수 없다고 하여 단순히 그 행위자를 대신하여 지사 대표자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대신, 그 행위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행위자에 대한 벌금과 그 행위자의 관리 책임에 대한 벌금 모두를 법인에 부과하는 방향으로 본 규정이 적용되기를 희망합니다.

관련규정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양벌규정)

관련부처 법무부 이민조사과

건의사항 조치현황 재건의

부록

줄임말

줄임말

국문

AI 인공지능
ARECs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평법)
ATP 실거래가

BREEAM 영국 친환경건축물인증
BSE 광우병

CAGR 연평균 성장률
CAPEX 설비투자비용
CbC 국가별
CBI 영업비밀
CCA 화학물질 관리법 (화관법)
CGT 세포유전자 치료
CGT 환산 톤수
CHP 열병합발전용
CIT 법인소득세
CODEX 식품규격
COVID-19 코로나19
CSAP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
CSV 공유가치 창출
CTD 국제공통기술문서

DUI 음주운전

EcoAs 환경성보장제도
EMC 전자파인증
EMS 국제특송
EPBD 건물의 에너지 성능 지침
EPR 재활용의무생산자
EU 유럽 연합
EV 전기자동차

FDC 복합제
FRAND 공정하고 비차별적이며 합리적인
FSC 판매증명서
FSC 시설보안확인
FTA 자유무역협정
FTZ 자유무역지역

GDP 국내총생산

제본영역

줄임말	국문
GHG	온실가스
GMO	유전자변형식품
GMP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평가
G-SEED	녹색건축물인증제도
GW	기가와트
HRQoL	건강과 연관된 삶의 질
HTA	의료기술평가
HVO	수소 처리된 식물성 기름
ICER	점증적 비용효과비
ID	신분증
IMP	임상시험용 의약품
IND	임상시험용신약
IoT	사물 인터넷
IP	지식재산
IPC	혁신형제약기업
IPR	지식재산권
IPT	통합사업팀
K-BPR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법 (제품안전법)
KENCIS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인증 시스템
KORUS FTA	한미자유무역협정
KP	대한약전
KRW	한국 원화
LCOE	균등화발전단가
LEED	미국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
LNG	액화천연가스
LoE	특허만료
MRA	상호인증협정
MRCT	다지역 임상 시험
MRP	요양급여상환금액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
NCCP	국가암관리종합계획
NEDC	유럽연비측정방식
NG	천연가스
NHI	국민건강보험

줄임말	국문
NIER	국립환경과학원고시
NLR	국가출하승인
NRW	누수수량
OEM	위탁제조
OIV	국외투자기구
OPEX	운영비용
OR	유일대리인
ORR	대리평가변수
OSHA	산업안전보건법 (산안법)
PE	폴리에틸렌
PE	의약품경제성평가
PE	고정사업장
PEN	폴리에틸렌나프탈레이트
PET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PHEV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
PLC	저우려고분자
PMS	시판후 부작용감시
PP	폴리프로필렌
PPA	전력수급계약
PPE	개인용 보호구
PSR	공정안전보고서
PVA	사용량 약기연동제
QA	품질 보증
QC	품질 검사
QSAR	구조-활성의 정량적 관계
R&D	연구개발
REACH	화학물질등록평가법
REC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RFID	무선주파수인식기술
RSA	위험분담계약제
RWD	실사용 데이터
RWE	실사용증거
SDGs	지속가능 개발 목표
SME	중소기업
SMO	임상시험실시 지원기관

줄임말	국문
SMP	계통한계가격
SOx	황산화물
SPF	자외선차단지수
SRI	방사선취급감독자
SSIC	중점관리물질
TBT	무역기술장벽
TCCA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TRIPS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
TTR	톤세제도
UDI	의료기기 고유식별코드
USD	미국 달러
VAT	부가가치세
VLCC	초대형 원유선
WLTP	국제표준배출가스시험방식
WTG	풍력발전기

줄임말	국문
ADD	국방과학연구소
DAPA	방위사업청
DREC	약제급여평가위원회
DT&Q	국방기술품질원
ECHA	유럽화학물질청
EFSA	유럽식품안전청
EMA	유럽의약청
EU IPO	유럽연합지식재산청
FSC	금융위원회
FSS	금융감독원
HIRA	건강보험심사평가원
ICH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
IMO	국제해사기구
KATS	국가기술표준원
KCS	관세청
KDIA	한국방위산업진흥회
KEA	한국에너지공단
KEAD	한국장애인고용공단
KECO	한국환경공단
KEEI	에너지경제연구원
KEPCO	한국전력공사
KFTC	공정거래위원회
KHIDI	보건산업진흥원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KIPO	특허청
KISA	한국인터넷진흥원
KOGAS	한국가스공사
KPBMA	한국제약바이오협회
KPTA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KSA	선주협회
KTC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KTL	한국산업기술시험원
KTR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줄임말	국문
MAFRA	농림축산식품부
MCST	문화체육관광부
ME	환경부
MFDS	식품의약품안전처
MND	국방부
MOEF	기획재정부
MOEL	고용노동부
MOF	해양수산부
MOGEF	여성가족부
MOHW	보건복지부
MOIS	행정안전부
MOJ	법무부
MOLIT	국토교통부
MOTIE	산업통상자원부
MSIT	과학기술정보통신부
MSS	중소벤처기업부
NHIS	국민건강보험공단
NIFDS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NTS	국세청
OECD	경제 협력 개발 기구
PCIP	국가지식재산위원회
RRA	국립전파연구원
SIEF	물질정보교환포럼
UNECE	유엔 유럽 경제 위원회
US FDA	미국 식품의약국
WHO	세계보건기구
WTO	세계무역기구

주한 유럽상공회의소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는 한국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유럽계 기업들의 협회입니다. ECCK는 유럽 및 한국기업과 기관들의 상호이익을 위한 공정하고 열린 비즈니스 환경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며 회원사들에게 한국의 비즈니스 및 규제 환경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규제기간들과의 소통창구 역할을 하는 비영리, 비정치적 기관입니다.

- ECCK는 한국 정부 및 주요기관들과의 소통 창구로서, 정부부처, 경제단체 및 언론과 긴밀한 접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ECCK는 유럽계 기업들의 공동의 목소리를 대표하며, 이들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자 주한유럽연합대표부, 유럽 각 국 대사관 및 상공회의소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 ECCK는 산업별 위원회 및 포럼을 통해 시장상황, 규제 및 산업환경에 대한 정보를 발 빠르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유럽계 기업들의 정보 교류의 중심으로서 ECCK는 백서, 비즈니스환경조사, 리포트 및 잡지와 뉴스레터 등 정기간행물을 출판하여 배포합니다.
- 회원사들은 ECCK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를 통해 한국에서의 네트워크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또한 ECCK는 한국을 찾는 유럽 정부인사나 기업인들을 위한 연락 창구 역할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을 위해선 ECCK 웹사이트 www.ecck.eu 를 방문하시거나 또는 ecck@ecck.eu 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